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석 매뉴얼 개발연구

정기용 · 전대욱 · 김해솔



---

**저 자** 정기용, 전대욱, 김해솔

연구책임자 **정기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해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

# 연구요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규제시스템 혁신 강화

- 국정과제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국정과제 11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규제시스템 혁신을 강조함
  -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 규제혁신 절차의 전문성 제고로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재설계를 추진함
- 2023년 4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동년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함
  - 2023년부터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추진함

### □ 낮은 지방정부 규제개선 수용률

- 2019년~2022년 규제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 건수는 총 9,144건으로 그 중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4,455건(48.7%)이며, 4,455건의 건의과제 중 규제개선이 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1,414건(31.7%), 불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3,041건(68.3%)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선을 위해 작성 및 제시하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법령, 추진경과, 개선방안 및 효과, 전문가 및 부처의견 등 내용 작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미흡으로 규제개선 수용률이 낮음

## □ 지방정부 규제개선을 위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필요성 증가

-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수용률이 낮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분석서의 구성항목, 주요내용 및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 개선의 특징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주요 규제유형을 반영하여 지방규제의 개선 필요성 및 효과성을 작성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함

## □ 본 연구의 목적

- 첫째,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도출함
- 둘째,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제시함
- 셋째,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 제언

### □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 실적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검토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9,1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이후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된 규제개선 건수가 매년 2,300건 이상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 중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4,455건(48.7%)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총 4,445건 중 규제개선이 수용된 건의과제는 1,414건(31.7%), 불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3,041건(68.3%)으로 나타남
  -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이 2019년 38.6%에서 2021년 27.1%로 감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어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서의 체계적인 작성방법 및 매뉴얼의 필요성을 도출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과제를 소관부처별로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가 전체 규제개선 건의의 2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13.8%, 행정안전부 13.3%, 환경부 10.1%, 농림축산식품부 7.9% 순으로 나타남

#### □ 국내·외 유사 사례검토 결과

-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펴본 결과 국내 유사사례는 규제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행 중인 규제 및 법령의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함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가 실제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함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규제 도입에 따른 목적이 적절히 달성했는지 여부이며, 해결하고자 한 문제 및 목적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지 등을 평가함
- 국내·외 사례의 평가항목은 제도의 목적에 따라 항목 및 세부항목이 세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제도의 목적이 성과를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유사한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를 실시함
  - 국내·외 모든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배경 및 문제점 파악, 규제 목적, 대안의 적절성 검토, 기타 항목으로 나타남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공통항목으로는 배경 및 문제점 파악, 규제목적, 규제 목적 달성도, 비용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대안의 적절성 검토, 규제정비계획(개선방안), 기타(의견수렴 내용 등) 항목으로 나타남
-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은 과학적 근거 및 자료를 토대로 규제를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내용, 세부적인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도출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의 업무 부담 및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의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함
  -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해당 부처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매뉴얼(안)을 구성 하였으며, 항목별 세부항목 및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개선 분석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의 구성은 ‘표지’, ‘규제 개요’,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개선 실효성’, ‘종합결론’, ‘별첨’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함
  - 일곱 가지 항목 중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개선 실효성’, ‘종합결론’을 대항목(필수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시함

[표 1]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구성 항목 및 주요내용

구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표지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
	지방규제 개선건의 지역	• 지방규제 개선건의 해당 지역
	담당부서 및 작성자	• 담당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규제 개요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유형	• 규제개선 유형 1.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 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 4.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 5.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
	규제조문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
	규제내용	•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
	위임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공표일 및 시행일	• 제정·개정 및 시행일
	추진배경	• 규제개선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경위
	목적	• 기존 규제개선 목적 및 필요성
	개선방안	• 기존 규제개선 방안
	기대효과	•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규제의 직접적 대상인 피규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 등
	신규조문 대비표	• 기존 규제와 개선되는 법령 조문의 대비표
	I.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존 규제개선 방안 •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규제개선의 기대효과(직·간접 효과)
II.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집행 현황	• 지방자치단체 규제집행 현황 •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인력 및 소요예산)
	경제적 효과성 분석	• 규제 비용-편익 분석 결과(또는 비용-효과분석) : 규제순응비용 변화, 규제집행·감시비용 중심 • 규제개선 편익 또는 효과(정성적 또는 정량적)분석

구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부수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 효과</li> <li>•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환경개선, 주민생활, 취약계층, 생활인구, 인구감소, 지역공동체, 고령사회 등의 효과분석</li> </ul>
Ⅲ. 규제개선 실효성	유사사례 검토	• 타법 사례검토
	이해관계자 의견검토	• 규제개선의 효과성, 부작용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관부처 의견검토	• 규제개선 관련 소관부처 의견검토
Ⅳ. 종합결론	요약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 배경 및 효과성 요약</li> <li>• 규제개선 방안 요약</li> </ul>
별첨	기타 의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 상세내역</li> <li>• 부수적 효과 상세내역</li> <li>•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표 등</li> </ul>

- 이와 함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을 위한 논의사항을 제시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목적을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목적은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를 평가와 함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비 및 개선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함
  - 작성항목의 간소화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작성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작성 항목이 간소화 될 경우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함
  - 전문 연구기관의 협업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작성한 후 2차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이 작성내용을 검토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연구원(광역자치단체 연구원, 특례시 시정 연구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 포함)이 협업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수행절차를 제시함

## □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 제언

- 2023년 4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전문 자문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전문 연구기관)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국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필요성이 대두됨
  - 2023년 12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업무를 전문적 및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7조(전문 연구기관)가 개정됨
  - 이를 근거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규제연구센터가 2023년 12월 설치됨(「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규제연구센터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규제개선 내용의 전문적 분석 및 이행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요 기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규제개선 과제 중 중점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해결 가능성) 및 전문적 분석을 실시함
  - 둘째, 지방규제혁신 관련 제도 연구 및 수용과제의 이행관리를 실시함
  - 셋째, 지방규제혁신의 제고 역량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함

# 목 차

##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의 체계	11

## 제2장 | 이론적·제도적 논의

제1절 규제 및 규제개혁	15
1. 규제	15
2. 규제개혁	21
3. 중앙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24
제2절 지방규제	28
1.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체계	28
2.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현황	34
제3절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	50
1. 규제영향분석	50
2. 규제사후영향평가	55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 관계	58

제4절 소결 .....	61
--------------	----

### 제3장 | 국내·외 사례검토

제1절 국내 유사 사례검토 .....	69
1. 규제영향분석 .....	69
2. 경쟁영향평가 .....	80
3. 법제처 입법영향분석 .....	86
제2절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검토 .....	93
1. 미국 .....	93
2. 영국 .....	96
3. 호주 .....	105
4. 캐나다 .....	115
5. 일본 .....	120
제3절 소결 .....	126
1. 사례검토 결과 요약 .....	126
2. 평가항목 .....	128

### 제4장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개발

제1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필요성 .....	133
1. 매뉴얼 개발 필요성 .....	133
2. 규제개선 신청방법·양식 사례검토 .....	135
제2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	148
1. 매뉴얼(안) 구성 방법 .....	148
2. 매뉴얼(안) 구성 항목 .....	149
3. 매뉴얼(안) 항목별 세부내용 .....	151

제3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작성방법 .....	158
1.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	158
2. 규제개선 효과성 .....	159
3. 규제개선 실효성 .....	166
4. 종합결론 및 별첨 .....	167
5. 기타 .....	168
제4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논의사항 .....	174
1. 운영 방향 .....	174
2. 작성항목 간소화 .....	175
3. 전문 연구기관 협업 .....	176
4. 수행절차 .....	178

## 제5장 |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한계 .....	185
제2절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 .....	191

<b>【참고문헌】</b> .....	<b>193</b>
---------------------	------------

<b>【부록】</b> .....	<b>197</b>
-------------------	------------

부록 1.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	197
부록 2.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	199
부록 3.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양식 및 작성방법 .....	201
부록 4.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1 .....	225
부록 5.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2 .....	244

부록 6.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3 .....	263
부록 7.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4 .....	277
부록 8.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5 .....	300

## 표 목차

[표 2-1] 규제의 광의, 중의, 협의의 개념 .....	15
[표 2-2] 좋은 규제의 조건 .....	17
[표 2-3] 규제의 원칙 .....	18
[표 2-4] 규제의 주체·객체·형식 조건 .....	20
[표 2-5] 규제개혁의 정의 .....	21
[표 2-6] 규제개혁의 단계 및 방향 .....	23
[표 2-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전략 .....	30
[표 2-8]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	35
[표 2-9]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류 기준 .....	36
[표 2-10] 광역시도별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연도별분포) .....	39
[표 2-11] 규제개선 건의과제 대분류 유형 분포 .....	40
[표 2-12]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중분류 유형 분포(100건 이상) .....	41
[표 2-13]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소분류 유형 분포(50건 이상) .....	42
[표 2-14] 소분류 기준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3년 연속 발생한 지역(시군구) .....	43
[표 2-15] 규제개선 건의과제 빈도 수 10건 이상의 관련 법령 .....	44
[표 2-16]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 분포 .....	47
[표 2-17]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광역시도 별): 상위 4개 소관부처 분포 .....	48
[표 2-18]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별 규제 주요 개선과제 .....	64
[표 3-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별 차이점 .....	72
[표 3-2]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 .....	72
[표 3-3]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개요-표지) .....	73
[표 3-4]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75
[표 3-5]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적정성) .....	76
[표 3-6]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실효성) .....	77

[표 3-7]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78
[표 3-8]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	79
[표 3-9]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예비평가) .....	84
[표 3-10] 경쟁영향평가 심층평가 분석과정 및 내용 .....	85
[표 3-11] 경쟁영향평가 작성 매뉴얼 및 내용 .....	85
[표 3-12] 입법영향분석 절차 .....	90
[표 3-13] 입법영향분석 내용 .....	91
[표 3-14] 입법영향분석 평가항목1(규범적 적정성) .....	92
[표 3-15] 입법영향분석 평가항목2(효과성 및 효율성) .....	92
[표 3-16] 미국 EPA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과정 .....	95
[표 3-17] 미국 EPA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기준 .....	96
[표 3-18] 영국 ROAMEF 정책개발 단계(설명) .....	97
[표 3-19] 영국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	102
[표 3-20]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시기 .....	110
[표 3-21]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결정 고려요인 .....	111
[표 3-22]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항목 및 내용 .....	113
[표 3-23] 규제스톡평가 및 표적규제평가의 비교 .....	116
[표 3-24] 캐나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질문 가이드라인 .....	118
[표 3-25] 캐나다 규제사후영향평가서 작성양식 .....	119
[표 3-26] 일본 규제사후영향평가 양식 .....	125
[표 3-27] 국내 유사사례 및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항목 비교 .....	130
[표 4-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처리절차 .....	138
[표 4-2]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처리과정 .....	142
[표 4-3]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구성 항목 및 주요내용 .....	150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	11
[그림 2-1] 규제혁신 추진체계 .....	24
[그림 2-2] 현 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	27
[그림 2-3] 규제혁신 추진체계 .....	34
[그림 3-1] 영국 ROAMEF 정책개발 단계(그림) .....	98
[그림 3-2] 영국 정책결정과정 .....	100
[그림 3-3] 영국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양식 .....	104
[그림 3-4] 호주 규제관리체계 .....	107
[그림 3-5]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과정 .....	108
[그림 4-1]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 양식 .....	137
[그림 4-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및 작성 양식 .....	140
[그림 4-3]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및 작성 양식 .....	144
[그림 4-4] 참고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169
[그림 4-5] 참고사이트(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170
[그림 4-6] 참고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171
[그림 4-7] 참고사이트(국가통계포털·산업통계분석시스템) .....	173
[그림 4-8]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수행절차 .....	181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규제시스템 혁신 강화

- 국정과제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목표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함(대한민국 정부, 2022)
  -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 규제혁신 절차의 전문성 제고로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재설계를 추진함
- 국정과제 11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는 지방정부의 인적 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규제혁신 강화를 추진함(대한민국 정부, 2022)
  -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석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증가함
- 2023년 4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동년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역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규제 및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조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설치 및 운영 중임<sup>1)</sup>

1)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 2023년부터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추진함
  -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을 심층분석하여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규제사후영향평가’를 도입함
  -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음(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

#### □ 낮은 지방정부 규제개선 수용률

- 2019~2022년 규제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 건수는 총 9,144건으로 그 중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4,455건(48.7%)이며, 4,455건의 건의과제 중 규제개선이 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1,414건(31.7%), 불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3,041건(68.3%)임
  - 2022년 기준 규제개선을 위해 발굴한 규제 건수는 2,409건이지만,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888건(36.9%)에 불과하며, 이 중 규제개선이 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276(31.1%), 불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612건(68.9%)임
  - 2022년 전체 발굴된 규제 건수 2,409건 중 수용된 과제는 276건(11.5%)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며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수용률이 현저히 낮음
- 지방정부는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작성 매뉴얼이 미비한 상황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선을 위해 작성 및 제시하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법령, 추진경과, 개선방안 및 효과, 전문가 및 부처의견 등 내용 작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미흡으로 규제개선 수용률이 낮음

## □ 지방정부 기존 규제개선을 위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필요성 증가

-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수용률이 낮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지방정부의 기존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매뉴얼이 필요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기존 규제개선의 배경 및 필요성, 규제개선 효과성 및 실효성, 개선방안 등 기존 규제개선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논리성, 체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성 매뉴얼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분석서의 구성항목, 주요내용 및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
  -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규제 대안을 제시하는 규제 사후영향평가는 연구기관이 작성하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 담당자가 작성하므로 규제사후영향평가와 차별성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 개선의 특징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주요 규제유형을 반영하여 지방규제의 개선 필요성 및 효과성을 작성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함

## 2. 연구의 목적

###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수 증가 대비 낮은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 및 지방규제 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매뉴얼을 도출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고 있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논리성, 체계성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매뉴얼을 도출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구성항목, 주요내용,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매뉴얼과 함께, 매뉴얼 작성 양식을 제공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논리성, 체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소관부처 분포 현황, 부처별 기능 등의 검토를 통해 지방규제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매뉴얼을 도출함을 검토함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건의 수, 소관부처별 규제개선 건의 분포 등을 반영하여 지방규제 개선 분야의 유형을 구분함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 발전 등의 관점에서 기존 규제의 개선 효과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매뉴얼을 도출함
-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매뉴얼을 도출함
  - 국내 유사사례인 규제영향분석, 경쟁영향평가 등 사례검토를 통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구성항목 등을 도출함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기존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사례 검토를 통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구성항목 및 작성방법 등을 도출함

### □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규제개선을 위해 지방규제 혁신체계 지원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함

- 2023년 12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통해 지방 규제혁신위원회 업무를 전문적 및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7조(전문 연구기관)를 개정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됨(「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전문 연구기관의 목표, 역할 등을 제시함
  - 지방규제혁신의 전문성 확보, 지방정부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석서의 타당성 검토 등의 목표 및 역할 등을 제시함

####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적용한 사례분석

- 시급한 지방규제 개선건의안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기존 규제 개선건의안에 대해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규제개선 효과성 및 실효성, 종합결론 등을 작성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 시·공간적 범위

- 규제 및 규제혁신체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현황,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및 적용사례,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2023년 현재로 함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작성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함

#### □ 대상적 범위 및 용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의 “지방규제”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기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따르며, ‘규제개혁’과 ‘규제혁신’은 명칭은 다르지만, 의미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으로 동일함
- 본 연구에서의 지방규제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을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을 건의하는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해당 부처”의 규제를 의미함(「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제3호)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해당 부처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성하는 개선건의 분석서를 의미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규제를 개선 및 건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작성 가이드라인 및 양식을 의미함

## □ 내용적 범위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도출함
  -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규제개선 및 건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가이드라인 및 양식을 도출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도출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특징을 검토함
  -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구성하는 항목, 주요내용, 작성방법 등을 도출함
-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기관의 목표 및 역할을 제시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전문 연구기관) 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 연구기관의 목표, 역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적용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개선이 시급한 지방규제 사례에 대해 도출한 매뉴얼을 적용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함
  - 매뉴얼을 적용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방법 및 매뉴얼의 활용방안을 제시함

##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규제, 규제혁신, 지방규제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검토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규제 및 규제혁신의 의의, 규제혁신 추진체계, 지방규제 개선현황 및 소관부처 등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함
- 국내 유사 제도, 해외의 기존 규제개선시 작성하는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구성항목, 주요내용, 작성방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 사례분석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도출을 위해 국내 유사사례 및 제도를 검토함
  -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영향평가, 법제처의 입법영향분석 개요, 절차 및 작성 매뉴얼 등을 검토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도출을 위해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함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방식, 절차, 구성항목 및 작성 방법 등을 검토함
  -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의 필수 요소 등 시사점을 도출함

## □ 전문가 자문

- 이론적·제도적 논의,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도출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매뉴얼을 활용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사례 작성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3. 연구의 체계

-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통해 진행되며, 연구의 연구수행체계 순으로 본문의 장이 구성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연구단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배경 및 목적</li> <li>• 연구의 범위 및 방법</li> </ul>	
▽		
이론적·제도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규제혁신 및 지방규제 이론적·제도적 논의</li>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현황 및 특징 분석</li> <li>•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 이론적·제도적 논의</li> </ul>	← 문헌연구 선행연구
▽		
국내·외 사례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사사례 사례검토</li> <li>•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검토</li> </ul>	← 문헌연구 선행연구 사례분석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필요성</li>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li>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작성방법</li>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논의사항</li> </ul>	←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요약</li> <li>• 향후 과제</li> <li>•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 제시</li> </ul>	
▽		
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li>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li>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양식 및 작성방법</li>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li> </ul>	← 문헌연구



## 제2장

# 이론적·제도적 논의

제1절 규제 및 규제개혁

제2절 지방규제

제3절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

제4절 소결



## 제1절 규제 및 규제개혁

## 1. 규제

## □ 규제의 정의

- 규제(regulation)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경제 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최병선, 1992: 18), “개인, 기업, 조직 활동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행위”(Mitnick: 1980: 2)로 정의됨
  - OECD에서는 규제를 “정부가 기업 또는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행태 수단”으로 정의함(OECD: 1997: 6)
  - 통상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행위로, 정부가 민간 영역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나타냄 (김건위·이병기, 2019: 11)
- 규제는 개념의 수준에 따라, 광의, 중의, 협의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1] 규제의 광의, 중의, 협의의 개념

구분	개념
광의	•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에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과정
중의	• 바람직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협의	•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과 규칙의 설정이 요구되므로 정부구조 밖에 존재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게 정부가 설정한 기준과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법 및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2022d: 13) 재인용

-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를 ‘행정규제’로 칭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는 규제가 아닌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규제의 적용범위를 명시함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좋은 규제의 조건**

- 규제가 좋은지, 수용 가능한지 또는 개혁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규제의 설계를 정확히 하고 또한,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함
- 규제의 구조 및 시스템 설계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규제 기관이 규제 대상에 대해 정보상 문제가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 둘째, 규제 기관의 행동에 대해 종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위험성,
  - 셋째, 실수는 불가피하므로 실수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간의 실수 가능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규제를 설계해야 함

- 잘 설계된 규제는 이행 및 시행의 한계를 고려하고, 완벽한 규제는 없지만 잘 설계된 규제를 가진 사회는 잘 설계되지 않은 규제를 가진 사회보다 훨씬 더 사회적 기능이 잘 수행됨(Moss, D & Cisternino, J, 2009: 13)
- 좋은 규제의 조건과 좋은 규제를 판단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이 있음
  - 첫째, 정권 또는 체제가 입법권자(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 둘째, 적절한 책임 체계가 있는가?
  - 셋째, 절차가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개방되어 있는가?
  - 넷째, 규제기관은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 다섯째, 정권 또는 체제는 효율적인가?

[표 2-2] 좋은 규제의 조건

기준	기준의 본질	문제점
입법 권한	• 선출된 입법부의 승인	• 의회의 모호한 의도 • 입법목표의 갈등 발생 가능성
책임 또는 통제	• 규제기관의 적절한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성	• 책임과 효율성의 절충
적법 절차	• 규제 절차의 공정성, 접근 가능성, 개방성	• 절차 참여가능한 인원의 구성 • 참여의 적절성 • 개방성과 효율성의 절충
전문성	• 전문지식에 대한 신뢰 • 전문화된 지식·기술·경험	• 대중의 전문지식 부족 • 전문가의 전문지식 설명 능력 및 판단 설명 능력 • 전문용어에 대한 대중 불신 • 전문가간 갈등으로 대중 신뢰 하락 • 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불신 • 특정 집단의 이익 발생을 야기하는 규제 결정의 중립성
효율성	• 입법 권한의 효율적 구현 • 효율적 결과의 도출	• 입법 권한 주장의 문제 • 입법 권한간 충돌과 갈등 • 효율성 측정의 어려움

출처: Baldwin. R et al.(2012: 59)

□ 규제의 특징 및 원칙

- 규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규제는 미리 설정된 ‘바람직한 방향’의 존재를 상정하며, ② 규제대상은 민간부문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되고, ③ 규제를 집행하는 주체는 정부가 되어, 결과적으로 ④ 규제는 정부가 설정해 놓은 길이며, 이 길을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안문석, 2001)
  - 따라서 정부 규제 자체가 민간 영역에 부담을 주는 정부 활동이기 때문에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만약, 정부의 규제가 과도할 경우 혹은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비용이 과다할 경우,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을 제약하는 문제를 낳게 되며, 이는 정부가 수시로 규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병행해야 함을 의미함
-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와 존중, 생명·인권 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름(행정안전부, 2022d: 14)

[표 2-3] 규제의 원칙

구분	개념
규제순응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규제는 법규위반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기술적 여건, 규제집행 일선 공무원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태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어떤 주체의 행동선택에 의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과정</li> </ul>
규제 수준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대상 및 수단은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서는 안 되며,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규제 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도한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 됨</li> </ul>
규제의 시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현상의 문제점이 중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동 규제가 시급하게 필요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의 활용가능성 또는 타 법령의 유사규제 여부를 확인하여 규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li> </ul>
규제의 불가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피하게 미래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도입 시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li> </ul>

출처: 행정안전부(2022d: 14) 재구성

## □ 규제의 구성요소

- 정부규제 혹은 행정규제는 주체·객체·내용·형식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작동함(규제개혁위원회, 2017; 최병선, 1992)
  - 첫째,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규제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현행법에서도 정부규제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정함
  - 둘째, 정부규제의 객체는 민간의 개인 또는 기업으로 피규제산업(regulated industries) 이거나 피규제자(regulatee)로, 행정규제기본법 법령의 규제 대상은 내국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을 함께 포함하며,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영향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
  - 셋째, 정부규제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도된 개입’(intentional interference)을 의미함
  - 넷째, 정부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행위를 제약하는 기능이 있으며, 정부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제공 및 처벌하는 소극적 유인 또는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과 정부 요구를 따를 경우 특허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 유인 및 보상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 및 기업의 행위를 강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민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법정주의’를 천명함(법제4조; 법 부칙 제4조). 행정규제는 ‘법령 등’, 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조례규칙, ‘고시 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표 2-4] 규제의 주체·객체·형식 조건**

요건	내용
주체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객체	자연인인 국민(외국인 포함),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형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및 조례·규칙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규제의 유형과 범위**

- Mitnick(1980: 15)은 규제를 규제 대상에 따라서 직접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제와 시장경제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 그리고 행정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행정적 규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경제적 규제: 가격, 품질, 경쟁,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기업의 시장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규제(ex. 경제, 산업, 금융, 중소기업, 공정거래, 부동산 등과 관련된 규제)
  - 사회적 규제: 건강·안전·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ex. 보건, 의료, 복지, 식품, 안전, 환경, 고용, 교육 등과 관련된 규제)
  - 행정적 규제: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규제(ex. 행정, 치안, 외교,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김건위·이병기, 2019: 13)
- 행정규제의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인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감독 및 제재, 영업상 행위 의무,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됨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2. 규제개혁

### □ 개념

○ ‘규제개혁’이란 규제의 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행정안전부, 2022a: 139), 단순히 피규제자의 규제부담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의하는 작업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함(규제개혁위원회, 2017).

- 규제에 대한 피드백 단계로 환경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규제 또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함(행정안전부, 2022a: 49)
- 즉, 규제의 목적 및 목표의 적정성, 규제수단의 유효성 및 정체성 등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와 민간의 자율 및 창의를 존중하는 규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함(행정안전부, 2022a: 139)

○ 규제개혁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5] 규제개혁의 정의

구분	내용
Majone(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탈규제와 규제화를 적절히 혼합하여 규제를 통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li> <li>• 규제는 경제적 사회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함</li> </ul>

구분	내용
Breyer(1990)	• 규제가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규제를 없애거나 고쳐나가는 것
Thompson & Jones(1982)	• 규제정책의 본질과 그 집행수단을 변경하거나 규제와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심사, 절차 등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
Vogel(1996)	• 정부가 여러 압력들에 반응하여 규제를 재형성(reformulation)하는 것 • 국가는 규제개혁을 달성함에 있어서 규제완화 외에 다양한 재규제 수단과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
Jacobs(2003)	• 규제완화와 규제개선을 의미함 • 경제전반에 대한 규제, 규제완화, 재규제로 구성됨 • 규제완화 전략은 경제규제에 응용되는 반면 제도의 질적개선 및 부담완화전략은 사회·행정규제에 적용됨
최병선(1992)	• 변화된 정치사회, 경제산업, 기술환경 속에서 시장과 정부라는 두 가지의 사회조직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
행정안전부 (2022a)	• 규제의 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과정 • 규제의 목적 및 목표의 적정성, 규제수단의 유효성 및 정체성 등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와 민간의 자율 및 창의를 존중하는 규제대안을 모색 하는 과정

### □ 규제개혁의 방향 및 단계

- 이러한 규제개혁의 방향은 단계별로 구분하자면 규제개혁의 1단계인 규제완화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1970-1980년대까지 지속되었음
  - 이 시기에는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순응 비용의 감소 및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 총량의 감소가 규제개혁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됨(김신 외, 2002)
-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규제개혁의 방향은 규제완화와 탈규제에서 규제품질 개선과 같은 재규제 경향으로 선회하며 규제의 기능을 고도화하려는 시도가 확대됨
  - 이에 따라 작은정부라는 개념에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규제의 품질 향상에 힘을 쓰는 경향이 점차 발전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가능하지도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가 확대되면서 규제개혁의 초점 역시 규제의 질 개선으로 변화함

- 많은 국가에서 적은 규제보다는 질 높은 규제에 정책의 목표를 두고 규제의 감축보다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이며 단순한 규제나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확인됨(김신 외, 2002)
- 최근 들어서는 개별 규제의 질적 향상으로는 총체적인 규제개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법적 명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규제개혁의 단계마다 설정되는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제시됨

[표 2-6] 규제개혁의 단계 및 방향

단계		정책목표	특징	방향
1	규제완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수의 감소</li> <li>• 규제의 부담과 비용감소</li> <li>• 경쟁과 자유무역 저해규제 제거</li> <li>• 행정절차 간소화 및 명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정부 지향</li> <li>• 현존 규제중심의 규제완화</li> </ul>	규제완화 탈규제
2	규제품질 관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합리적 양질의 규제 창출</li> <li>• 규제과정의 개선: 규제영향평가</li> <li>• 현존규제의 검토와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크기에 상관없이 중립적</li> <li>• 품질중심의 개별적 규제 결정</li> <li>• 기존규제와 신규규제 검토</li> </ul>	
3	총체적 규제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역의 효율화 및 유연성 등 총체적 규제효과 검토</li> <li>• 장기적 규제추진체계의 구축 및 가동</li> <li>• 대안적 규제의 우선고려</li> <li>• 규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전략적 시각</li> <li>•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li> <li>• 종합적 정책목적과 관련한 결과 지향적</li> <li>• 규제의 총체적 영향에 관심</li> <li>• 정부의 크기에 대해 중립적</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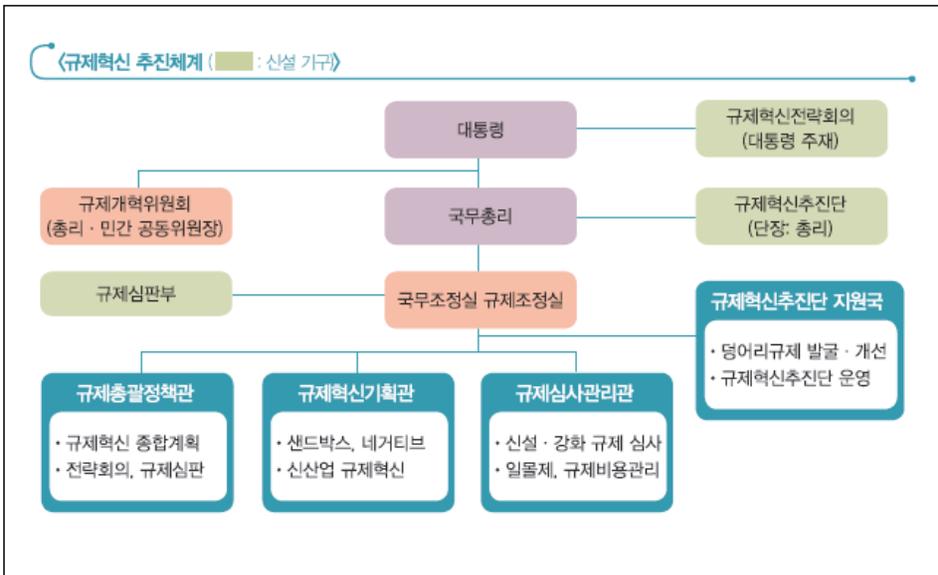
출처: 김정해 외(2007)

### 3. 중앙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 □ 현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 과거 여러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및 복합규제 개선에는 미흡하여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거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신설 및 운영하고 있음(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2022: 33)

[그림 2-1] 규제혁신 추진체계



출처: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2022: 23)

#### □ 신규 도입된 규제혁신 추진체계2)

- 현 정부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 추진단,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함

2) 출처: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2022: 33-34)

-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고질적이고 상징적인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하여 현장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하는 비상설 회의체이자 규제혁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의미함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정부 규제정책 방향 및 주요 규제개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결정하는 회의체를 의미함
-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덩어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신설된 조직으로 민·관·연 전문가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통해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함
  - 중복적 및 복합적인 덩어리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덩어리 규제의 특성상 다수부처의 법령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별부처 단위에서는 덩어리규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덩어리규제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업무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및 민간 등이 참여하여 합동 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규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되었으며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아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함
-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반영하여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중립적 및 균형적 시각으로 판단하는 제도를 의미함
  - 규제심판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을 토대로 해당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함
  - 소관 부처가 규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함

#### □ 규제혁신 추진체계 원칙, 추진체계, 추진전략

-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합동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규제혁신체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음
  - 첫째, 전(全)정부 및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 국가 역량을 총집결한 덩어리규제의 집중 개선임
  - 둘째, 기존 규제혁신제도의 지속 운영 및 필요한 범위 내 제도를 최소 보완하여 1년 후 성과를 재검토하고 제도를 개편함
  - 셋째, 각 부처 책임 하에 자율적인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문화를 조성함(행정안전부, 2022b: 9)

[그림 2-2] 현 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출처: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www.better.go.kr/>)

## 제2절

## 지방규제

## 1.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체계

## 1)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기구

□ 추진기구<sup>3)</sup>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지방규제혁신 위원회가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 발굴 및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위치함
  - 지방규제혁신과의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및 소극행태 개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 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 점검·평가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는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규제애로 사항 발굴 등이 있음

3) 출처: 행정안전부(2022b: 38-39)

##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신설

-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방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임(「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제1항)
-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3월 31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으며 2023년 4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능과 구성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고 2023년 5월 18일 출범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됨(「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1항)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내 간사 1명과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이 간사가 되며(「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6항), 사무기구 업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가 수행함(「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에서 규정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기능)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해당 부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지방규제 관련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규제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분석위원회·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기술규제위원회 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전략<sup>4)</sup>

### □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 애로 사항의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함
- 첫 번째 전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중앙규제 개선임
  - 이를 위해 기업활동에 장애로 작용하는 경제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고 리더십을 통해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해결함
- 두 번째 전략은 지방자치단체 현장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임
  - 이를 위해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규제를 개선함
- 세 번째 전략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임
  - 이를 위해 지방이양, TF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방규제혁신 평가와 우수성과를 확대함

[표 2-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전략

구분	내용	
추진목표	지방규제애로 해소로 기업·경제활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전략	전략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중앙규제 개선
	1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규제 발굴·개선
	2	리더십으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 해결
	전략2	자치단체 현장규제 획기적 개선
	1	현장과 밀접한 자치법규 등 정비 지원
	2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규제 개선
	전략3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1	지방이양·TF 구성 등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2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우수 성과 확산	

출처: 행정안전부(2022c: 11) 재구성

4) 출처: 행정안전부(2022c: 11-12, 20)

### □ 규제혁신 TF 신설·운영 및 지방규제혁신 TF 구성·운영

-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정책 추동력 확보를 추진함
  - 특히 행정안전부 차관, 광역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 혁신 TF'를 신설하여 격월 또는 필요시 수시 운영 중임
  - 이를 통해 핵심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부처협의 조정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및 추진사항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함
- 각 지자체별로는 기초실장(팀장), 규제·법무과장, 규제 관련 부서장, 지방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규제혁신 TF'를 운영함
  -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현안의 규제혁신 주체가 되어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등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함

### □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 혁신 성과평가를 운영함
  - 총 3개 부문, 14~15개 지표로 평가하여 인증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함
-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규제혁신 추구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함
  -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추진함

###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개선 절차

#### □ 개요<sup>5)</sup>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기별로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협의 및 조정 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함
- 절차를 요약하면 발굴, 규제여부 검토, 부처 협의로 진행됨
  - 규제 발굴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및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함
  - 규제여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의과제를 내부검토하여 단순 민원과 비규제 사항을 제외함
  -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에 해당하는 건의과제를 소관 부처와 규제개선을 협의함
- 과제관리는 수용과제는 이행관리, 불수용과제는 재협의 등을 추진함
  - 부처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자치법규의 개정을 독려함
  - 불수용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리를 보완 및 재협의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큰 과제는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함

####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이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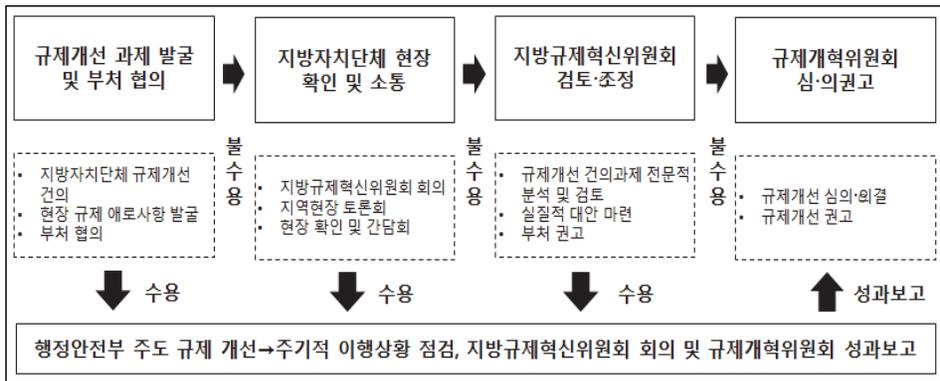
- 기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개선 절차는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부처 협의, 지방자치단체 현장 확인 및 소통, 수용 과제는 협의결과 피드백, 불수용 과제는 재협의 및 미해결 과제 대상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진행과 관리 종결로 진행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개선 절차가 추가됨
- 기존의 첫 번째 단계는 과제 발굴 및 부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수용될 경우 행정안전부 주도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보고를 진행함

5) 출처: 행정안전부(2022a: 247-248)

- 기존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과제 발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불수용 될 경우 진행되는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현장 확인 및 소통임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회의, 지역현장 토론회, 현장 확인 및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수용 및 불수용 여부를 검토함
  - 수용될 경우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주도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보고를 진행함
  - 불수용 될 경우 재협의 및 미해결 과제 대상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진행과 관리 종결로 진행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개선 절차가 추가됨
- 기존의 두 번째 단계까지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불수용 될 경우 기존에는 관리 종결로 진행되었으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이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검토·조정 과정이 추가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검토·조정 단계에서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및 검토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부처 권고를 실시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검토·조정과정에서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수용될 경우 기존 단계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주도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며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보고를 진행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검토·조정 단계 이후에도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불수용 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권고 과정을 거침
  -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계에서 진행된 내용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심의·의결함
  - 심의·의결 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결정되면 규제개선 권고가 이루어짐
-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개선 절차는 과제 발굴 및 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현장 확인 및 소통에서도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불수용되면 관리종결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이후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검토·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권고 단계가 추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 의미가 있음

[그림 2-3] 규제혁신 추진체계



출처: 최인수·전대욱·정기용(2023: 27) 재구성

## 2.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현황

### 1)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 실적

#### □ 규제개선 발굴 건수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9,144건으로 나타남
  - 2019년 1,981건에서 2020년 2,309건, 2021년 2,445건, 2022년 2,409건으로 2020년 이후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된 규제개선 건수가 2,300건 이상 유지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 중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4,455건(48.7%)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1,981건 중 1,127건(56.9%)을 규제개선을 위해 부처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2,309건 중 1,270건(55.0%), 2021년 2,445건 중 1,170건(47.9%), 2022년 2,409건 중 888건(36.9%)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총 4,445건 중 규제개선이 수용된 건의과제는 1,414건(31.7%), 불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3,041건(68.3%)으로 나타남
- 협의한 과제건수 대비 규제개선이 수용된 과제는 2019년 1,127건 중 435건(38.6%), 2020년 1,270건 중 386건(30.4%), 2021년 1,170건 중 317건(37.1%), 2022년 888건 중 276건(31.1%)으로 나타남
  -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이 2019년 38.6%에서 2021년 27.1%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31.1%로 증가함

[표 2-8]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연도	발굴 건수	협의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2019	1,981	1,127	435	38.6%	692	61.4%
2020	2,309	1,270	386	30.4%	884	69.6%
2021	2,445	1,170	317	27.1%	853	72.9%
2022	2,409	888	276	31.1%	612	68.9%
합계	9,144	4,455	1414	31.7%	3,041	68.3%

출처: 행정안전부(2023) 내부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건의과제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어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선을 위해 작성하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작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미비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에 체계성이 부족함

- 지방규제 개선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체계적, 논리적 및 전문적인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임

##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현황<sup>6)</sup>

### □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류 기준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도한 행정안전부는 최근 3~5년 간 지방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과제를 분류하여 규제개선 수요의 경향을 파악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권역별로 제기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식별함(행정안전부, 2022)
  - 개선 과제의 유형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구분되며 규제의 소관부처에서 영역과 기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선 과제를 범주화함
- (1) **대분류**: 유사한 범위 및 내용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 체계를 반영하여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구분. 단, 부처의 주요 업무와 유사한 내용을 담당하는 처/청 조직은 중분류로 설정(예: 문화체육관광부(대분류), 문화재청(중분류))
- (2) **중분류**: 규제등록양식 중 부문별 내용을 중분류로 설정. 단, 현재의 부처 단위 담당내용과 체계를 맞추고(예: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관광을 문체부 하위로 문화예술, 체육, 관광으로 재배치), 누락된 분야(예: 중소기업, 과학 등)를 보완
- (3) **소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영역을 세분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

[표 2-9]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행정안전부	일반행정	주민등록 민원처리제도 정보이용	국토교통부	국토도시개발	토지규제 토지용도 산업입지

6)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 발간된 “규제개선 건의과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 전략 수립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공공서비스		주택건축	주택정비 주택행정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재산 지방지출 지역경제활성화		교통·물류	도로교통 자동차관리 물류
	재난안전	재난관리 안전관리 해양안전		토지지적	지적 토지·부동산거래
	경찰교통	교통 경찰		건설	건설관리 건설산업
	소방안전	소방		수산	수산행정 수자원관리
국방부	국방	안보 병무	해양수산부	해양	선박어업납시 관리 해양환경관리 해운항만
교육부	교육학술	교육시설 교육행정 교육재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보건 의료약사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	체육시설		식품의약	식품위생 의약품·의료기기
	문화	문화산업 문화일반 방송통신·광고		복지	복지 사회보장 보육
	관광	관광진흥 관광행정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문화재	문화재보호	여성·가족	여성·가족	
기획재정부	재무	세제 국고 지출	여성가족부	환경오염관리	폐기물 대기환경 수질 화학물질
	경제	경제 금융		환경보호	산림·생태 탄소중립
	농지농정	농지관리 농정일반		환경관리 제도	환경기술·산업 환경관리제도·행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농민지원 농림식품기타			
	축산	축산일반 농축산 안전관리 반려·유기동물		산림	산지관리 산림자원화
	농촌활성화	농촌활성화	고용노동부	노동	고용 산업안전
	농업관리	농업(인)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정보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진흥	산업시설 산업활동	법무부	법무	법률 법무행정 출입국외국인
	통상·유통	통상 유통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벤처·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에너지	가스·발전 신에너지 에너지안전관리	기타	기타	상거래보호 특허 관련 남북교류협력 국가통계관리 등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 광역시도별 규제개선 건의 수

- 광역시도별 규제개선 건의 수의 분포 확인 결과, 2019~2021년 사이 가장 많이 건의 한 광역시도는 경기도로 총 3,091건 중 450건으로 전체 중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22.7%를 차지하고 있음
  - 광역시도별 규제개선 건의 수에 있어 상위 6개 지역(6% 이상 차지)은 경기도(14.6%), 경남(11.3%), 경북(9.8%), 충남(8.9%), 전남(6.4%), 전북(6.2%)의 순으로 나타남
  - 규제개선 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같은 광역시보다는 대표적 도(道)로 나타남

[표 2-10] 광역시도별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연도별분포)

(단위: 수, %)

광역시도	2019	2020	2021	계
경기	73(11.2)	111(8.7)	266(22.7)	450(14.6)
경남	82(12.6)	137(10.8)	131(11.2)	350(11.3)
경북	50(7.7)	139(10.9)	115(9.8)	304(9.8)
충남	46(7.1)	134(10.5)	94(8.0)	274(8.9)
전남	39(6.0)	89(7.0)	71(6.1)	199(6.4)
전북	41(6.3)	89(7.0)	62(5.3)	192(6.2)
대구	47(7.2)	63(5.0)	69(5.9)	179(5.8)
충북	24(3.7)	79(6.2)	56(4.8)	159(5.1)
부산	34(5.2)	78(6.1)	45(3.8)	157(5.1)
광주	18(2.8)	70(5.5)	64(5.5)	152(4.9)
대전	42(6.5)	57(4.5)	40(3.4)	139(4.5)
강원	69(10.6)	22(1.7)	38(3.2)	129(4.2)
서울	25(3.8)	67(5.3)	36(3.1)	128(4.1)
인천	17(2.6)	57(4.5)	44(3.8)	118(3.8)
울산	19(2.9)	35(2.8)	13(1.1)	67(2.2)
세종	14(2.2)	30(2.4)	11(0.9)	55(1.8)
제주	10(1.5)	14(1.1)	15(1.3)	39(1.3)
전체	650(100.0)	1271(100.0)	1170(100.0)	3091(100.0)

출처: 행정안전부(2022d)

주: 괄호는 전체 건의 수 기준 광역시도별 규제개선 건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 □ 대분류(소관부처) 규제개선 건의 분포

- 행정규제 개선 건의 내용을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유형에 따른 건의 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 유형 중 건의 수가 전체 중 10% 이상을 차지한 경우는 4개 유형이며, 국토교통부(865건, 28.0%), 보건복지부(427건, 13.8%), 행정안전부(410건, 13.3%), 환경부(312건, 10.1%)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1] 규제개선 건의과제 대분류 유형 분포

(단위: 수, %)

대분류	2019	2020	2021	계
국토교통부	174(26.8)	330(26.0)	361(30.9)	865(28.0)
보건복지부	76(11.7)	185(14.6)	166(14.2)	427(13.8)
행정안전부	69(10.6)	196(15.4)	145(12.4)	410(13.3)
환경부	58(8.9)	132(10.4)	122(10.4)	312(10.1)
농림축산식품부	44(6.8)	107(8.4)	93(7.9)	244(7.9)
산업통상자원부	50(7.7)	61(4.8)	50(4.3)	161(5.2)
문화체육관광부	51(7.8)	49(3.9)	46(3.9)	146(4.7)
해양수산부	33(5.1)	38(3.0)	24(2.1)	95(3.1)
법무부	8(1.2)	31(2.4)	49(4.2)	88(2.8)
기획재정부	20(3.1)	39(3.1)	27(2.3)	86(2.8)
고용노동부	10(1.5)	28(2.2)	25(2.1)	63(2.0)
중소벤처기업부	23(3.5)	13(1.0)	14(1.2)	5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1.2)	11(0.9)	10(0.9)	29(0.9)
여성가족부	2(0.3)	10(0.8)	13(1.1)	25(0.8)
교육부	4(0.6)	14(1.1)	5(0.4)	23(0.7)
국방부	11(1.7)	2(0.2)	5(0.4)	18(0.6)
기타	9(1.4)	25(2.0)	15(1.3)	49(1.6)
계	650(100.0)	1,271(100.0)	1,170(100.0)	3,091(100.0)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중분류(부처별 기능영역) 규제개선 건의 분포

- 행정규제 개선 건의 내용을 중분류 기준으로 규제개선 건의 수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중분류로 분류된 경우 그 빈도가 100건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봄
  - 중분류 분야의 빈도순에 따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주택 건축(286건)이며, 교통/물류(252건), 국토도시개발(221건), 환경오염관리(182건), 복지(171건), 농지농정(147건), 보건의료(143건), 일반행정(108건), 식물의약(식약청)(107건)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가장 빈도가 높은 3개 중분류 유형은 모두 국토교통부의 대분류의 속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중분류 유형 분포(100건 이상)

(단위: 수, %)

대분류	중분류	2019	2020	2021	빈도(비율)
행정안전부	일반행정	10	48	50	108(3.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농정	23	68	56	147(4.8)
국토교통부	국토도시개발	58	72	91	221(7.1)
	주택건축	42	106	138	286(9.3)
	교통/물류	57	106	89	252(8.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29	71	43	143(4.6)
	식품의약(식약청)	31	50	26	107(3.5)
	복지	16	61	94	171(5.5)
환경부	환경오염관리	31	77	74	182(5.9)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 소분류(부처별 세부기능) 규제개선 건의 분포

- 행정규제 개선 건의 내용을 소분류 기준으로 규제개선 건의 수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어느 소분류 유형이 대체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빈도가 50건 이상인 경우만을 살펴봄
  - 빈도 50 이상인 소분류 유형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주택행정(184건), 도로교통(111건), 토지용도(110건), 주택정비(104건), 복지(대상별)(92건), 식품위생(86건), 자동차관리(83건), 토지구제(74건), 농지관리(74건), 보건(73건), 산업시설(공간)(71건), 의료약사(70건), 산지관리(69건), 수질(67건), 폐기물(66건), 사회보장(경제취약계층)(60건), 물류(58건), 법무행정(법원행정처 포함)(53건), 주민등록(50건)으로 나타남
  - 이 중 앞에서 살펴본 100건 이상의 중분류와 다른 내용을 보인 것은 산업시설(공간)(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진흥 중분류 소속), 산지관리(환경부의 산림(산림청) 중분류 소속), 법무행정(법원행정처 포함)(법무부의 법무 중분류 소속)으로 나타남

[표 2-13]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 소분류 유형 분포(50건 이상)

(단위: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19	2020	2021	전체
행정안전부	일반행정	주민등록	0	24	27	5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농정	농지관리	13	29	32	7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진흥	산업시설(공간)	17	24	30	71
국토교통부	국토도시개발	토지구제	18	27	29	74
		토지용도	30	32	48	110
	주택건축	주택정비	19	32	53	104
		주택행정	23	74	85	182
		도로교통	27	46	38	111
	교통/물류	자동차관리	15	33	35	83
물류		15	27	16	5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보건	6	35	32	73
		의료약사	23	36	11	70
	식품의약(식약청)	식품위생	17	46	23	86
	복지	복지(대상별)	9	37	46	92
사회보장 (경제취약계층)		4	19	37	60	
환경부	환경오염관리	폐기물	12	28	26	66
		수질	12	29	26	67
	산림(산림청)	산지관리	13	22	24	59
법무부	법무	법무행정 (법원행정처포함)	3	18	32	53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소분류 기준 건의 3년 연속 발생 시군구

○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3년 연속(2019~2021) 최소 1회 이상 같은 소분류 내용을 연속해 건의한 경우에 해당되는 시군구(본청 포함)의 지역수는 21개 시군구로 전체 243개 시군구(시군구 226개 지역 + 광역시도 본청 17 지역) 가운데 약 8.6%를 차지하고 있음

- 3년간 연속 1회 이상 건의한 소분류 유형 중 여러 지역에서 언급되는 그 지역 빈도에 따라 정리하면, 4개 지역에서 건의한 소분류 유형은 토지용도(경남 김해시, 대전 본청, 대전 서구, 서울본청)와 주택정비(경기 성남시, 서울 강동구, 세종 본청, 인천 미추홀구)이며, 3개 지역에서 건의한 소분류 유형은 주택행정(경남 밀양시, 경북 안동시, 충남 서산시), 토지구제(경기 남양주시, 부천시; 경북 안동시)로 나타남
- 21개 지역에서 건의한 소분류 유형은 도로교통(대전 본청, 부산 본청)이며, 1개 지역 만이 건의한 소분류 유형은 문화사업(부산 동래구), 물류(경기 성남시), 벤처중소기업 육성(대구 본청), 산업시설(공간)(경남 김해시), 산지관리(강원 본청), 수산행정(경남 통영시), 수질(부산 기장군), 식품위생(충북 청주시), 폐기물(경남 창원시), 해양환경 관리(부산 본청)가 있음

[표 2-14] 소분류 기준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3년 연속 발생한 지역(시군구)

광역	시군구	대분류	소분류	2019	2020	2021	전체
강원	본청	환경부	산지관리	2	2	1	5
경기	남양주시	국토교통부	토지구제	2	1	2	5
	부천시	국토교통부	토지구제	1	1	1	3
	성남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	2	1	3	6
		국토교통부	물류	2	1	2	5
경남	김해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시설(공간)	1	1	1	3
		국토교통부	토지용도	1	1	2	4
	밀양시	국토교통부	주택행정	1	1	1	3
	창원시	환경부	폐기물	1	1	1	3
	통영시	해양수산부	수산행정	2	1	1	4
경북	안동시	국토교통부	토지구제	2	1	2	5
		국토교통부	주택행정	1	2	1	4
대구	본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중소기업육성	3	1	1	5
대전	본청	국토교통부	토지용도	2	1	2	5
		국토교통부	도로교통	3	3	1	7
	서구	국토교통부	토지용도	1	1	1	3

광역	시군구	대분류	소분류	2019	2020	2021	전체
부산	기장군	환경부	수질	1	1	1	3
	동래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사업	2	1	1	4
	본청	국토교통부	도로교통	1	2	1	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	1	1	1	3
서울	강동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	1	1	1	3
	본청	국토교통부	토지용도	2	5	2	9
세종	본청	국토교통부	주택정비	1	1	1	3
인천	미추홀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	1	3	2	6
충남	서산시	국토교통부	주택행정	1	2	2	5
충북	청주시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1	1	1	3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 법령별 빈도 분포

- 행정규제 개선 건의에서 인용한 법령 중 빈도 10 이상의 법령들을 그 빈도수를 중심으로 그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58회)이며, 다음의 순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5회), 농지법(36회), 건축법(35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회) 등이 있고, 특히 법률과 시행령을 고려해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총79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음

[표 2-15] 규제개선 건의과제 빈도 수 10건 이상의 관련 법령

관련법령	빈도
건축법시행령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농지법	36
건축법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자동차관리법	27
식품위생법	26

관련법령	빈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25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주민등록법시행령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
관광진흥법	20
농지법시행령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주민등록법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19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
의료법	1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8
폐기물관리법	1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7
농어촌정비법	1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7
지방세 특례제한법	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5
대기환경보전법	15
산지관리법 시행령	15
약사법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4
산지관리법	14
공중위생관리법	13
수산업법	13

관련법령	빈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0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8
도로교통법 제2조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5
농지법 제32조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
주민등록법 제29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5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 소관부처 분포

-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발생한 행정규제 개선 건의 3091개의 처리 과정에서 관련된 소관부처의 수는 47개임
  - 관련 개선 건의 빈도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관련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 (862건, 27.9%)이며, 다음으로 100건 이상의 규제 개선 건의와 관련된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344건), 보건복지부(310건), 환경부(245건), 농림축산 식품부(237건), 산업통산자원부(160건), 문화체육관광부(124건), 식품의약품안전처(107)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6]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 분포

소관부처	빈도(%)
국토교통부	862(27.9)
행정안전부	344(11.1)
보건복지부	310(10.0)
환경부	245(7.9)
농림축산식품부	237(7.7)
산업통상자원부	160(5.2)
문화체육관광부	124(4.0)
식품의약품안전처	107(3.5)
해양수산부	95(3.1)
산림청	67(2.2)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2)	63(2.0)
법무부	52(1.7)
중소벤처기업부	50(1.6)
경찰청	40(1.3)
법원행정처	3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8)
여성가족부	25(0.8)
교육부	23(0.7)
문화재청	20(0.6)
공정거래위원회	16(0.5)
국방부, 소방청(2)	15(0.5)
조달청	12(0.4)
통계청	10(0.3)
해양경찰청	8(0.3)
농촌진흥청, 외교부(2)	7(0.2)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6(0.2)
국가보훈처, 국세청, 질병관리청(3)	5(0.2)
특허청	4(0.1)

소관부처	빈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	3(0.1)
국가기술표준원, 방송통신위원회(2)	2(0.1)
관세청,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일부(8)	1(0.0)
전체	3091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 광역시도별 소관부처 분포

- 행정규제 개선안에 대한 소관부처 분포를 광역시도별 소관부처 빈도를 중심으로 상위4개 소관부처를 정리하였으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행정규제 개선 요구안이 광역시도별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음
  - 앞의 소관부처 분포에서 보듯이 전체 상위 4개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862), 행정안전부(344), 보건복지부(310), 환경부(245)이며, 광역시도 중 경기, 세종 지역에서 건의한 개선안의 소관부처는 그 순서가 일치하지 않으나, 상위 4개 소관부처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는 상위 4개 소관부처의 1개 또는 2개 소관부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8개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위 4개 소관부처에 포함되었고, 대구, 서울, 울산, 전남의 4개 지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함되었음
  - 광주·대전·부산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되었고, 강원도의 경우는 산림청이 포함되었으며, 인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에는 해양수산부가 상위 4개 소관부처로 포함되었음

**[표 2-17]**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광역시도 별): 상위 4개 소관부처 분포

광역 시도	상위 4개 소관부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강원	국토교통부(18.6%)	행정안전부(10.9%)	산림청(10.9%)	농림축산식품부(8.5%)
경기	국토교통부(42.2%)	보건복지부(10.2%)	행정안전부(%)	환경부(7.3%)

광역 시도	상위 4개 소관부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경남	국토교통부(30.0%)	환경부(10.0%)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9.7%)
경북	국토교통부(22.4%)	농림축산식품부(15.1%)	보건복지부(12.8%)	환경부(9.6%)
광주	행정안전부(21.1%)	보건복지부(19.7%)	국토교통부(17.8%)	문화체육관광부(7.2%)
대구	국토교통부(25.7%)	행정안전부(14.0%)	보건복지부(12.3%)	산업통상자원부(7.3%)
대전	국토교통부(33.1%)	행정안전부(14.4%)	보건복지부(5.0%)	문화체육관광부(5.0%)
부산	국토교통부(23.6%)	행정안전부(15.9%)	환경부(11.5%)	문화체육관광부(9.6%)
서울	국토교통부(31.3%)	행정안전부(14.8%)	보건복지부(6.3%)	산업통상자원부(5.5%)
세종	국토교통부(23.6%)	환경부(16.4%)	행정안전부(7.3%)	보건복지부(7.3%)
울산	국토교통부(31.3%)	산업통상자원부(16.4%)	행정안전부(7.5%)	환경부(7.5%)
인천	국토교통부(34.7%)	보건복지부(11.9%)	행정안전부(11.0%)	식품의약품안전처(10.2%)
전남	국토교통부(18.1%)	농림축산식품부(15.1%)	환경부(9.5%)	산업통상자원부(8.5%)
전북	국토교통부(16.1%)	보건복지부(13.5%)	행정안전부(11.5%)	농림축산식품부(11.5%)
제주	환경부(15.4%)	해양수산부(15.4%)	농림축산식품부(15.4%)	국토교통부(12.8%)
충남	국토교통부(23.7%)	보건복지부(16.1%)	행정안전부(10.6%)	농림축산식품부(9.5%)
충북	국토교통부(24.5%)	농림축산식품부(11.9%)	행정안전부(10.7%)	환경부(10.1%)

출처: 행정안전부(2022d)

## 제3절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

### 1. 규제영향분석<sup>7)</sup>

#### □ 개요

-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은 규제담당자가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의사결정 수단을 의미함(국무조정실, 2023: 2)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정의함
  - 신설 및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해야 함
  - 사전 규제영향분석은 우리나라 규제관리 체계에서 규제품질을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 중 하나이며, 규제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규제도입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사전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규제의 영향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본 내용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개요, 수행기준, 한계점을 다루며, 세부적인 목표, 작성방법 등 제3장 제1절 국내 유사 사례검토 1.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룸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법안의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으로 대다수의 OECD 가입국에서 규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그 외 많은 국가에서도 활용되고 있음(OECD, 2020)
  - 규제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 여부와 규제를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책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에 의한 비용 부담이 편익보다 큰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정부와 사회에서 간과하는 규제에도 사회적 편익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OECD, 2020)
-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규제와 같은 정부개입이 규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최대한 고려하여,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음

#### □ 규제영향분석 수행 기준

- OECD(2020)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OECD, 2020)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형성 과정의 시작단계에서 수행
  - 규제안에는 현재 직면한 문제와 규제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제시
  - 규제영향분석시 비규제대안을 포함하여 모든 잠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
  - 규제에 관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모든 잠재 비용과 편익을 평가
  -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와 과학적인 전문지식에 근거한 수행
  -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전달
- 이러한 규제영향분석 등 입법 과정의 사전영향평가 방식은 결국 법규의 제정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해야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저항과 지연을 예방하고, 입법 이후에도 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시사함(박균성, 2009)

-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도구의 역할과 함께 국민이나 각종 이해관계자에게 규제의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합의 형성도구의 역할을 수행(한귀현, 2016)
  -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신조로 여겨진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보유함(OECD, 2020)
  - 또한, 규제정책의 입안과 행정입법 등 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 분석이 갖는 제도적 차원의 의의는 실체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 절차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입안 및 입법 절차의 개선, 행정재량의 통제, 평가 기법으로서의 중립성 등에서 찾을 수 있음(한귀현, 2016)
- 규제영향분석 등 우리나라의 규제심사 제도에 대한 연구사례(김유환, 2017)에서는 평가와 분석의 기준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규제영향분석 등의 정책분석 시스템, 규제심사 절차의 적정성,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 및 정부 예산과의 연계 심사, 규제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시스템, 규제심사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경쟁촉진 및 대체질서에 대한 고려, 심사의 체계성 등이 제시됨(김유환, 2017)

#### □ 규제영향분석 국외 현황비교

- OECD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상위법령의 입안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지표의 구성 요소를 살펴 보면,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이나 투명성, 규제영향분석의 체계적 도입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규제영향분석의 감독 및 질 관리의 측면에서는 앞선 세 가지 요소에 비해 총점이 낮게 집계됨
  - 하위법령의 입안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제영향

- 분석의 감독 및 질 관리 분야의 총점이 규제영향분석의 방법론이나 투명성, 규제영향분석의 체계적 도입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확인함
- 이와 같은 국제적 현황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구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감독과 질 관리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검토하고,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매년 발표하거나 일몰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EU와 마찬가지로 규제감독(regulatory oversight)과 품질관리(quality control)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 □ 규제영향분석의 한계<sup>8)</sup>

- 미국에서 약 50년 전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규제품질을 관리하고자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모든 OECD 회원국이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품질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규제 대상이 되는 일반국민 또는 기업의 규제부담을 축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제한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이 대체로 인정됨
  - 우리나라도 규제합리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98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도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한편, 사전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 등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대안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정책의 효과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음

8) 자료: 이민호(2017)

- 첫 번째로 사전 규제영향분석은 정량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항목이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한계가 존재
  - 이는 자료제약으로 인해 정량화 또는 화폐화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생명가치, 환경가치 등 주관적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너무 많다는 데에서 기인함
  - 특히 규제가 신설되면 해당 규제로 인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지를 관련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예측·분석하는 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두 번째는 제도 운영상의 한계점으로, 우리나라에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환경이나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전 규제영향분석이 충실하게 작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함
  - 최근 사전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함
  - 이는 규제의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규정에서도 나타나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의거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 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세 번째로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영향 및 효과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됨
  - 사전적으로 자료의 제약, 피규제자가 느끼는 규제부담의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상당하여 규제의 효과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상존
  -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분석의 용이성이 달라지겠지만, 신산업·신기술을 위한 규제가 신설될 경우 사전적인 분석의 결과와 실제 결과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음
  - 또한, 코로나19 등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급하게 도입된 규제의 경우에는 사전적인 분석보다는 사후에 규제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2. 규제사후영향평가

### □ 개념

- 규제영향분석과 달리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의 규제개혁 매뉴얼(2016)에 ‘규제사후평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음
- 규제사후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하여 규제가 도입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규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 시행으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또는 효과 분석·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규제 사후평가는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개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함
  - 규제사후평가는 규제실시의 목표 달성여부, 달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규제사후평가 시 규제목표가 여전히 타당한지, 해당 규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규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인지 등을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는지 판단함
  - 규제사후평가는 규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파악이 목적임(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2016: 68)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념이 법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으나 규제 개혁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사후평가의 개념 및 목적 등의 내용을 통해 규제사후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정책평가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규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규제목표 달성의 정도를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이민호, 2017: 37-38)

## □ 적용원칙 및 절차

- 규제사후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이므로 규제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수행함
- 규제 도입시의 규제목표가 변경된 경우 또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함
  - 규제사후평가 결과 해당 규제가 예상보다 비용이 높거나 규제 순응 수준이 낮은 등 규제에 대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면 규제법안을 재설계하거나 기타 대안을 발굴하여 규제 목표 달성을 추구해야 함
  - 규제사후평가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규제사후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실시해야 함
  - 규제의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인 국민,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함
  - 규제개선 또는 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을 포함함
  - 규제개선 또는 폐지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함
- 규제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폐지 및 유지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필요한 입법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2016: 68-70)

##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

- OECD와 EU에서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기 위해 사전 규제영향분석(impact analysis: IA)과 규제사후영향평가(ex-post evaluation)가 ‘핵심적인 역할(two key elements)’을 수행한다고 권장하고 있음
  -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기애 사전 규제영향분석만큼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정책이 비교적 선진화된 OECD나 EU 국가에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에 비해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양용형 외, 2023: 13)

- 최근 OECD의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및 EU 국가의 대다수가 규제 사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중 3분의 1만이 규제 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OECD, 2021), EU 국가 중에서는 4분의 1만이 갖추고 있음
  - 최근 Covid19, 화재 등으로 인해 신설된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다수 도입됨에 따라 ‘규제 재고(stock of regulation)’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함(OECD, 2021)
- 코스타리카, EU 및 OECD 37개 회원국 중 4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위한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계획된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잘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갖춘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함
  - OECD는 규제가 의도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고, 해당 규제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규제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해당 평가 결과로부터 배울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함(OECD, 2019)
- OECD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준은 OECD 38개 국가 중 3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는 규제감독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제수준이 향후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규제정책 사이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의 형식적인 평가에서 더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OECD, 2019)

###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 관계

#### □ 대체적 관계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규제영향분석의 대체적 관계로 접근하는 관점에 따르면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이 실제 규제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함
  - 따라서 사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 규제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예측된 규제의 불확실한 효과를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의미가 있음(Kirkpatrick & Parker, 2007: 6)
  -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도출된 규제비용이 실제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규제비용의 강소를 기술발전을 통해 가능성을 강조함
  - 반면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도출된 규제비용이 실제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규제비용항목의 누락을 강조함(이민호, 2018: 198)
-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도출된 규제효과와 실제 규제효과 간 차이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규제영향분석의 대체적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강조함
  - 규제사후영향평가 역시 해당 규제의 모든 사회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과 다르게 규제 시행 이후 실질적인 행위자들의 행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추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렇지만,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예비검토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Harrington, Morgenstern & Nelson, 2000: 298)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경합적인 관계이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이민호, 2018: 199)

#### □ 보완적 관계

-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를 보완적 관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과 별개로 규제 실시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의 유지, 폐지 및 개선을 판단하는 활동으로서의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강조함

- 정책결정자가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과 사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사후영향평가가 규제영향분석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을 통해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한 평가기준이나 대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정책결정자가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는 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차별적인 평가방식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이민호, 2018: 198-199)

○ 규제영향분석은 사전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한계를 강조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의 장점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분석 비용대비 효율적으로 규제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함(Kirkpatrick & Parker, 2007: 1)

-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대상범위가 규제비용에서 규제편익까지 확대와 함께, 규제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까지 포함되면 비용대비 효율적인 규제판단 기준이 아닌 규제정책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에서는 건강, 환경, 안전 등 사회적 효과를 구체화하지 못했으나 향후 사회적 효과에 대한 계량화를 통해 규제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짐(Harrington, Heinzerling & Morgenstern, 2009: 12).
- 이러한 관점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판단하여 분석시기에 따라 규제에 대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 (Parker & Kirkpatrick, 2012: 27)

○ 규제에 대한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로 시점에 따라 평가를 다르게 할 뿐이며 동일한 방법으로 규제의 편익 및 비용을 파악하여 규제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을 제외하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제도적으로 유사성이 있음

- 규제영향분석은 사전적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정당성과 정책수용성이 확대될 경우 기존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비교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는 대체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가 적절함(U.S. OMB, 2011: 7-9)

## 제4절 소결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9,1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이후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된 규제개선 건수가 매년 2,300건 이상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 중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4,455건(48.7%)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총 4,445건 중 규제개선이 수용된 건의과제는 1,414건(31.7%), 불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3,041건(68.3%)으로 나타남
  -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이 2019년 38.6%에서 2021년 27.1%로 감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어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원인으로는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전문적 분석방법의 부족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서의 체계적인 작성방법 및 매뉴얼이 필요함

### □ 시도별 규제개선 수요 격차

- 최근 3년 간 전체 시·도 가운데 규제개선 건의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3,091건)'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규제개선 수요가 타 지자체에 비해 광범위하게 빈발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 규제개선 건의 수의 증가 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세상 향후 개선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
    - 73건(2019년) → 111건(2020년) → 266건(2021년)

- 규제개선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보다는 경기·경남·경북 등 도(道)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 지역별 소관 규제 개선수요(국토교통부)

- 경기·경남·대전·울산·인천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주택건축·국토도시개발·교통물류 등)에 대한 규제개선 수요가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타 부처 소관규제에 대한 개선 수요는 분산되어 있는 지자체로 확인됨
  - 경기·경남·인천의 경우 토지구제·토지용도·주택정비·주택행정 등의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가 3년 연속 보고된 지역으로 개선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제주·광주는 전체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의 개선 건의 빈도가 1순위로 집계되지 않는 지역으로, 토지·주택 부문에 대한 개선수요가 빈발하는 타 시·도와 달리 복합적인 영역에 걸쳐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광주는 행정안전부(21.1%)와 보건복지부(19.7%) 소관 규제의 개선수요가 타 부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제주의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규제에 대한 개선 수요가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되며, 3개 부처의 빈도비율은 15.4%임
  - 특히, 해양수산부 소관 규제가 전체 건의 빈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95건)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제주의 개선수요 집중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 지역별 소관 규제 개선수요(그외 부처)

- 규제개선 과제의 소관부처 빈도 집계에 따라 각 시·도의 상위 4개 부처를 도출한 결과, 전국에 걸쳐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주요 소관부처로 확인된 반면 특정 시·도에 한하여 주요 소관부처에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어 별도의 개선 수요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다음은 위의 특정 시·도에서 집계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산림청를 중심으로 개선 수요를 제시함

## ○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개선 수요는 다음과 같음

- 대구·서울·울산·전남 4개 지역에서는 상위 4개 소관 부처 안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들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공장용지비율이 낮거나(서울·전남) 높은(대구·울산) 지역들로 확인됨
- 가스/발전의 유형에서 지역별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전기차 관련 사업이 주 내용을 보이는 서울과 전남에 비해 공장용지 비율이 비교적 높은 대구, 울산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전기발전 등의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안전관리 유형 관련해서는 서울과 전남의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대구, 울산의 경우는 계량기, 고압가스 안전관리, 에너지 안전 관리 등의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선 수요는 다음과 같음

- 광주·대전·부산 지역의 상위 4개 부처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들은 모두 인구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체육시설의 경우 부산이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3개 지역 모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 낮은 저조한 수준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개선 수요는 문화·관광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됨

## ○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규제개선 수요는 다음과 같음

- 소관규제 상위 4개 부처 집계에 따르면 유일하게 강원과 제주 지역이 각각 산림청과 해양수산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과 제주의 지리적 특성(임야면적·해면부)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강원도의 경우 민간통제선 이북지역의 개발 관련 내용에 다수 확인되며, 산지 전용허가 기준의 완화, 산림자원 보호, 관리체계 구축 등의 개선 건의안이 존재함
- 제주도는 낙지 어선 안전성 및 신고 관련 건의안과 더불어 선박인력 운영 탄력성 요구와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제한 규제의 개선, 조업을 중지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 조업교육 면제 등이 있음

□ 소관부처별 규제개선 수요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따라 집계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규제가 전체 건의의 28%(865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보건복지부 13.8%(427건), 행정안전부 13.3%(410건), 환경부 10.1%(312건), 농림축산식품부 7.9%(244건) 순의 비중을 기록함
  - 소관부처 내 주요기능(중분류-소분류)에 따른 빈도분포 집계에 따르면, 건의되는 개선과제 가운데 시급성과 중요성이 집중되는 부처별 주요기능을 식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시됨

[표 2-18] 규제개선 건의과제 소관부처별 규제 주요 개선과제

소관부처	중분류	소분류
행정안전부	일반행정	주민등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농정	농지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진흥	산업시설(공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개발	토지구제
		토지용도
	주택건축	주택정비
		주택행정
		도로교통
	교통/물류	자동차관리
물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보건
		의료약사
	식품의약(식약청)	식품위생
	복지	복지(대상별)
사회보장 (경제취약계층)		
환경부	환경오염관리	폐기물
		수질
	산림(산림청)	산지관리
법무부	법무	법무행정 (법원행정처포함)

## □ 규제개선 수요 유형 분류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및 소관부처별 규제개선 수요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반영한 결과 규제개선 수요 유형을 분류함
  -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분류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타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함
  - 소관부처 기준을 토대로 소관부처별 규제 주요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유형을 분류함
- 소관부처별 규제개선 건의 분포 결과 규제개선 건의 수가 전체 중 10% 이상을 차지한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신산업, 산업시설, 과학·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개선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규제개선 건의 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첫 번째 분야는 국토·교통 분야이며, 세부 분야는 토지, 주택, 교통·물류, 건설 등이 포함됨
  - 두 번째 분야는 규제개선 건의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보건복지부의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복지 분야이며, 세부 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 복지 등이 포함됨
  - 세 번째 분야는 규제개선 건의 수가 세 번째로 많은 행정안전부의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 분야이며, 세부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안전, 법무, 국방, 노동, 교육 등이 포함됨
  - 네 번째 분야는 규제개선 건의 수가 네 번째로 많은 환경부의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문화 분야를 포함하여 환경·문화 분야이며, 환경오염, 친환경, 해양, 수산, 산림, 축산, 문화 등이 포함됨
  - 다섯 번째 분야는 신산업, 산업진흥에 대한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진흥 분야이며, 세부 분야는 신산업, 산업시설, 과학·정보통신, 창업 등이 포함됨



## 제3장

# 국내·외 사례검토

제1절 국내 유사 사례검토

제2절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검토

제3절 소결



## 제1절 국내 유사 사례검토

## 1. 규제영향분석

## 1) 개요

## □ 개념

-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가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제 의사결정 수단임(국무조정실, 2023: 2)
- 신설 및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법적근거

- 규제영향분석의 법적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심사)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임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 ③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목표

-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좋은 규제를 제시함
  -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하여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함
-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함
  - 규제의 내용에 따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또는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와 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
-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함
  -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에 따른 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비효과적인 규제를 사전 방지함
-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을 강화함
  -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의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 규제자의 역량을 강화함(국무조정실, 2023: 6)

##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 □ 작성유형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쟁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이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됨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내용의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 및 관련 규제는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함
  - 간이형을 제외한 모든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는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함(국무조정실, 2023: 16)

**[표 3-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유형별 차이점**

구분	내용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대안 검토시 단일대안 제시</li> <li>• 비용·편익 분석시 정성분석 가능</li> </ul>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복수의 규제대안들에 대해 대안명과 대안별로 구체적 내용 제시</li> <li>• 도입대상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을 비롯하여 규제영향 분석서의 모든 평가항목을 작성</li> <li>•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 정비계획 작성</li> </ul>

출처: 국무조정실(2023: 16) 재구성

**□ 구성 및 세부항목**

- 규제영향분석서는 표지인 규제개요와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계획으로 구성됨(국무조정실, 2023: 17-18)

**[표 3-2] 규제영향분석서 구성 및 세부항목**

구성	세부항목
규제개요 (표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사무명</li> <li>2. 규제조문</li> <li>3. 위임법령</li> <li>4. 유형</li> <li>5. 입법예고</li> <li>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li> <li>7. 규제내용</li> <li>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li> <li>9. 도입목표 및 이해관계자</li> <li>10. 비용·편익분석</li> <li>11. 영향평가여부</li> <li>12. 일몰설정여부 등</li> <li>13.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여부</li> <li>14. 비용감축제</li> <li>15. 규제정비계획</li> <li>16. 신규조문대비표</li> </ol>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li> <li>2.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li> <li>3. 규제목표</li> </ol>
II. 규제의 적정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li> <li>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li> <li>3.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li> <li>4. 비용·편익분석</li> </ol>
III. 규제의 실효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의 순응도</li> <li>2. 규제의 집행 가능성</li> </ol>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진 경과</li> <li>2. 향후 평가계획</li> <li>3. 규제정비계획</li> <li>4. 종합결론</li> </ol>

출처: 국무조정실(2023: 17-18) 재구성

### □ 항목별 작성방법-규제개요(표지)

- 규제개요에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유형,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내용,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 여부,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비용감축제, 규제 정비계획, 신구조문 대비표가 포함되어야 함(국무조정실, 2023: 21-22)

**[표 3-3]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개요-표지)**

세부항목	주요내용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규제조문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
위임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유형	• 신설/강화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추진배경 및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
규제내용	•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를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 규제의 계량적 비용·편익분석 요약표
영향평가여부	• 기술·경쟁·중소기업영향평가 시행여부
일몰설정여부 등	•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여부, 사유 등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여부
비용감축제	• 규제비용감축제 적용여부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유발되는 직접순비용
규제정비계획	•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부담 상쇄를 위한 기존규제 정비 계획
신구조문 대비표	• 기존규제와 신설 또는 강화되는 법령 조문의 대비표

출처: 국무조정실(2023: 21-22) 재구성

## □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의 세부항목에는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과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그리고 규제의 목표가 있음
- 추진배경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기술함
  - 현황이란 지금 현재의 상태, 다시말해 정부의 추가적 개입이나 결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 문제점이란 규제의 신설(강화)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상태를 의미함
-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시장기능 또는 민간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정부가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추가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함
  - 문제점에서 지적한 시장실패나 기존 규제의 실패, 혹은 기타 재해나 위험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정부가 개입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함
  - 비규제대안이 문제해결에 부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않아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함
- 규제 대안의 검토 및 선택은 다시 대안의 비교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그리고 대안의 선택 및 근거로 세분화됨
  - 대안의 비교는 먼저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복수의 규제대안들에 대하여 대안명과 대안별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는 규제 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기술함
  - 이후 제기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현행유지안을 포함해 규제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되는 규제대안을 비교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나 피규제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혹은 관계 정부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반영여부 등 조치결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최종대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상세한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함

- 규제의 목표는 규제대안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의도하는 미래의 상황을 서술함(국무조정실, 2023: 23-29)

**[표 3-4]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세부항목	주요내용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현황자료, 경위 등을 서술</li> <li>• 정부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사회문제가 중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히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li> </ul>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의 규제대안 제시 및 대안의 비교표(규제대안별 장·단점)</li> </ul> </li> <li>•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비교시 고려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조치결과</li> </ul> </li> <li>• 대안의 선택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된 대안의 내용과 선택하게 된 상세 근거</li> </ul> </li> </ul>
규제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대안(규제)의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li> </ul>

출처: 국무조정실(2023: 23-29) 재구성

#### □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적정성

- 규제의 적정성에는 목적·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에 관한 고려사항,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 등이 포함됨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은 도입대상 규제대안이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기술함
  - 비례적 타당성 판단기준은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 문제나 위협과 비교하였을 때 도입하려 하는 규제가 과도하거나 과소히 개입하지 않고 적정한지의 여부, 규제에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지 여부가 있음
-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영향평가로서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의 실시 필요성 여부를 양식표 상을 통해 선택한 후, 해당되는 영향평가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결과를 작성함

-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에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수준에 대한 판단의 국제적 근거를 제시함
  - 유사입법 사례는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와 유사한 영역의 타법사례를 조사하여 분석·비교함으로써 규제의 수준과 품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
-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 분석 결과를 작성함(국무조정실, 2023: 30-44)

**[표 3-5]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적정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수단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는지 검토</li> </ul>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시 기존·유사제도와와의 중복성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 등 검토</li> <li>- 경쟁영향평가: 도입대상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li> <li>- 중소기업영향평가: 도입대상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li> <li>-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방안 등 예비분석 결과표 작성</li> </ul> </li> <li>• 기타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유인적 설계,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여부</li> </ul> </li> </ul>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적정성 관련 국제기준, 해외 선진국사례 등을 제시하여</li> <li>• 국제적 기준에서의 판단근거 제시</li> <li>• 국내법령 중 유사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규제수준 및 품질 등 판단근거 제시</li> </ul>
비용·편익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하고자 하는 선택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분석 결과</li> </ul>

출처: 국무조정실(2023: 30-44) 재구성

### □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실효성

- 규제의 실효성에는 규제 순응도와 규제의 집행가능성 등이 포함됨
- 규제 순응도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준수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피규제자가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할 때 규제준수의 수월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장애 및 해소방안에 관하여 기술함
  - 유사분야 규제사무의 순응도 등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의 준수 수준을 면밀히 검토함
- 규제의 집행가능성은 행정적 집행가능성 및 재정적 집행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규제집행을 담당하게 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나 인력 또는 일선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집행 후 필요한 관리·감독 여건 등을 비롯해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은 규제를 집행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수준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여건과 같은 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함(국무조정실, 2023: 57)

**[표 3-6]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규제의 실효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규제의 순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자 준수가능성: 피규제자의 현실적 규제준수 가능성</li> </ul>
규제의 집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집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적 집행가능성: 조직·인력 및 일선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여건 검토</li> <li>-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예산 사황을 고려하였는지 검토</li> </ul> </li> </ul>

출처: 국무조정실(2023: 57) 재구성

□ 항목별 작성방법-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추진계획은 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실시한 내부검토 과정과 내용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경과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규제도입을 고려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 시작부터 최종 결정까지 일련의 절차들을 시간 순서에 맞춰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규제심사과정에서 재심사 등에 따른 규제대안의 변천과 수정·보완 사항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 평가계획은 규제집행이 이루어진 후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이나 일몰설정기한 등에 근거하여 사후평가 시점과 평가방법 및 지표 등에 대한 사후평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규제 정비계획은 해당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규제자 및 일반 국민의 부담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해당 법령이나 타법령(행정규칙 포함)의 기존규제 중 최근에 정비를 추진한 사항(당해년도 및 전년도)이나 1년 내 정비를 추진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종합결론은 규제영향분석서 전체 내용의 종합적 결론을 제시함

[표 3-7]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작성방법(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세부항목	주요내용
추진 경과	• 규제 도입을 위한 내부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 기술
향후 평가계획	• 정책지표, 규제준수율 등 구체적 목표 제시 후 사후관리 계획 제시
규제정비계획	•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 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 제시
종합결론	•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종합결론

출처: 국무조정실(2023: 21-22) 재구성

□ 항목별 체크리스트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 문제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정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

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 향후 평가계획, 규제 정비계획이 있음(국무조정실, 2023: 19)

**[표 3-8] 규제영향분석서 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항목	주요내용
문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하려는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 관하여 충분한 현황 분석과 이를 토대로 문제점의 본질, 규모, 발생이유 등을 분석·제시하였는가?</li> <li>• 사용한 정보는 정확하게 수집된 정보인가?</li> <li>• 적절한 자료를 근거로 활용했고, 모든 자료는 그 근거(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였는가?</li> </ul>
정부개입의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설명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규제의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인가?</li> </ul> </li> <li>• 규제이외에 정부지원·교육·홍보 등의 비규제적 대안을 검토하였는가?</li> </ul>
규제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하는 규제의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li> <li>•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과가 측정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는가?</li> </ul>
규제대안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비교하였는가?</li> <li>• 규제의 강도나 규제방식 측면에서 적절한 대안이 검토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우선</li> <li>-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 여지 확대</li> <li>- 투입기준에 따른 규제보다는 성과기준에 따른 규제를 우선 적용</li> <li>- 정부의 일방적 규제에 앞서 자율규제를 우선</li> <li>- 국제적 기준과 더불어 비례원칙에 근거</li> <li>-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내·외 피규제자 간 차별발생을 방지</li> </ul> </li> </ul>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대안이 갖는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통해 충실히 실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 집단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였는가?</li> <li>-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부담하는 비용과 편익을 성실하게 추계하였는가?</li> </ul> </li> <li>• 제시된 규제대안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가?</li> </ul>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적·정성적 영향분석을 통해 최적의 규제대안을 선택하였는가?</li> <li>• 다양한 해외사례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는가?</li> <li>•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는가?</li> <li>• 피규제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절차 등을 간소화 할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li> </ul>

세부항목	주요내용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신설 초기부터 피규제자·이해관계자·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li> <li>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여부와 구체적 사항을 충실히 제시하였는가?</li> </ul>
집행의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집행을 위한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되어 규제 집행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가?</li> <li>피규제자가 규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기술적으로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성장 촉진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가?</li> <li>-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시기·규제방법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는가?</li> </ul> </li> </ul>
향후 평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집행 후 평가시점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li> </ul>
규제정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규제정비 대상 법령과 조문 및 규제내용이나 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는가?</li> </ul>

출처: 국무조정실(2023: 19) 재인용

## 2. 경쟁영향평가

### 1) 개요

#### □ 개념

-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위가 사전에 검토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권고하는 제도를 의미함
- 경쟁영향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 부처의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권고하는 제도임
  - 신설·강화되는 법령(안)의 규제심사단계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공정거래위원회, 2018: 4)

## □ 도입

- OECD 경쟁위원회는 2007년에 경쟁영향평가 툴킷(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을 발간하여 회원국에게 사용을 권고함
  - 규제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임
- OECD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제도화됨
- 2009년도부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가 제도화됨에 따라, 같은 해에 처음으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설명서)’ 제1집이 발간되었고, 2012년도에 개정판이 발간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이 3.0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2년경쟁영향평가 매뉴얼(설명서)의 내용을 전면 수정 및 보완됨
  - 시장지배력, 진입 장벽, 시장 진입, 시장 퇴출, 혁신과 효율성 등 경쟁영향평가와 관련된 핵심 개념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추가함(공정거래위원회, 2018: 2-4)

## □ 유형

- 경쟁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개입이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음
  - 새로운 규제에 집중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규제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전체 시장에 집중할 수도 있고 혹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상품 시장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도 있음
- 새로운 규제가 개발되거나 도입되면, 많은 국가가 새로운 규제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검토함
  - 이러한 절차를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이라고 하며, 영향분석에는 명시적인 경쟁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

- 때로는 기존 규제에 규제가 다시 제정되기 전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일몰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몰조항 역시 규제의 경쟁 제한성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
- 시장조사는 어떤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현황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함
  - 시장조사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이 아닌 사후분석의 한 형태임
- 부문 검토에서는 부문과 관련된 규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다음 경쟁제한성에 대해 하나씩 검토하게 되며, 시장조사와 마찬가지로 부문 검토는 사후 분석의 한 형태임
  - 부문 검토는 경쟁이 부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가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대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개별 규제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함
  - 부문 검토는 부문을 담당하는 부처가 수행할 수 있지만, 때때로 담당 부처가 기존 규제에 얽매어 있거나 혹은 경쟁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
  - 이런 경우 다른 정부기관이나 혹은 외부 전문가와 같은 외부 주체가 부문 검토를 수행할 수도 있음(공정거래위원회, 2018: 11-13)

## □ 고려사항

-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면 해당 산업의 기존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더 적은 경쟁과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여 규제의 효과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임
  - 규제는 종종 전형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기업들에 의해 제안되며, 시장에서 진입, 가격 그리고 경쟁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임
  -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한 가지 핵심사항은, 경쟁당국이나 학계 같은 결과에 대해 기대권이 없는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공정거래위원회, 2018: 45)

## □ 기대효과

- 경쟁영향평가에 대한 각 부처 규제 사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각 부처 규제사무 담당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경쟁영향평가의 핵심 개념들과 더불어 단계별 실제 적용 사례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은 경쟁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법령 및 하위 규정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공정거래위원회, 2018: 3)

## 2) 경쟁영향평가 절차 및 작성방법

### □ 절차

- 경쟁영향평가는 예비평가, 심층평가(대안의 제시·비교·권고) 등의 순서로 진행됨
-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은 평가할 정책을 확인하는 것임
  - 평가할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간단할 수도 있고(새로운 법률이나 규제를 검토하는 경우), 부문 검토 또는 시장조사에서와 같이 복잡할 수도 있음
- 예비평가는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Checklist)의 적용이며,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은 4가지 상위 질문과 그 아래에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식별해내는 하위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음(공정거래위원회, 2018: 14)
-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checklist)의 4개 항목을 적용하여 점검함
  - 만약 규제(안)이 다음의 네 가지 효과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경쟁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함(공정거래위원회, 2018: 5)

[표 3-9]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예비평가)

점검목록	내용
공급자의 규모 및 범위에 대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가 다음과 같을 경우 공급자의 규모 또는 범위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li> <li>-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허가·인가의 절차를 설정</li> <li>- 공급자의 상품·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li> <li>- 공급자의 시장진입이나 퇴출비용을 증가</li> <li>- 공급자의 상품·용역·자본·노동의 흐름을 제한</li> </ul> </li> </ul>
공급자의 경쟁능력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가 다음과 같을 경우 공급자의 경쟁능력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의 상품·용역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li> <li>- 공급자가 상품·용역을 광고·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li> <li>- 특정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li> <li>-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을 설정</li> <li>- 다른 공급자에 비해 특정 공급자의 생산비용을 증가</li> </ul> </li> </ul>
공급자의 경쟁유인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가 다음과 같을 경우 공급자의 적극적 경쟁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규제·공동규제 체계를 형성</li> <li>- 공급자에게 가격·생산량·매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li> <li>- 특정 산업 활동 및 공급자 활동을 일반경쟁법 적용에서 배제</li> </ul> </li> </ul>
소비자에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가 다음과 같을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 및 정보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할 공급자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제한</li> <li>- 공급자 변경에 필요한 전환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li> <li>- 소비자가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경</li> </ul> </li> </ul>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18: 5-6) 재구성

- 점검목록에서 경쟁제한성이 확인되면, 경쟁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제한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 경쟁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없다면 평가를 중단할 수 있으나, 경쟁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공정거래위원회, 2018b: 14-15)
- 예비평가 결과, 4개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규제에 의한 가격과 산출량의 변동부터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혁신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

- 심층평가는 총 5단계계를 통해 분석함
  - 규제에 대한 이해, 관련 시장의 정의, 관련 시장의 현황 파악, 경쟁영향평가, 대안의 제시로 진행됨
- 예비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권고함(공정거래위원회, 2018a: 6-7)

**[표 3-10] 경쟁영향평가 심층평가 분석과정 및 내용**

점검목록	내용
규제안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안의 내용과 규제안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파악</li> <li>• 규제안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li> <li>• 규제안이 목적에 기여하는 이유와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li> </ul>
관련 시장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안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을 정의하고, 경쟁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정</li> </ul>
관련 시장의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양상과 특성을 정성적으로 파악</li> </ul>
경쟁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제한의 범위 파악: 규제의 강화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범위를 파악</li> <li>• 경쟁제한의 효과 평가: 공급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침해당하는 수준 평가</li> </ul>
대안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보다 경쟁제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더 클 경우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li> </ul>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18: 6-7) 재구성

#### □ 경쟁영향평가 작성 매뉴얼 항목 및 내용

- 경쟁영향평가는 핵심개념, 예비평가, 심층평가, 사후평가, 평가절차 및 기관 간 역할 분담, 경쟁영향평가 실제 적용사례 제시가 포함되어야 함(공정거래위원회, 2018: 8)

**[표 3-11] 경쟁영향평가 작성 매뉴얼 및 내용**

항목	내용
핵심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지배력·진입장벽·시장진입·시장퇴출·혁신과 효율성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li> </ul>

항목	내용
예비평가	• 전면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여, 점검목록을 활용한 예비평가의 방법론과 함께 해외 사례에 관한 상세한 설명
심층평가	• 심층평가 실시여부의 결정과 대안의 제시 및 대안 간 비교, 최적 대안의 선택 등 심층평가에 소요되는 단계별 상세 설명과 함께 사례 소개
사후평가	• 사후평가의 중요성과 함께 사후평가의 구체적 방법과 평가 시기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 및 소개
평가절차 및 기관 간 역할분담	• 2012년을 기점으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수록
경쟁영향평가 실제 적용사례 제시	• 업계 관련 경쟁영향평가 적용사례를 관련 데이터 및 대안의 제시 등과 더불어 평가 단계별로 상세 부록의 형태로 수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18: 8) 재구성

### 3. 법제처 입법영향분석<sup>9)</sup>

#### 1) 개요

##### □ 개념

- 입법영향분석이란 현행 법령의 집행 현황과 효과성 등 국민이나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과 파급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석의 결과를 입법 개선 및 법령정비를 비롯한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제도(법제처 보도자료, 2022. 5. 17)
- 입법영향분석이란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것임
  - 법률이 주된 영향분석의 대상이지만,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나 법률의 부작용 발생 여부가 분석의 주된 초점이지만, 그 밖에 재정·경제·중소기업·규제·성평등·부패·환경 등의 다양한 영향도 분석에 포함될 수 있음

9) 입법영향분석은 법제처가 수행하는 분석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입법영향분석만을 대상으로 함

- 입법에 대한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협의 단계도 분석 절차의 중요한 요소임(김준: 2018: 1)

## □ 법적근거

-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나 효과성 등 국민과 경제사회 환경 전반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단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법 개선이나 법령정비 등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수행되는 활동으로 법적근거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행정기본법」 제39조 제2항임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영향분석(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 도입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입법의 품질을 개선하여 더 좋은 입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0년대부터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평가제도가 소개 및 도입논의가 시작됨
  - 입법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도 질적으로 상당히 부실한 법률 등 법률의 양과 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법률이 지나치게 자주 제·개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짐
  - 이에 따라 적절한 규범의 통제와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입법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예측·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예측·분석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해결책으로 법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음(김준, 2018: 1)

- 2000년대 중반 이후 입법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입법 이후 법의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십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입법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마련 및 입법평가사례 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입법평가연구 사업을 추진함
  - 이 과정에서 ‘입법평가’ 또는 ‘입법영향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양용형 외, 2023: 17)

#### □ 종류 및 필요성

-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과정)임
-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은 기존 법률이 입법목적 달성했는지 여부와 함께,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됨
  - 궁극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은 기존의 법률보다 “더 좋은 입법”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입법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영향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로 인한 영향을 직관적으로 예측·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둘째, 법률의 복잡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 규범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효율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김준, 2018: 1)

#### □ 담당기관

- 입법영향분석은 법제처가 수행하는 분석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는 분석으로 구분됨

- 법제처에서 입법영향분석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현행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체계적인 분석을 의미함
  -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이 국민과 경제사회적 환경 전반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입법개선 및 법령 정비 등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수행되는 활동으로 법령(법제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자 방법론으로 볼 수 있음
  - 법제처의 입법영향분석은 분석대상 선정부터 분석결과 활용까지 법제처가 총괄함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하는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주요 법률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며, 입법의 품질향상 및 입법자의 의사결정 지원, 입법의 정당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입법목적 및 의도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거나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법의 품질향상)과,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 검토해야 할 여러 단계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안의 비교·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법자의 의사결정 지원), 그리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 하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데 기여하여 입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입법의 정당성 강화)하기 위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은 기관 자체인력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되 내부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양용형 외, 2023: 18-19)

## 2) 입법영향분석 절차 및 내용

### □ 절차

- 법제처의 입법영향분석은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수행되며, 분석대상에 대한 수요 조사, 분석대상의 확정, 분석 수행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심의, 법령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6단계의 절차로 추진됨

- 먼저, 분석을 수행하는 전년도 상반기에 부처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분석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함
- 분석대상은 현행법령, 현행 법령상 주요 제도 또는 공통제도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정 법령이나 그 법령상 제도 중 범정부적으로 대국민 영향력이 크거나, 행정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한 과제, 그리고 현행 다수 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공통 제도가 해당됨
- 분석대상에 대한 의견수렴은 개별법의 주관부처를 대상으로 한 의견 조회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양용형 외, 2023: 19-20)

**[표 3-12] 입법영향분석 절차**

수행체계	내용	시기
분석 대상 수요조사	부처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	전년도 상반기
분석 대상 확정	부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	전년도 말
위탁계약 체결	분석 수행기관 선정	연초, 공모
입법영향분석 실시	실태분석 규범분석	상반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분석 결과 심의	하반기
결과 활용 등 후속조치	법령정비 등	하반기 이후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2022.6.17.) 재구성

**□ 분석내용**

- 입법영향분석은 법령 실태조사,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이나 실효성 분석, 또는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그리고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을 분석함
- 법령의 실태조사는 입법 현황, 집행 실태를 조사·분석함
-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분석은 법령의 합헌·합법성, 법체계 정합성, 규정의 명확성 등을 분석하며, 법령의 실효성은 법령의 집행(실현) 가능성, 현실 부합성 등을 분석함
- 법령의 효과성 분석은 법령이 의도한 목표 달성 여부 및 제·개정 전후 영향 비교하며, 효율성은 법령 집행·시행에 소요된 비용 대비 효과 분석(BC분석), 데이터 기반을 분석함

○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법제처 보도자료, 2022.6.17.)

**[표 3-13] 입법영향분석 내용**

분석내용	세부내용	
법령 실태 조사	• 입법 현황, 집행 실태 조사·분석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	규범적 적정성	• 법령의 합헌·합법성, 법체계 정합성, 규정의 명확성 등 규범적 적정성
	법령의 실효성	• 집행(실행) 가능성, 현실 부합성 등 법령의 실효성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효과성	• 법령이 의도한 목표 달성 여부 및 제·개정 전후 영향 비교
	효율성	• 법령 집행·시행에 소요된 비용 대비 효과 분석(BC분석), 데이터 • 기반 분석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상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li> <li>•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li> <li>• 법령의 부작용·문제점이나 의도/비의도적 결과 발생 여부 및 그 정도</li> <li>• 그 밖에 사회·경제적 영향 등</li> </ul>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2022.6.17.) 재구성

## □ 평가항목

- 법제처의 입법영향분석은 시행 중인 현행 법령이 규범적으로 적정한지, 그리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양용형 외, 2023: 155)
- 2022년에 수행된 입법영향분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환수법과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사례가 있음(법제처 보도자료, 2022.6.17.)
  - 2022년의 2건의 분석사례는 규범적·체계적 분석방법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함(양용형 외, 2023: 155)
- 규범적·체계적 분석방법은 대상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임
  - 평가항목으로 법적합성과 체계성, 형평성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표 3-14] 입법영향분석 평가항목1(규범적 적정성)**

평가항목	세부지표
법적합성과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률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li> <li>• 관련 법률과의 관계가 적절한 구조로 설정되어 있는가?</li> <li>•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백은 없는가?</li> <li>•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가?</li> <li>• 위임에 요구되는 형식이나 범위는 적절한가?</li> </ul>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입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가?</li> <li>• 해당 입법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측이 존재하는가?</li> <li>• 동일한 상황에 대한 차별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가?</li> <li>• 우대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우대조치의 내용이나 정도는 적절한가?</li> </ul>

출처: 양용형 외(2023: 155)

-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방법은 대상 법령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임
  - 평가항목은 입법목적의 실현성, 효과성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설문조사분석 방법 및 통계분석방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 (양용형 외, 2023: 156)

**[표 3-15] 입법영향분석 평가항목2(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항목	세부지표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의 취지와 입법목적이 법률(안)의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li> <li>• 법률 시행을 통해 예상되는 효용이 어느 수준인가?</li> <li>• 입법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li> <li>• 법률이 집행가능한 수준인가?</li> <li>• 법률 집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li> <li>• 법률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li> </ul>

출처: 양용형 외(2023a: 156)

## 제2절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검토

### 1. 미국

#### 1) 개요

##### □ 도입배경

- 미국은 사후 규제영향평가(Retrospectiv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규제영향 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제도를 지속하여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사후 규제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미국의 사후 규제영향 평가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모두 일정 부분에 걸쳐 관여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함
- 의회는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입법 조치가 완료되더라도 결국 세부적 사항은 소관 행정부의 규제 정책의 형태로 진행될 것임을 전제하고 행정부에 위임할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함
  - 위임 사항들이 소관 행정기관에서 의회가 의도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필요시 추가적 입법 조치를 실시함
  - 이러한 절차는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식의 지속적인 사후 영향평가라 할 수 있음
- 행정부도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 미국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비되어 행정부처의 정책 도입과 운용에 관련한 절차적 정비가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due process)'의 확보에 관한 노력이 행정기관 전반에 확산되어 있으며, 이런 배경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함

- 사법부 역시 행정기관이 채택한 여러 정책과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사법심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함
  - 법률이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거나 또는 법률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행정기관의 재량을 적극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것이 명확하면 적극적으로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시행하여 문제의 정책과 조치에 대한 교정작업을 실시함
  - 법원 역시 자신의 법률심사 및 이에 기초한 정책 평가 기능을 통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함
- 이와 같이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영역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며 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규제영향 평가 제도를 적극 시행함
  - 그 제도 내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양용형·이현정, 2023: 38-39)

#### □ 수행과정

- 미국은 사후 규제영향 평가(Retrospectiv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 수행의 대표사례로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수립한 사전계획(preliminary plan)의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제시할 수 있음
- EPA의 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에서는 평가 수행 주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EPA의 규제정책관(RPO)이 평가계획 및 사후영향평가의 실질적인 수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규제정책관은 EPA 청장실 산하 정책실(Office of Policy)의 부행정관(associate administrator)으로 지정되어 일반 규제 작성과정에서 집행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 EPA는 5년을 주기로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방안을 계획함
  - 평가 주기에서 처음의 세 단계는 1년 내의 기간에 걸쳐 완료하며, 나머지

4년 동안 평가에 따른 개선내용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업무가 추진됨  
(U.S. EPA, 2011, p.51-52)

[표 3-16] 미국 EPA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과정

수행과정	내용
1단계: 평가대상 규제 관련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주기의 시작 시기에 EPA는 대중과 다른 연방 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평가가 요구되는 규제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li> <li>• EPA는 반기 안건(Semiannual Regulatory Agenda)과 언론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를 통해 평가대상이 되는 규제의 추천 기간을 발표</li> <li>• EPA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집</li> <li>• 고위 관리자 회의와 더불어 직원 수준의 Regulatory Review Workgroup을 구성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li> </ul>
2단계: 평가대상 규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후보 규제들로부터, EPA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규제를 선정하고 법령에서 허락하는 평가대상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의 의견수렴</li> <li>- 규제를 작성한 부서의 전문성</li> <li>- 사법적 규제나 긴급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li> <li>-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기준</li> <li>- 기관의 자원 규모</li> </ul> </li> </ul>
3단계: 규제사후영향 평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를 수립한 부서는 기준을 활용하여 규제를 재검토</li> <li>• 기관은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규제 안건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개선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 의견작성 시스템을 구축</li> <li>• 반기별 규제안건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어떠한 규제에 대해 평가가 수행중에 있는지 발표</li> </ul>
4단계: 규제개선 활동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자체 분석이 수행된 이후, EPA는 전 단계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규제의 수정안을 작성</li> <li>• 기관은 관보 및 웹사이트, 반기별 규제안건에 해당 수정안을 발표</li> </ul>

출처: U.S. EPA(2011: 51)

## 2) 평가항목 및 기준

-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행정명령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기준 5개를 제시함
  - 첫째는 비용을 정당화하는 편익규모, 둘째는 최소한의 부담, 셋째는 순 편익, 넷째는 성과목표, 다섯 번째는 직접 규제의 대안임

[표 3-17] 미국 EPA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기준

수행과정	내용
비용편익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가 현재까지 유효하다면, 규제로 인한 편익은 비용을 정당화하는가?</li> </ul>
최소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는 EPA의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게도 중복적으로 적용되는가? 피규제집단에 부과되는 부담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li> <li>규제는 온라인 보고나 전자기록 등을 통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문서작업을 부과하고 있는가?</li> <li>규제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환경보호의 효과를 유지하며 규제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가?</li> <li>환경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며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규제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가?</li> </ul>
순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관련 예상 규제편익을 확보하면서도, 더 나은 비용 대비 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li> </ul>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환경보호를 유지하면서 규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가?</li> <li>규제가 다른 연방 기관이나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가?</li> </ul>
규제의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가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가능한가?</li> <li>규제가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전부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비규제적 대안이 존재하는가?</li> </ul>

출처: U.S. EPA(2011: 52)

## 2. 영국

### 1) 개요

#### □ 의미 및 운영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수행 단계는 정부정책평가의 기준이 되는 Green Book에서 제시하는 배경(rationale), 목표(objective), 대안분석(appraisal), 모니터링(monitring), 평가(evaluation), 환류(feedback)로 구분하며, 'ROAMEF' 라는 약어로 통칭함
  - ROAMEF는 순환하는 과정(사이클)임이며, 따라서 모니터링과 평가는 규제가

- 도입되고 실행에 옮겨지기 전과 후를 비롯하여, 규제가 효력을 갖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침
- 이를 통해 미래의 정책 및 규제가 증거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줌(이민호, 2017: 57)
- 규제 부서의 사후평가의무는 해당 부서가 법제화하는 규제 내의 평가 항목이나, 그와 동등한 사후평가 행정 규범에 따라 시행됨
- 법규상의 사후평가는 해당 규제가 발효된 지 5년 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이후 5년 주기로 반복되거나, 또는 다른 법규상 시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양용형·이현정, 2023: 71)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단계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는 평가 단계(review stage)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규정되며, 집행된 규제정책에 대한 실제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사후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를 수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규제정책의 목적 및 집행과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검토함(U.K. BIS, 2015: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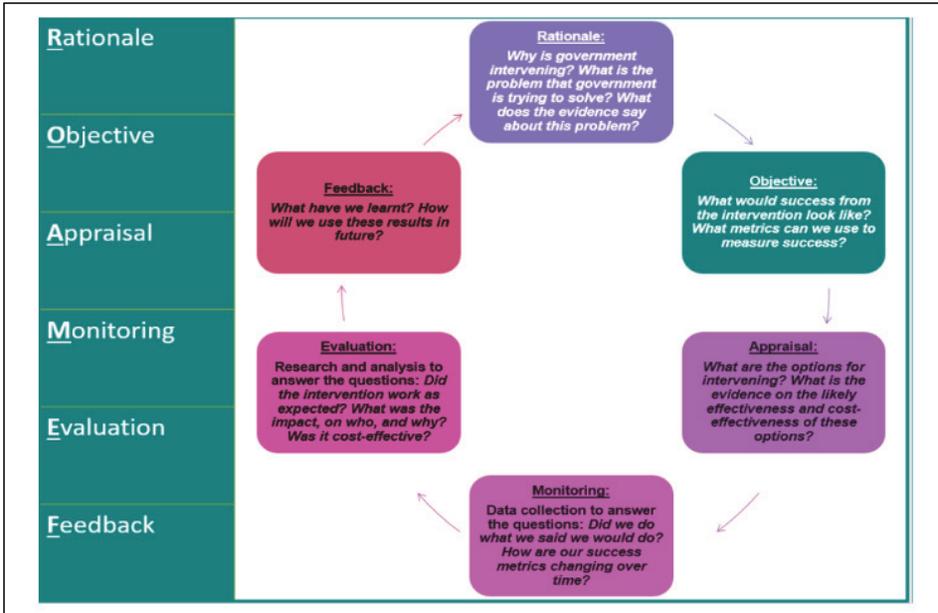
[표 3-18] 영국 ROAMEF 정책개발 단계(설명)

단계	핵심질문
규제의 배경 (Ration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개입 의도는 무엇인가? 규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li> <li>• 문제에 대한 증거(데이터)의 입장은 무엇인가?(실제로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인가?)</li> </ul>
달성 목표 (Obj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개입이 성공할 경우 그 결과는 무엇인가?</li> <li>• 성공을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인가?</li> </ul>
대안에 대한평가 (Apprais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개입에 있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li> <li>• 이들의 효과성과 비용효율성의 증거(데이터)는 무엇인가?</li> </ul>
규제성과 모니터링 (Monito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한 대로 규제를 도입하였는가?</li> <li>•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영향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변화하는가?</li> </ul>
규제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는 예상대로 작동했는지?</li> <li>•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li> <li>•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규제는 비용효율적이었는가?</li> </ul>

단계	핵심질문
규제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Feedb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을 배웠는가?</li> <li>• 이러한 시사점들을 미래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li> </ul>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그림 3-1] 영국 ROAMEF 정책개발 단계(그림)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 목적 및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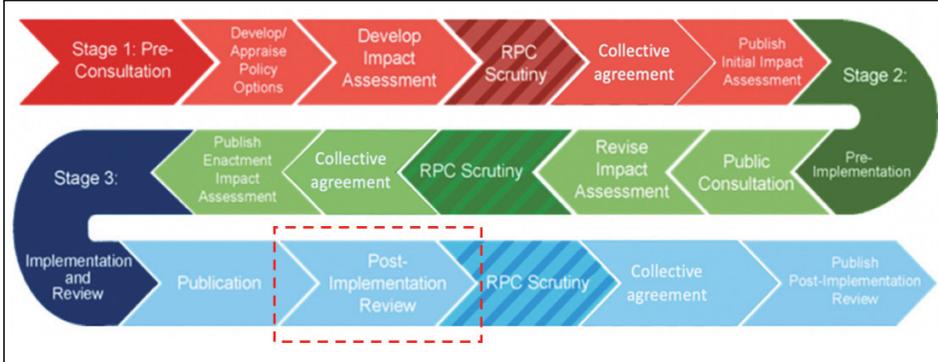
- 영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됨(양용형·이현정, 2023: 33)
- 첫 번째로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 일정 시간(5년 이내)이 지난 후 규제를 평가하는데 활용됨
  - 규제가 시행되고 특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실제로 집행된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의 방향을 도모함

- 두 번째로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 2013년 영국 정부는 소상공인이 영국의 경제부흥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공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차등화 정책을 마련한 것임
  - 2015년에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ct)」을 제정하여 규제철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에 「소상공인, 기업, 고용법 2015」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정책을 실시함
  - 이때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규제존속(규제유지, 개선, 폐지) 여부를 결정함(BEIS, 2017)
- 마지막으로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관리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활용됨
  - 2020년에 발표된 「더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Better Regulation Framework”, BRF)」 개정판에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규제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규제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지’,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대안이 있는지’ 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특정 규제의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한 것임 (BEIS, 2020)

#### □ 수행절차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는 Magenta Book, Green Book 및 Aqua Book을 토대로 작성된 「Better Regulation Framework(BRF, 더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책 기준을 통하여 평가대상과 평가절차를 마련함
- BRF는 영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협의 전(pre-consultation)’, ‘실행 전(pre-implementation)’ 및 ‘실행과 평가(implementation and review)’와 같이 세 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그중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마지막 ‘실행과 평가’ 단계에서 수행되고 있음(양용형·이현정, 2023: 35)

[그림 3-2] 영국 정책결정과정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원칙

- 첫 번째 단계인 ‘협의 전’에서는 규제대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지 않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초안을 공개함
- 두 번째 단계인 ‘실행 전’에서는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정하고 RPC 검토를 거친 결과를 공개한 뒤 규제를 공포함
- 세 번째 단계인 ‘실행과 평가’에서는 「SBEE 법」 제31장에 근거하여 해당 규제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경우에도 규제영향분석서와 마찬가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를 RPC의 검토하에 결과를 공개함
- 영국의 모든 부처는 「SBEE 법」 제28장 및 제30장에 의거하여 신규로 도입되는 행정규제로 인한 영향력을 평가할 의무를 가진
  - 따라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및 사후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함
  - 또는 「SBEE법」 제31장에 근거한 ‘사후 규제영향평가 가이드라인(PIR statutory guidance under §31 of the SBEE Act 20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의 적합성 여부 판단(whether a review clause is appropriate)’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양용형·이현정, 2023: 36)

## 2) 평가항목

### □ 수행방식 및 평가기준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 집행이 야기하는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의 입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규제의 본래 기능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없음
  - 규제영향평가를 작성하기 위해서 크게 6가지 질문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함 (U.K. BIS, 2015: 23)
-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한 증거(evidence)를 제공하는 활동이며, 이런 점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증거기반 정책관리(evidence based policy management)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다섯 가지의 유형의 질문 가운데 1-3까지는 모든 규제사후영향평가에서 적용이 가능한 질문이며, 기존의 규제가 어느 수준까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됨
  - 기존 규제의 작동 수준과 함께 규제를 통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일반적 규제영향분석이 포함하는 기준과 동일한 맥락의 접근이 이루어짐
  - 기존 규제의 작동 수준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는 규제 비용과 편익 등을 사전적으로 예측한 수준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향후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 및 편익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점에서 규제효과의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결과 예측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규제의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성과기준(success criteria)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부분도 강조함
- 4-5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기존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사후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임
  - 4번의 질문은 기존규제를 존속시키면서 개선의 여지를 찾는 부분이며, 5번의 질문은 새로운 규제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임

-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흔히 새로운 형태의 규제영향 평가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며, 피드백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음(U.K. BIS, 2015: 22-23)

**[표 3-19] 영국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평가기준	내용
1. 기존 규제가 어느 수준까지 작동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느 수준의 성과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가?</li> <li>• 가외적 효과가 발생하는가?</li> <li>•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수준은 어떠한가? 사전적으로 예측된 비용과 편익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li> <li>•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가? 그 효과는 사전에 예측된 효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li> </ul>
2.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필요한 문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를 폐지할 경우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가? (시장환경의 변화,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가?)</li> <li>• 규제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적절하게 작용하는가?</li> </ul>
3. 기존 정부 규제의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예상되는 비용 및 편익은 어떠한가?</li> <li>• 향후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떠한가?</li> <li>• 규제집행의 과정은 효과적으로 평가되는가?</li> <li>• 선택된 규제집행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될 수준의 준수율은 어느 정도인가?</li> <li>• 규제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어떠한가?</li> </ul>
4. 여전히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개선이 가능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 및 준수 수준의 제고</li> <li>• 기업부담(소규모기업 포함)을 완화시키기 위한 집행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li> <li>•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의 축소를 통하여 특정 범위의 규제의무 면제</li> <li>• 규제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집행 개선방안</li> </ul>
5. 만약 해당 규제가 불필요하다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규제나 대안적 방법이 적절한가?	

출처: U.K. BIS(2015: 23)

**□ 작성 양식<sup>10)</sup>**

- 영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항목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0)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siness-regulation-producing-post-implementation-reviews>

- 첫 번째로 규제의 정책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함
  - 규제가 의도한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효과를 확인함
- 두 번째는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작성하기 위해 어떠한 증거를 활용하였는지 자료를 확인함
- 세 번째는 정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검토함
  - 규제의 실제 비용과 편익이 얼마인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사전 규제영향평가와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임
- 네 번째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의 분석가정은 무엇인지를 확인함
- 다섯 번째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함
- 여섯 번째는 증거를 통해 평가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확인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마지막은 EU 회원국 또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하는 내용임

[그림 3-3] 영국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양식

<p><b>Title:</b> Click here to enter text.</p> <p><b>PIR No:</b> Click here to enter text.</p> <p><b>Original IA/RPC No:</b> Click here to enter text.</p> <p><b>Lead department or agency:</b> Click here to enter text.</p> <p><b>Other departments or agencies:</b> Click here to enter text.</p> <p><b>Contact for enquiries:</b> Click here to enter tex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td style="padding: 5px;"><b>Post Implementation Review</b></td> </tr> <tr> <td style="padding: 5px;"><b>Date:</b> Click here to enter a date.</td> </tr> <tr> <td style="padding: 5px;"><b>Type of regulation:</b> Choose an item.</td> </tr> <tr> <td style="padding: 5px;"><b>Type of review:</b> Choose an item.</td> </tr> <tr> <td style="padding: 5px;"><b>Date measure came into force:</b> Click here to enter a date.</td> </tr> <tr> <td style="padding: 5px;"><b>Recommendation:</b> Choose an item.</td> </tr> <tr> <td style="padding: 5px;"><b>RPC Opinion:</b> Choose an item.</td> </tr> </table>	<b>Post Implementation Review</b>	<b>Date:</b> Click here to enter a date.	<b>Type of regulation:</b> Choose an item.	<b>Type of review:</b> Choose an item.	<b>Date measure came into force:</b> Click here to enter a date.	<b>Recommendation:</b> Choose an item.	<b>RPC Opinion:</b> Choose an item.
<b>Post Implementation Review</b>								
<b>Date:</b> Click here to enter a date.								
<b>Type of regulation:</b> Choose an item.								
<b>Type of review:</b> Choose an item.								
<b>Date measure came into force:</b> Click here to enter a date.								
<b>Recommendation:</b> Choose an item.								
<b>RPC Opinion:</b> Choose an item.								

**1. What were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measure? (Maximum 5 lines)**  
Click here to enter text.

**2. What evidence has informed the PIR? (Maximum 5 lines)**  
Click here to enter text.

**3. To what extent have the policy objectives been achieved? (Maximum 5 lines)**  
Click here to enter text.

Sign-off for Post Implementation Review: Chief economist/Head of Analysis and Minister  
***I have read the PIR and I am satisfied that it represents a fair and proportionat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 measure.***

Signed: Click here to enter text. Date: Click here to enter a date.

Further information sheet

Please provide additional evidence in subsequent sheets, as required.

**4. What were the original assumptions?(Maximum 5 lines)**  
Click here to enter text.

**5. Were there any unintended consequences? (Maximum 5 lines)**  
Click here to enter text.

**6. Has the evidence identified any opportunities for reducing the burden on business? (Maximum 5 lines)**  
Click here to enter text.

**7. How does the UK approach compare with the implementation of similar measures internationally, including how EU member states implemented EU requirements that are comparable or now form part of retained EU law, or how oth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ternational agreements? (Maximum 5 lines)**  
Click here to enter text.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siness-regulation-producing-post-implementation-reviews>

### 3. 호주

#### 1) 개요

##### □ 목적 및 도입배경

- 호주 정부는 경제적 영향력이 광범위한 규제들을 대상으로 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post-implementation review: PIR)를 수행하는 절차를 의무화함
- 규제영향평가서(regulation impact statement: RIS)에 대한 수행 없이 규제가 도입되거나 폐지 혹은 주요 변화가 발생한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되도록 규정함
  - 이는 영국 수상이 규제를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에서 면제하거나 규제 심사의 최종 결정까지 적절한 형식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 적절한 형식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규제가 최적방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음(OBPR, 2020: 1)
-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제공한 「호주연방정부 규제영향분석가이드(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에 기초한 ‘규제영향평가제도’ 체계 내에서 운영됨
  - 호주는 규제영향평가(Impact Analysis; IA)를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하고 제도화한 나라 중 하나로
  - 호주의 규제관리체계 내에서 규제영향평가는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으로 규제 도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사전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됨(서재호 외, 2014: 3)
-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역시 규제가 도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얼마나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당해 규제 존속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OBPR, 2020: 1)

-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대상을 통해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사후영향평가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첫째, 규제영향분석이 면제된 경우, 둘째, 규제영향분석의 완성도가 불충분한 경우, 셋째,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광범위한 경우임
  - 이를 통해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대체 및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양용형·이현정, 2023: 77)

## □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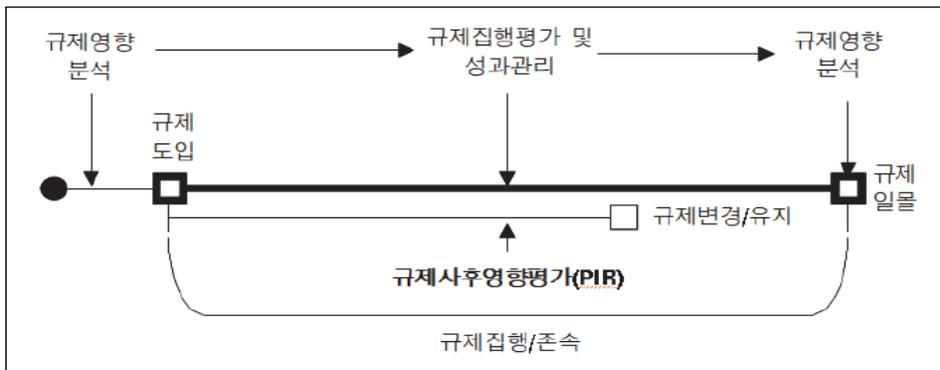
-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대상은 일반적으로 규제 도입 이전에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됨
  - 대상은 크게 규제영향분석이 면제된 경우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광범위한 경우, 사전규제영향분석의 완성도가 불충분한 경우로 구분됨
- 첫째,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수상(Prime Minister)의 허가에 따라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이 면제될 수 있음
  - 이 경우 반드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 둘째,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입된 규제 가운데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광범위한 규제는 사후평가의 대상이 됨
  - 특정 규제의 영향력이 사소한(minor) 수준 이상일 경우 부처는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야하며, 해당 단계에서 규제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집행 모니터링 계획이 이루어짐
  - 규제의 영향력이 광범위해 규제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적으로 부처에 공지함
- 셋째, 사전 규제영향평가의 완성도가 불충분한 경우에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함
  - 모든 규제영향평가를 대해 분석방식과 분석 수행과정의 '질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불충분(insufficient), 적절(adequate), 양호(good practice), 매우양호(exemplary)의 4가지 계층으로 평가함

- 만일 규제영향평가가 OIA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담당 부처에게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양용형·이현정, 2023: 80)

#### □ 수행절차

-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관리 프레임 내에서 규제 집행과정을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수단임
  - 호주의 규제관리는 도입단계, 집행단계, 종결(폐지) 단계로 구분되며,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집행 및 성과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짐(양용형·이현정, 2023: 95)

[그림 3-4] 호주 규제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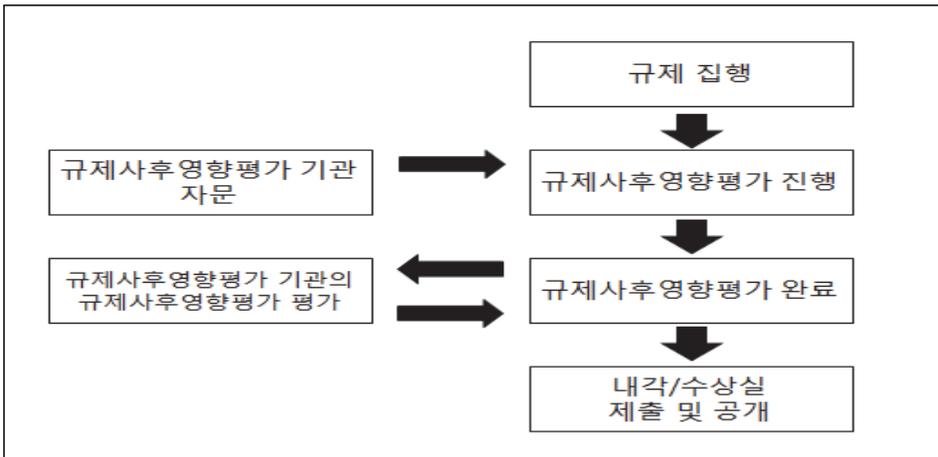


출처: 양용형·이현정(2023: 95) 재인용

-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도입 이후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 평가절차에 따라 수행됨
  - 규제도입 시점은 경우 보통 규제 집행일을 의미하며, 규제사후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는 약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 시 지속적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 관리 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면 부처는 규제사후영향평가 관리 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함

- 규제사후영향평가 관리 기관은 규제사후영향평가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을 발급해 규제사후영향평가 마지막 단계인 ‘내각제출 및 공개’ 절차로 이양함
- 평가 종료시점의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부여됨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선정기준이 규제영향분석이 면제된 경우거나, 사전규제영향 분석의 완성도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2년’으로, 규제의 영향력이 현저하고 광범위한 경우에는 ‘5년’으로 종료 기한이 부여됨
- 규제담당기관은 정해진 평가 종료 시점까지 규제사후영향평가 관리 기관의 검토, 최종보고서의 내각제출 및 공표 등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과정을 모두 수행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분석대상 기간은 규제의 도입 시점부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완료 시점까지이므로, 데이터 수집 등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부처가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함(양용형·이현정: 80-81)

[그림 3-5]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과정



출처: 이민호(2017), 양용형·이현정(2023: 81) 재구성

## □ 수행시기

-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체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개시 시점에 있으며, 규제가 집행된 이후 1년~2년 이내에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OBPR, 2020: 6)
- 첫째, 규제유형에 따라 소멸했거나 소멸이 예정된 규제, 둘째,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 규제, 셋째, 유지될 예정이나 형태나 내용이 변경될 규제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때,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에서 적용 가능함
  - 소멸된 규제의 경우에 대하여 규제영향의 회고적 평가(backward looking)를 거쳐 향후 규제정책의 교훈을 얻기 위한 평가의 목적이 강조됨
  - 계속 유지될 예정이거나 향후 변경이 예상되는 규제의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와 함께 규제 변경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이 통합적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 규제가 소멸되거나 향후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이 기존 규제의 감축이나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함
  - 더불어, 이후의 규제정책수립 과정에서 평가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측면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적용 대상이 2016년 2월부터 확대됨
  - 규제영향분석서의 최종적 작성 결과가 최적의 규제방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최적규제방안실(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 OBPR)의 검토에 따라 생산성부차관(Assistant Minister for Productivity)과 관계부처 장관 간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함(OBPR, 2020: 6)

[표 3-20]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수행시기

최적규제방안실(OBPR) 최종평가		사후평가 적용여부	완료시점	
적정 (adequate)	광범위한 영향 (Long Form)	최적방안에 미흡	○	협의를 통해 결정
		최적방안에 부합	○	5년 이내
	측정가능하지만 제한적 영향 (Standard Form)	최적방안에 미흡	○	협의를 통해 결정
		최적방안에 부합	-	
면제 혹은 부적정 (inadequate)	광범위한 영향 (Long Form)	○	2년 이내	
	측정가능하지만 제한적 영향 (Standard Form)	○	2년 이내	

출처: OBPR(2020: 4)

## 2) 평가항목

### □ 규제사후영향평가 결정 고려요인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절차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지점은 바로 규제의 집행 시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법령화된 규제에서는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집행시점으로 볼 수 있으나, 규제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집행시점을 특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호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지침은 이와 관련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시점을 결정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함(OBPR, 2020: 7)

[표 3-21]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결정 고려요인

고려 요인	내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법령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제정 시점</li> <li>• 해당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특정 업종 또는 집단 등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집행하는지 여부</li> <li>• 새로운 규제로 시장이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시작하는지 여부</li> <li>• 규제 영향을 받는 대다수 기업 및 산업이 개정된 규제를 준수하거나 개선된 규제에 의해 영향을 실제 받는지 여부</li> <li>• 해당 규제가 특정 집단 및 대상에게 온전히 집행되는지 또는 다양한 집단에게 집행되는지 여부</li> <li>• 규제 개선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집단(산업 또는 기업 등)이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규제 개선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부</li> </ul>

출처: OBPR(2020: 4)

#### □ 규제사후영향평가가서 작성 내용

- 최적규제방안실(OBPR)은 2020년 발표한 규제사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지침(Post-implementation Reviews Guidance note)을 통하여 규제사후 영향평가가서 작성에 요구되는 7가지 내용을 제시함
- 평가항목은 ①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 ② 정부의 공적개입이 필요한 이유, ③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 ④ 규제가 발휘하는 영향력, 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소통, ⑥ 규제에 의한 순편익 발생여부, ⑦ 규제의 집행과 평가과정 등으로 구성됨(OBPR, 2020: 8)
- 첫 번째 평가항목은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로, 구체적으로 규제 도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산업·지역사회·개인 등)과 문제가 발생한 분야의 규모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서술할 것이 요구됨
  - 문제의 현황을 제시함에 있어 시장실패(market failure)나 규제실패(regulatory failure) 또는 문제의 크기(magnitude of the problem) 등에 걸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세부 점검을 실시해 규제가 도입된 맥락과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두 번째 평가항목은 ‘정부의 공적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규제 도입 당시 제기되는 규제의 필요성을 근거를 통하여 제시함
  - 이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내용은 규제가 “효과적이다” 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논거이며, 이를 위해 공고문 또는 언론 등을 활용할 것이 권고됨
- 세 번째 평가항목은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규제 도입과 함께 채택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제시되거나 논의된 규제대안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함
  - 정책대안에는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가 선정되지 않은 사유를 서술해야 함
- 네 번째 평가항목은 ‘규제가 발휘하는 영향력’으로, 규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됨
  - 규제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의 영향집단을 선정하는 작업을 선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집단에게 발생가능한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함
  - 호주는 규제에 의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용편익분석 가이드라인 (Cost-benefit analysis Guidance note)」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최대한 모든 항목을 계량화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함
  - 규제의 영향력에 대하여 수행되는 세부평가기준은 크게 7가지로 제시됨
    - ① 집행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
    - ② 독립된 기관이나 체계에 의해 산출된 데이터에 의해 비용 및 편익을 평가
    - ③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 등 분배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지역사회·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
    - ④ 비용과 편익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의 순영향(net impact) 측정
    - ⑤ 기업·지역사회·개인의 규제 순응비용에 대한 정량화
    - ⑥ 규제에 의한 기업·지역사회·개인의 누적부담 식별
    - ⑦ 규제의 도입 이후 발생한 ‘경쟁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변화를 기록

- 다섯 번째 평가항목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소통’으로, 경쟁영향평가와 규제비용을 포함한 영향력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내용을 포함함
  - 이는 호주의 입법과정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는 「규제영향 분석과 모범협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함
  - 규제의 중요성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는 수준 또한 비례적으로 적용됨
- 여섯 번째 평가항목은 ‘규제에 의한 순편익 발생여부’로, 규제 도입이 야기하는 순편익(net benefit)을 규제의 적절성과 목적 달성여부 및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함
  - 순편익 분석의 결과는 규제평가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흐름이 동일해야함
  - 순편익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 존재하나, 이 경우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상황을 서술할 것을 요구함
  - 만일 규제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영향을 미치도록 시행된 경우, 전체 상황에 대한 순편익 발생 여부와 규모를 추정하고, 해당 규제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해야함
- 마지막 평가항목은 ‘규제의 집행과 평가과정’으로, 규제집행에 대한 계획과 함께 규제사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제시함
  - 또한 규제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들과 규제에 의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된 모든 평가과정과 내용이 서술되어야 함(OBPR, 2020: 8-13)

[표 3-22] 호주 규제사후영향평가 작성 항목 및 내용

항목	내용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문제 정의와 관련하여, 시장실패 및 기존 규제실패 혹은 정책문제의 규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li> </ul>
정부의 공적개입이 필요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결정 당시 정부에 의한 공적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사전적 증거 등을 제시</li> <li>• 공적개입의 목표와 결과·기대효과·개입대상 등에 대해 설명</li> </ul>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결정 당시 고려되던 다양한 정책대안의 내용과 정보를 설명하고, 해당 정책대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설명</li> </ul>

항목	내용
규제가 발휘하는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의 집행과 그로인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에 관한 논의를 포함</li> <li>•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각 집단별로 규제영향의 차이를 식별</li> <li>• 규제비용에 대한 정보를 규제부담 측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측정하고 이에 대해 최적규제방안실(OBPR)의 동기가 수반되어야 함</li> <li>• 기준선 접근(baseline approach)을 활용하며 기준 설정과 관련해 최적 규제방안실(OBPR)의 기술적 지원이 가능함</li> <li>• 규제영향의 규모에 따라 비례적 분석수준을 결정함</li> <li>•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규제에 대한 정보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li> <li>•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있게 분석하고 비용과 편익의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 차이에 관하여 검토함</li> <li>• 완벽한 비용편익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측정가능한 비용과 편익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분석함</li> <li>•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영향을 확인함</li> <li>• 분석수준은 자료수집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규제비용을 계량화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필요가 있음</li> </ul>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효과나 규제비용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영향의 의견수렴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li> <li>• 집행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li> <li>• 보고서에서는 시기와 방법을 포함해 어떻게 의견조회가 진행되며, 개별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및 경험의 격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분석</li> </ul>
규제에 의한 순편익 발생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가 공동체에 순편익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li> <li>• 평가결과의 근거는 균형적 근거자료의 평가를 통하여 제시되어야 함</li> <li>• 단일 규제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와 함께 보고서에 제시</li> </ul>
규제의 집행과 평가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입법으로 인해 피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이 있는가?</li> <li>• 해당 입법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측이 존재하는가?</li> <li>• 동일한 상황에 대한 차별적 적용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위험이 있는가?</li> <li>• 우대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이나 정도는 적절한가?</li> </ul>

출처: OBPR(2020, 8-13)

## 4. 캐나다

### 1) 개요

#### □ 목적 및 근거

-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규제의 영향력과 규제 부담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음
-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Cabinet Directive on Regulation(CDR, 규제에 대한 내각지침)」(이하 ‘내각지침’) 및 「Statutory Instrument Act (SIA, 행정명령법)」에 근거함
  - ‘내각지침’은 2018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규제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수립된 것은 「Cabinet Directives on Streamlining Regulation(CDSR, 규제의 합리화에 대한 내각지침서)」(2007)(이하 ‘내각지침서’)라 볼 수 있음
  - ‘내각지침’은 관련부처 및 기관에게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규제운영방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양용형·이현정, 2023: 82)

#### □ 유형

-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는 평가대상의 선정방식을 기준으로 ‘규제스톡평가(Regulatory Stock Review)’와 ‘표적규제평가(Targeted Regulatory Review)’로 구분되며, 두 방식 모두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Regulatory Life Cycle approach)」의 관점에서 진행됨
  -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은 규제의 ‘개발(development)’, ‘운영(management)’, ‘평가(review and results)’로 구성된 하나의 순환 운영 체계로,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 생애주기의 ‘평가’ 단계에 해당됨
- ‘규제스톡평가’는 개별 규제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는 특정 규제가 대상이나, ‘표적규제평가’는 ‘규제 현대화(Modernizing regulation)’라는 국가 아젠다(agenda)에 따라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제고를 목적으로 선정된 규제 및 정책을 그 대상으로 함

- ‘표적규제평가’의 경우 「2018년 예산안(Budget 2018)」 내 규제의 현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수행됨
  - 그 대상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시스템의 기민성(agile), 투명성(transparent), 대응성(responsive) 향상을 중심으로 진행됨
- ‘규제스톡평가’와 ‘표적규제평가’ 모두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상의 마지막 단계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두 형태 모두 사용되는 평가방식, 담당 기관 및 수행주체는 동일하나, 대상의 선정방식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됨(양용형·이현정, 2023: 82)

[표 3-23] 규제스톡평가 및 표적규제평가의 비교

평가항목	선정대상	평가 수행주체	평가대상 선정시기	평가대상 공표방법	평가방법 공표방법
규제스톡 평가	부처 자율	해당부처 (규제담당부서)	부처별 상이	규제스톡 평가계획 (RSRP)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
표적규제 평가	혁신/성장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분야	정부 및 해당부처 (규제담당부서)	1~2년	규제로드맵 (Regulatory Roadmap)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

출처: 양용형·이현정(2023: 87) 재구성

□ 수행절차

-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 방식인 ‘규제스톡평가’는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 (Regulatory Life Cycle)」의 마지막 단계로, 그 대상은 「행정명령법(SIA)」제 2조에 의거한 ‘규제(regulation)’, 즉 ‘법적인 도구(statutory instrument)’에 해당됨
- 규제담당부서는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상의 모든 단계에서 규제의 평가 및 분석시 이해관계자 의견반영과 규제방향의 일관성 규제당국과의 협력 (Coordination) 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됨

-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적용된 시점은 내각지침서(CDSR)로 볼 수 있으며, 여러 차례의 논의와 개정을 거침
- ‘규제스톡평가’는 ‘계획 및 우선순위 수립(Plan and Prioritize)’, ‘참여 및 의견 수렴(Engage and Consult)’, ‘평가수행 및 결과보고(Conduct the Review and Report the Results)’의 3가지 단계를 통해 수행할 것이 권고됨
- 계획 수립시 규제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의 강도를 비례적으로 설정하고, 평가 수행시에는 명확한 방법론을 따를 것이 요구됨
- 더불어 평가의 전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함께 비용효과적인 방식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함
- ‘표적규제평가’의 경우, 규제 경쟁력 외부 자문위원회(External Advisory Committee on Regulatory Competitiveness: EACRC)가 보낸 의견서 등을 기반으로 혁신 및 경제성장제고를 위해 선정된 분야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 목록이 반영됨(양용형 외, 2023: 84-5)

## 2)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

### □ 평가항목

-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에 가해지는 규제의 영향력 및 부담을 파악하여 규제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에 목적을 설정함
- 캐나다는 규제를 정책(program) 추진을 위한 도구(instrument)로 인식하고 있기에, 정책 전반의 목적과 결과를 배제하고서는 규제가 갖는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임
  -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규제사후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기술가이드, 타 정책들을 포함한 넓은 범위인 규제 스톡(regulatory stock)의 관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함
  - 정부부처 산하의 규제담당부서는 2018년 「규제에 대한 내각규정과 지침(Cabinet Directive on Regulation: CDR)」에 기반하여 규제사후영향 평가를 수행함

-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총 5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sup>11)</sup>

**[표 3-24] 캐나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질문 가이드라인**

평가항목	세부내용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가 아직도 유효한가?</li> <li>• 규제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목표는 무엇인가?</li> <li>• 규제 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li> <li>• 규제가 공익에 도움이 되는가?</li> <li>• 국제가 표준체계를 포함하며 최신 현황을 반영하는가?</li> <li>• 규제가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와 일치하는가?</li> <li>• 규제의 목표가 광범위한 정부 목표와 일치하는가? 목표를 지속하기 위해 규제를 수정할 기회가 있는가?</li> </ul>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규제안과 비교할 때, 예상 편익이 도출되었는가?</li> <li>• 규제가 구현되고 관리되는 방식이 다르거나 유사한가?</li> <li>• 규제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을 보완하는가?</li> <li>• 규제체계가 투자와 혁신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로 인해 규제 당사자 혹은 정부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나 비용이 발생했는가?</li> <li>• 규제준수 정보의 수집이나 이행을 관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li> </ul>
유연성과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보건·안전·보안·환경을 포함한 규제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규제준수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li> <li>•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유연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가?</li> <li>• 성과 또는 결과를 토대로 규제체제를 적용하여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li> <li>• 기타 관할 구역, 국제 파트너 혹은 정부 부서와 조정하거나 협력할 여지가 있는가?</li> <li>• 무역 파트너의 유사한 제도와 유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li> </ul>
수단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가 아직도 필요한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유사한 사례 등이 검토되었는가?</li> <li>• 특정 규제 영역/부문에서 효과적인 유형의 수단이 있는가?</li> <li>• 특정 규제 영역/부문에서 대안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위험이 있는가?</li> </ul>

출처: Regulatory Stock Reviews Working Guide(9-10)

11) 출처: <https://www.canada.ca/en/government/system/laws/developing-improving-federal-regulations/requirements-developing-managing-reviewing-regulations.html>

## □ 작성양식

○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서 작성양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표 3-25] 캐나다 규제사후영향평가서 작성양식

[Area for the Departmental/Agency Banner]	
부서/기관	• 규제 검토 계획
규제 제목 또는 작업 제목	• 요구 사항: 규제의 제목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제안되는 규제나 변경의 성격 또한 주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함
활성화 법률	• 요구 사항: 부서와 기관은 제안된 규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활성화 법률의 제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근거	• 요구 사항: 규제 검토의 근거를 요약한 설명 제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중요한 규제 검토의 경우, 기관과 부서는 예상되는 검토 과정을 설명하고 검토의 목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섹션은 왜 규정의 일부만 검토되고 있는지 또는 여러 규정이 함께 그룹화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li> <li>• 부서와 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검토에 대한 계획적 접근 방안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TBD(정해지지 않음)” 응답도 가능하도록 설정됨</li> <li>• 부서와 기관은 해당 섹션을 사용하여 이해 관계자들에게 근거 또는 정책 고려 사항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li> </ul>
최종 검토 및 개정 일자	• 참고: 규정의 일부만 검토되었을 경우 해당 검토의 연도에 추가하여 해당 장(chapter)에 표시
검토 시작 목표일	• 요구 사항: 투명성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통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 시작의 시간표 또는 날짜를 설정
이해 관계자 피드백	• 요구 사항: 검토 계획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해관계자의 고려 사항을 요약하는 간단한 진술들을 포함
결과	• 요구 사항: 규정과 관련한 결과를 설명하는 간략한 진술을 포함
추가정보	• 요구 사항: 이해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은 검토에 관한 데이터, 연구 혹은 분석과 관련된 내용 제공
부서·기관 연락처	• 요구 사항: 부서와 기관은 공식저긴 연락처를 제공

출처: Regulatory Stock Reviews Working Guide(7-8)

## 5. 일본

### 1) 개요

#### □ 의미 및 특징

- 일본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2017년 3월 ‘규제 관련 정책평가 개선방안’의 마련과 2017년 7월 ‘규제 정책 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규제와 관련된 정책평가 사무참고 매뉴얼’이 마련되면서 본격화됨(경양용형·이현정, 2023: 91)
-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을 포함한 규제의 평가와 규제책정 프로세스를 일체화하고, 규제의 전 사이클에서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규제책정 프로세스를 ① 규제검토 단계, ② 컨설팅단계, ③ 규제결정단계, ④ 사후재검토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평가 활용방향을 정리함
  - 이와 함께, 규제사후영향평가가 사전 평가를 함에 있어 더하여, 「사후 재검토(리뷰)」의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사전·사후를 조합한 규제의 라이프 사이클 평가의 구조를 확립함
-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비용 편익 분석을 전면에 내세운 틀로부터, 해당 규제에 의한 잠재적 영향을 밝혀내고, 최소한 준수 비용만은 정량화하고, 효과 등도 가능한 한 정량화하는 것에 강조함
  - 규제를 평가함에 있어 영향평가를 분명히 하기 위함
  - 이를 위해 ‘규제에 관한정책평가의 사무참고 매뉴얼’에서는 검토해야 할 영향 항목을 열거하고 정량화를 위한 계산식을 명기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계산식례를 마련함
- 규제사후영향평가에 있어서도 근거에 기반하는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형성의 프레임이 마련됨
  - 일본의 규제정책평가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EBP 프레임이 구현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규제영향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과제의 선정과 과제의 발생이유를 밝히고, 선택하여야 할 규제수단을 검토하기

- 위하여 비규제수단과의 비교나 다른 규제수단과의 비교를 통한 규제의 정책 결정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모든 규제에 대하여 일률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요소가 적은 규제에 대하여는 간소화 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경우에는 그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나 검토되어지는 영향의 범위를 넓히는 등 더욱 상세하게 분석 할 필요가 있음
  - 단, 의사결정 요소가 적은 경우에는 간소한 평가로도 충분하기에 간소화 기법에 의한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개정된 ‘규제 평가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사후 평가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실시와 간소화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됨
  - 또한 이와 함께 공표된 ‘규제와 관련된 정책평가 사무참고 매뉴얼’에는 ‘평가서 양식’과 ‘원단위데이터자료’도 공표하고 있어 시후 규제영향평가에 구체적으로 활용되게 됨(양용형·이현정, 2023: 92)

## □ 평가 대상

- 각 행정기관은 법률 또는 정령에 따라 규제를 신설 또는 개폐하는 경우 정책평가 법과 정책평가 법시행령에 의해 사전평가가 의무화됨
-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규제의 사전평가를 실시한 규제는 평가서에 기재된 사후평가의 실시시기에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함
  - 따라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규제에 대해 이미 도입된 규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함
-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2005년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책정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규제를 사후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후 재검토 도래 시 사후평가를 실시함

- 또한 간소화한 평가기법을 적용한 규제의 사전 평가도 사후 평가의 대상이 됨(양용형·이현정, 2023: 93-94)

## 2) 작성방법 및 내용

### □ 작성방법

-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여 비용, 효과 및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에는 해당 규제에 의한 사회·경제·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식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이러한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정보 제공이 포함됨
  - 통계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영향 파악은 필수적이며, 데이터 등에서 파악할 수 없는 영향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당사자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정보 제공을 토대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제 입안 시 의도하지 않은 양적·음적인 영향이 파악된 경우 그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함
- 규제의 도입 또는 완화 이후 사회·경제적 정세 등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만약 해당 규제가 도입되지 않거나 완화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가상적 상황을 상정한 후 효과를 해당 규제의 도입에 의한 편익과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변화로 구분한 후 파악해야 함
  - 영향 가운데에서도 준수비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도입된 사실과 비용 발생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식별되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고 정량적인 파악을 동반해야 함
  - 이와 같은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사전평가를 통해 상정된 영향과의 비교, 비용·편익 및 간접적인 영향파악, 평가 후 고찰의 3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됨(양용형·이현정, 2023: 272-273)

## □ 작성내용

- 첫 번째 단계는 사전평가시 상정되어 있던 영향과의 비교이며, 과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정서, 과학기술의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 평가에서 적용한 기준선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
  -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의 발현유무를 확인하고 규제를 지속유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증하게 되며, 이를 위해 규제의 정책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후평가에서 사전평가서에 제시된 비용과 편익의 상정과 사후평가를 통해 파악한 실제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한 규제 사전평가서를 첨부함
  - 규제 사전평가가 완료된 이후 대폭적인 사회경제적 정세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후평가를 위한 기준선(해당 규제가 도입되거나 완화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상황)을 설정함
  - 이어서 규제의 사전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과학 기술의 변화에 의한 영향 또는 예상 밖 영향의 발현유무를 감안한 후 규제(혹은 완화)를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검증
- 두 번째는 비용, 편익 및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사전평가 시 이뤄진 비용추계와 사후평가 시 추계된 비용 간에 괴리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함
  - 사전평가 시 편익 예측과 사후평가 시 파악한 편익에 괴리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여 비용, 편익 및 간접적인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해당 규제에 의한 사회·경제·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규제 입안 시 의도하지 않았던 양적·음적인 영향이 파악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규제의 도입이나 완화 이후에 대폭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기준선(해당 규제가 도입되거나 완화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 상황)을 상정한 후 편익을 해당 규제의 도입 혹은 완화에 의한 효과와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효과로 구분한 후 파악해야 함

- 영향 중에서도 준수비용의 경우 규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과 비용 발생 간 인과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금전가치로 환산하고 적어도 정량적인 파악을 동반해야 함
- 세 번째는 고찰 단계로 사후평가를 통한 정보와 사전평가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그 원인을 고찰하고 규제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사후 평가를 통한 정보와 사전 평가의 정보에 차이가 확인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 같은 차이의 원인을 적절히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함
  - 아울러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에 추가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사후 평가로서 파악해야 할 요소에 누락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바람직함(양용형·이현정, 2023: 280-281)

## □ 작성양식

- 규제영향평가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는 규제에 관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늦지 않은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평가에 따른 결과를 이용해 규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판단하고 사후평가 평가서를 행정평가국에 제출하여 공표하는 절차를 수행
  - 평가서에는 해당 규제에 대한 검토단계나 컨설팅 단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회에서의 검토나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정보수집 등으로 평가를 이용한 경우 그로 인한 내용이나 결과에 관하여 평가서에 기재함
  - 실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고 평가에서 이용한 데이터나 문헌 등에 관하여는, 이용의 개요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양용형·이현정, 2023: 281-282)

[표 3-26] 일본 규제사후영향평가 양식

항목	내용
법률 또는 정령의 명칭	-
규제의 명칭	-
규제 구분	신설 / 개정 / 폐지
담당 부국	-
평가실시 시기	-
사전평가에서의 가정과 비교	① 과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정세 혹은 과학기술에 의한 영향 및 예상외의 영향력에 대한 발현 유무 ② 사전평가의 기준선 확인 및 규제 부재 시의 예상 상황에 대한 제시 ③ 규제의 필요성 검증
비용·편익 및 간접영향 파악	④ 준수비용에 대한 파악 ⑤ 행정비용에 대한 파악 ⑥ 효과(정량화)에 대한 파악 ⑦ 편익(금전가치화)에 대한 파악 ⑧ 부차적인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파악
고찰	⑨ 비용·편익 및 간접영향에 근거하는 타당성 검증
비고	※ 당해규제에 관계된 사전평가서를 첨부

출처: 양용형 외(2023: 281) 재인용

## 제3절 소결

### 1. 사례검토 결과 요약

#### □ 사례 선정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사 제도와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운영하는 국가 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및 일본의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검토함
- 국내 사례는 해외사례와 달리 규제사후영향평가에 검토 대신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할 때 활용하는 규제영향분석과 경쟁영향평가, 입법영향분석을 조사함
  - 규제사후영향평가와 실시 목적이 달라 운영방식 및 작성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규제신설 및 강화, 제도 정비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례검토의 대상으로 선정함

#### □ 법령상 시행 규정

- 사례의 제도적 근거와 관련하여 국내 사례인 규제영향분석과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에 의해 평가를 수행하며, 법령상에 수행주체, 평가항목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이 있는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법제처의 입법영향분석은 「행정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수행함
  - 경쟁영향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제도로 법령에 시행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에 대해 경쟁영향 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
- 해외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은 법적 근거를 통해 규제사후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주는 법령상에 실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은 구체적인 수행방식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함
- 호주는 규제영향분석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제도를 운영함

#### □ 제도 도입 목적

- 국내사례는 규제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됨
  - 궁극적으로는 시행 중인 규제 및 법령의 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
- 해외사례는 규제사후영양평가를 통해 규제가 실제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함
  - 5개 국가의 규제사후영양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규제 도입에 따른 목적이 적절히 달성했는지 여부이며, 해결하고자 한 문제 및 목적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지 등을 평가함

#### □ 개선방안 도출

- 검토된 국내·외 사례는 모두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법령 정비에 활용함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 신설 및 강화시 규제대안의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집행 현실성 등을 분석하고 규제정비계획을 제시함
  - 경쟁영향평가 역시 규제안에 대한 경쟁제한 범위 파악, 경쟁제한 효과 평가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보다 경쟁제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더 큰 경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이나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입법영향분석을 현행 법령의 입법 효과성, 영향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해외의 규제사후영양평가 역시 규제개선의 적합성 및 타당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분석하여 종합결론으로 개선방안인 규제정비계획을 제시함

## 2. 평가항목

- 국내·외 사례의 평가항목은 제도의 목적에 따라 항목 및 세부항목이 세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제도의 목적이 성과를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유사한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를 실시함
- 국내·외 모든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배경 및 문제점 파악, 규제 목적, 대안의 적절성 검토, 기타 항목으로 나타남
  -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제도 및 규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파악을 토대로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 따라서, 모든 사례에서는 규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처음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규제 목적은 해당 규제 및 제도가 환경변화에 따라 목적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대안의 적절성 검토는 적합성 및 타당성, 체계성, 효과성, 형평성, 유사사례, 기타효과(부수적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규제 및 제도의 적절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공통항목으로는 배경 및 문제점 파악, 규제목적, 규제 목적 달성도, 비용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대안의 적절성 검토, 규제정비계획(개선방안), 기타(의견수렴 내용 등) 항목으로 나타남
  - 규제목적 달성도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규제정비계획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규제의 효과성을 검토함
- 효과성 분석은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과학적 근거 및 자료를 토대로 규제를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사례는 비용편익분석이 필수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정량적·정성적 자료)를 기반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는 정량적 및 정성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 개선의 적절성을 검토함

-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예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량적인 비용편익분석이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정성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함
-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내용, 세부적인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표 3-27] 국내 유사사례 및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항목 비교

항목	구분		국내 유사사례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세부 항목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평가	입법영향분석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표지	내용 요약	○			○	○	○	○	○	
	배경 및 문제점 파악(규제환경 변화 파악)	○	○	○	○	○	○	○	○	
	적합성 및 타당성	○	○	○	○	○	○	○	○	
체계성	규제 목적 달성도	○		○	○	○	○	○	○	
	규제 운용 현황 및 기타 통계	○		○	○	○	○	○	○	
효과성	중복성 검토(타 법률과의 관계)	○		○	○	○	○	○	○	
	비용편익분석	○		○	○	○	○	○	○	
형평성	이해관계자 협의	○		○	○	○	○	○	○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		○	○	○	○	○	○	
유사사례	기타 효과(부수적 효과)	○		○	○	○	○	○	○	
	대안의 적절성 검토	○		○	○	○	○	○	○	
종합결론	규제정비계획(개선방안)	○		○	○	○	○	○	○	
	종합결론	○		○	○	○	○	○	○	
결과 공개	분석결과 및 보고서 공개	○		○	○	○	○	○	○	
	기타	의견수렴 내용, 분석 세부내용, 연락처 등	○	○	○	○	○	○	○	

주: 국내·외 운영하고 있는 유사사례 및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평가항목의 상이함으로 평가항목의 용어가 동일하지 않음. 따라서, 내용이 유사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함

## 제4장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개발

제1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필요성

제2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제3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작성방법

제4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논의사항



## 제1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필요성

## 1. 매뉴얼 개발 필요성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수요 증가

- 제2장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 실적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2,300건 이상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2019~2022년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 중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의 비율은 48.7%에 불과하며, 협의한 건의과제 중 규제개선이 수용된 과제의 비율은 31.7% 수준에 불과함
  - 특히,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수용률이 2022년에는 31.1%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9년 38.6%, 2020년 30.4%, 2021년 27.1%로 감소함
-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규제개선 과제의 수용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작성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미비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분석의 체계성 및 논리성이 부족하여 규제개선 분석의 전문성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

- 규제영향분석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OECD, 2008: 3) 국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 즉, 규제영향분석은 잠재적인 규제효과를 사전에 분석 및 예상을 통해 가장 효율적 및 효과적인 대안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제품질관리의 관점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강조됨(이민호, 2017: 16)
- 다만, 규제영향분석은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후적인 규제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한계와 관련된 것으로 규제영향분석은 사전적 규제효과 예측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규제관리를 위해 정확한 수준에서 규제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에 도입되기 전의 평가보다 규제가 도입된 이후 규제의 목적 및 정책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것이 실제 규제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음(OECD, 2017: 166)
- 둘째,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시행에 따른 피규제자집단의 영향 및 대응방법 및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규제의 효과를 현실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음(Harrington, Morgenstern & Nelson, 2000: 304)
- 따라서, 기존 시행되고 있는 규제의 효과성, 문제점을 통해 기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함

#### □ 지방규제 영향평가 체계 미비 및 매뉴얼 개발 필요성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존 규제 정비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규제 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규제 정비 및 개선을 위한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가 작성하고 있어 규제개선 분석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규제 개선 검토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며, 작성된 매뉴얼을 검토 및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함

- 지방규제 개선 및 정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가 상시적 및 즉시적으로 가능하도록 전담창구가 마련됨
  - 하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는 일반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작성항목을 간소화하였으며,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체계성 및 논리성이 부족한 한계점이 존재함
- 특히, 후술하는 규제개선 신청방법·양식 사례검토를 통해 지방규제 개선 체계의 한계점이 존재함
- 따라서, 지방규제 개선 수요 증가 및 규제사후영향평가가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체계적, 논리적 및 일관성 있는 분석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2. 규제개선 신청방법·양식 사례검토

### 1)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

#### □ 구성 항목 및 작성방법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을 활용함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개선 검토 매뉴얼의 구성 항목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효과’, ‘전문가 의견(요약)’, ‘부처 의견(요약)’ 5개 항목으로 구성됨
  - 이와 함께,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해당 지역 및 제목, 규제개선 안건 발굴 담당 부서(지방자치단체 건의자 정보 작성), 붙임으로 소관부처 의견검토가 포함 되어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첫째, ‘현황 및 문제점’ 항목은 세부적으로 ‘현황’과 ‘문제점’으로 구분됨
  - 현황에서는 현행 규제 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며, 문제점에서는 현행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와 함께,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제시함

- 둘째, ‘개선방안’ 항목은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법률과의 조문 대비표를 제시함
  - 개선방안은 한 문장 수준으로 규제개선의 결과를 제시함
  - 개선방안은 제1안의 개선방안과 함께 제2안 및 제3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함
- 셋째, ‘개선효과’ 항목은 규제개선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를 작성하며 가급적 정량적 효과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함
  - 단, 정량적 효과란 규제영향평가 및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에서 실시하는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규제개선 및 완화의 영향으로 불편사항 해소, 기회제공 등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정량적 효과 대신 정성적인 방법으로 개선효과를 작성할 수 있음
- 넷째, ‘전문가 의견(요약)’ 항목은 규제개선의 타당성, 개선방안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요약하여 기재함
  - 전문가 의견은 대면 및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서면의견서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함
  - 이와 함께, 전문가의 소속 기관 및 부서명 등 기본사항을 작성함
- 다섯째, ‘부처 의견(요약)’ 항목은 해당 규제의 소관 부처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요약하며 기재함
  - 기존 부처협의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할 수 있으며, 신규 과제의 경우는 유선 및 대면 협의 등을 진행하여 작성함
  - 부처 의견은 수용, 일부수용, 기시행,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5개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된 의견을 작성함
  - 이와 함께, 소속 부처 및 부서명을 작성함
- 기타 관련법령, 추진경과, 기업현황, 현장사례(관련기사 등), 전문가 의견·부처 의견 서면본 등 추가 설명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함

□ 매뉴얼 양식

○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그림 4-1]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 양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 font-weight: bold;">[시도연번]</span> <span style="margin-left: 10px;"><b>제목</b> * 내용 파악이 용이하게 정확하게 기술!!!</span> </div> <p><input type="checkbox"/> <b>현황 및 문제점</b></p> <p>○ (현황)</p> <p>○ (문제점)</p> <p><input type="checkbox"/> <b>개선방안</b></p> <p>○</p> <p>* 관련법령의 개정안 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32조 ① ~ ③ (생략) ④ &lt;신설&gt;</td> <td style="padding: 5px;">제32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방법을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투입한다.</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b>개선효과</b> * 직·간접효과 명시(가급적 정량적 효과를 포함하여 기재)</p> <p>○</p> <p>-</p> <p><input type="checkbox"/> <b>전문가 의견(요약)</b></p> <p>* 규제개선 의 타당성, 개선방안에 대한 경제적 건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요약하여 기재(전문가 서면의견서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p> <p>○</p> <p>-</p>	현행	개정안	제32조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32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방법을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투입한다.	<p>※ 전문가 정보 : 000원 000과 * 소속 기관 및 부서명 작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직위(직급)</th> <th style="width: 25%;">성명</th> <th style="width: 25%;">연락처</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담당자</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b>부처 의견(요약)</b> (23.1.20. 유선/대면/이메일 등) (<input type="checkbox"/>수용 <input type="checkbox"/>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기시행 <input type="checkbox"/>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수용곤란)</p> <p>* 소관 부처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요약하여 기재(기존 부처협의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규 협의의 경우는 유선/대면 협의 등 진행)</p> <p>○</p> <p>-</p> <p>○</p> <p>-</p> <p>※ 담당자 정보 : 000부 000과 * 소속 부처 및 부서명 작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직위(직급)</th> <th style="width: 25%;">성명</th> <th style="width: 25%;">연락처</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담당자</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b>인건 발급 담당부서</b> : 000국 000과 * 지자체 건의자 정보 작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직위(직급)</th> <th style="width: 25%;">성명</th> <th style="width: 25%;">연락처</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담당국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과장</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담당자</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b>인건 발급 담당부서</b> : 000국 000과 * 지자체 건의자 정보 작성</p> <p>* 관련법령, 추진경과, 기업현황, 현행사제(관련기사 등), 전문가의견·부처의견 서면본 등 추가 설명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p>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담당자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담당자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담당국장					과장					담당자				
현행	개정안																																												
제32조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32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 중 발송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방법을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우편물을 우편수취함에 투입한다.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담당자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담당자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담당국장																																													
과장																																													
담당자																																													

출처: 행정안전부(2023) 내부자료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12)

□ 개요

12)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inmungo.go.kr/>)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 및 지자체 등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누구나 건의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를 의미함
  - 법적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국민 규제정보 요청제)이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는 2014년 규제정보포털 내 개설되었으며, 2017년 규제개혁신문고 전용 홈페이지 개설, 2018년 행정규제기본법 내 규제개혁신문고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20년 지자체에 상시적 및 즉시적 규제개선 건의가 가능하도록 전담창구가 마련됨
  - 처리절차는 3단계로 진행되며, 국민·기업 및 지자체가 건의하면 1단계 부처 답변(소관부처 답변, 14일 이내), 2단계 소명 요청(소관부처 재검토·답변, 3개월 이내), 3단계 개선권고(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로 진행됨

[표 4-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처리절차

구분	건의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국민·기업·지자체 건의	부처 답변	소명 요청	개선 권고
처리	• 규제개혁 신문고 홈페이지	• 소관부처 답변 (14일 이내)	• 소관부처 재검토·답변 (3개월 이내)	• 규제개혁 위원회 개선권고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폐지할 것을 요청</li> <li>• (접수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우편, 팩스 등 발송·발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부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의 내용의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답변</li> <li>• (통보방식) 등록된 휴대전화로 답변완료가 안내(SMS)되며,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li> <li>• 일부 건은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은 건의가 있는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하면,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규제준치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준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 종합검토·심의, 필요시 규제개선권고</li> </ul>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inmungo.go.kr/>) 재구성

- 규제개혁신문고는 세 가지 건의 신청으로 구분됨
  - 첫째, 규제건의로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함
  - 둘째, 지자체 규제개혁신문고는 지자체 공무원이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또는 해당 지역주민과 기업 등이 겪는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함
  - 셋째, 대한상의 규제개혁신문고는 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에 접수된 규제애로를 건의함

#### □ 규제건의의 구성 항목 및 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의 구성 항목은 ‘제목’, ‘규제기관’, ‘관련 법령(규정)’, ‘건의내용’, 4개 항목으로 구성됨
- 첫째, ‘제목’ 항목은 관련 규제건의 내용을 작성함
- 둘째, ‘규제기관’ 항목은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중 선택함
- 셋째, ‘규제내용’ 항목은 관련된 규제내용을 작성하며, 관련 근거 법령을 중심으로 작성함
- 넷째, ‘건의내용’은 세부적으로 ‘규제내용’, ‘문제점(불편사항)’, ‘개선의견’,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 첫째, ‘규제내용’은 규제에 대한 내용 및 관련 근거 법령 조항을 작성함
  - 둘째, ‘문제점(불편사항)’은 해당규제로 인한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자세히 적으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함께 작성함
  - 셋째, ‘개선의견’은 합리적인 해당규제의 개선방안을 작성하며, 현행 법령과 개선 법령의 조문을 작성함
- 마지막으로 기타 추가 설명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추가함

#### □ 홈페이지 및 작성 양식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및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음

[그림 4-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및 작성 양식

국민이 만드는 규제혁신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 | 알림마당 | 개선성과 | ☰

**규제건의**

▶ **규제건의 신청**

규제건의  
지자체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규제개혁담당관용)  
대한상의 규제개혁신문고  
(상의 규제예외접수센터용)

나의 신청내역

☰ > 규제건의 > 규제건의 신청 > 규제건의

**규제건의**

규제건의

지자체 규제개혁신문고

대한상의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규제건의**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예외를 건의하는 공간입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정의 보기

신청하기

○ 건의내용

▶ 작성예시

\*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제목\***

**규제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법령(규정)**    관련법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기

**건의  
내용**

**규제  
내용\***

○ (규제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법령 조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개선건의가 아닌 경우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로 미송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FAQ 참조)

0 / 1000자

**문제점  
(불편  
사항)\***

○ (해당규제로 인한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0 / 1000자

**개선  
의견\***

○ (합리적인 해당규제의 개선방향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 / 1000자

첨부파일

추가

삭제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inmungo.go.kr/)

140

### 3) 중소기업 ombudsman<sup>13)</sup>

#### □ 개요

- 중소기업 ombudsman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 및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임
  - 기능 및 역할로는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등이 있음
  - 의무 및 권한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등이 있음
- 중소기업 ombudsman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기관,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ombudsman의 원활할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ombudsman 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함
- 중소기업 ombudsman의 비전 및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음
  - ombudsman의 지향점으로는 기업의 나침반 역할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 속에서 영세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업이 갖도록 함
  - 기업의 네트워크 결속력의 강화로 기업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개별 기업의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ombudsman의 필요성을 알림
  - 기업을 대변하는 정책 어젠다 제기 및 성장 환경기반의 조성 추진으로 자금·인력 조달방안 및 적정대가, 판로확보를 위한 현실설 있는 정책·제도 대안을 만들어 이슈화하며 관계부처를 설득함
-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기업민원 피해신고, 적극행정 면책 건의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규제애로는 중소·중견기업에 기존 규제 등 기업의 고충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처리함

13) 출처: 중소기업 ombudsman 홈페이지(<https://www.osmb.go.kr/>)

- 기업민원 피해신고는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임
- 적극행정 면책건의는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함

○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과정은 4단계로 진행됨

- 첫째, 현장중심 과제발굴, 둘째, 규제대안 심층분석, 셋째, 개선방안 집중협의, 넷째, 규제개선 종결처리로 진행됨

[표 4-2] 중소기업 ombudsman 업무처리과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	현장중심 과제발굴	규제대안 심층분석	개선방안 집중협의	규제개선 종결처리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발굴 협업플랫폼 구축 및 기능</li> <li>• 243곳 전 지자체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구축-연계</li> <li>• 51곳 유관단체 및 지방 중기청 협업체계 구축</li> <li>• 157명 지역별 명예 ombudsman과 규제개선위원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애로 DB 전산 시스템 고질규제 파악 및 대안 마련</li> <li>• 13천여건 규제애로: 건의사례, 처리 이력, 100만 기업 정보 등이 축적</li> <li>• 내부분야별 전문위원: 현황·문제점 진단 및 대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와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협의</li> <li>• 부처협의 지속추진: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부처협의 실시</li> <li>• 부처협의 과정 공개 (개선건의안, 부처 의견): 기업·국민의견 실시간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 방침 확정 과제, 주요 의결회의체 보고</li> <li>• 개선과제 분기별 이행점검 및 실시: 미 이행시 권고 실시</li> <li>• 맞춤형 규제개선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업진단별 정보제공</li> <li>• 민원인 개별 회신: 개선과제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제 회신</li> </ul>

출처: 중소기업 ombudsman 홈페이지(<https://www.osmb.go.kr/>) 재구성

□ 규제애로 신고 구성 항목 홈페이지 작성 양식

○ 중소기업 ombudsman의 규제애로 신고 구성 항목은 ‘제목’, ‘신고유형’,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4개 항목으로 구성됨

- 이와 함께, 규제애로 신고 공개 여부, 시·도 지역, 신청자 개인정보, 알림통보 선택이 있음

- 첫째, '제목' 항목은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 둘째, '신고유형' 항목은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며, 공개 여부를 설정함 (공개 또는 비공개)
  - 신고유형으로는 '규제애로 신고', '기업민원 피해신고', '적극행정 면책건의', 3가지 유형이 있음
- 셋째, '현황 및 문제점' 항목은 규제애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작성함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음
- 넷째, '개선의견' 항목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음
- 특이한 점은 '규제애로 신고', '기업민원 피해신고', '적극행정 면책건의', 3가지 유형 중 '규제애로 신고' 유형에 대한 신고서가 따로 존재함
  - 규제애로 신고서는 '규제애로 내용', '개선의견',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작성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작성함
  - 규제애로 신고서에서 '규제애로 내용'은 건의자가 평소 느끼는 규제애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규제애로 신고서에서 '개선의견'은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는 것으로 법령 개정 외 규제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함

#### □ 작성 양식

- 중소기업 옴부즈만 작성양식 및 규제애로 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음

[그림 4-3]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및 작성 양식

● **규제애로 신고** | 기업용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해주세요.

<b>제목*</b>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b>신고유형*</b>	<input type="text" value="규제애로 신고"/>	<b>공개여부*</b>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b>현황 및 문제점</b>	* 최대 5,000자 까지 작성 가능하며, 초과한 글자수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b>개선의견</b>	* 최대 5,000자 까지 작성 가능하며, 초과한 글자수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b>시/도*</b>	<input type="text" value="==시/도 선택=="/>	<b>시/군/구</b>	<input type="text" value="선택"/>
<b>신청자*</b>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b>연락처</b>	<b>휴대폰*</b>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b>이메일*</b>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b>패스워드*</b>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b>알림통보선택*</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안함 <input type="checkbox"/> 메일 <input type="checkbox"/> SMS <input type="checkbox"/> 알림톡		

###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독립운영기관입니다(09.7). 이를 위해 우리 실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서를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기업규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꼭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Q 1) 작성자(\*) : \_\_\_\_\_ Q 2) 기업명 : \_\_\_\_\_ Q 3) 지역(시군구) : \_\_\_\_\_  
 Q 4) 전화번호 : \_\_\_\_\_ Q 5) 휴대폰(\*) : \_\_\_\_\_ Q 6) 이메일(\*) : \_\_\_\_\_  
 Q 7) 공개여부(\*) : 공개  비공개  (본 자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규제애로 신고' 메뉴에 등록됩니다.)

출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s://www.osmb.go.kr/>)

144

#### 4) 한계점

##### □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 한계점

- 행정안전부의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의 구성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검토한 결과 한계점이 존재함
- 첫째, ‘현황 및 문제점’ 항목은 규제가 도입된 시점과 규제개선 시점을 구분하여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배경을 확인할 수 없음
  - 사회·경제적 배경 변화에 따른 규제개선의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의 문제점만 제시되어 있음
  - 또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따라서,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목적의 불명확, 규제개선의 시급성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둘째, ‘개선효과’ 항목에서는 규제개선에 따른 효과를 작성하지만, 경제적 분석인 비용-편익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효과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없음
  - 특히,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검토함
  - 이와 함께, 규제개선의 정량적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면 정성적 자료를 통해 개선효과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나, 관련된 자료의 첨부 역시 규제개선 효과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량적 효과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 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셋째, 규제집행 현황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규제 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파악할 수 없음

- 규제집행 현황 제시가 필요한 이유는 규제개선이 피규제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더라도 규제비용이 과도할 경우 규제개선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넷째,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지 않고 전문가 및 소관부처의 의견만 수렴하여 제시함
  - 규제는 직접적인 대상인 피규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규제개선은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다섯째, 지방규제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지방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지방규제는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환경개선, 주민생활 변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지역공동체, 고령사회 등 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효과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국내 유사사례 및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검토 결과 다수의 사례에서는 표지 또는 규제개요를 통해 규제개선의 목적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에서는 지방규제 개선의 목적, 추진배경,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이 전체적인 규제개선에 대한 요약이 포함된 표지 또는 개요를 작성하는 항목이 없음
  - 따라서, 규제개선의 개요를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요약이 필요함

####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계점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일반국민 개인이 규제

개혁 신청이 가능하므로 규제개선 신청방법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음

- 일반국민이 신청하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규제개선 신청방법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일반국민이 규제개선을 신청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항목이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어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함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황 및 문제점 작성시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개선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작성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는 문제점(불편사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당규제의 개선방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현황이나 문제점이 객관적이지 못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 역시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규제개선의 배경 및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함
- 즉, 규제개선 목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성 및 논리성이 부족함

○ 따라서, ‘규제’ 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 건의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의견) 작성 분량에 제한이 있음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는 각 항목이 1,000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 항목의 작성 분량이 5,000자로 제한되어 있음
- 작성 분량의 제한으로 정량적 및 정성적인 자료 제시에 한계가 존재함

## 제2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 1. 매뉴얼(안) 구성 방법

#### □ 구성 개요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기존 규제의 완화 및 개선 등을 위해 기존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규제의 문제점, 추진배경, 목적 및 개선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 따라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역시 기존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국내 유사사례 및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항목 비교를 통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및 필수항목을 반영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을 구성함
- 이와 함께, 현재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에서 많은 구성 항목의 변화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규제 개선건의의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의 항목을 고려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해당 부처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매뉴얼(안)을 구성함
  - 특히, 규제개선의 필요성, 논리성, 체계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항목(필수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세부항목 및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개선 분석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 대항목(필수항목) 및 세부항목

- 위의 구성 개요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의 대항목(필수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함

- 첫 번째는 지방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배경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항목으로 구성함
  - 세부항목은 추진배경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를 구분하여 목적과 방안을 명확하게 구분함
- 두 번째는 규제개선 효과성을 검토하는 항목으로 구성함
  - 세부항목은 규제집행을 위한 비용을 검토하는 항목과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 항목으로 구성함
  - 특히, 비용-편익 분석은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및 해외 규제사후영향 평가에서 강조하는 분석이므로 포함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함
- 세 번째는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 세부항목은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및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구성함
- 네 번째는 지방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배경, 목적, 효과성 분석 및 실효성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의 방안을 요약하는 항목으로 구성함

## 2. 매뉴얼(안) 구성 항목

### □ 매뉴얼(안)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의 구성은 ‘표지’, ‘규제 개요’,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개선 실효성’, ‘종합결론’, ‘별첨’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함
  - 일곱 가지 항목 중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개선 실효성’, ‘종합결론’을 대항목(필수항목)으로 설정함

### □ 구성 항목 및 주요내용 요약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의 구성 항목 및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후 항목별 분석 필요성 및 세부 주요내용을 설명함

**[표 4-3]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구성 항목 및 주요내용**

구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표지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
	지방규제 개선건의 지역	• 지방규제 개선건의 해당 지역
	담당부서 및 작성자	• 담당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규제 개요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유형	• 규제개선 유형 1.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 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 4.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 5.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
	규제조문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
	규제내용	•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
	위임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공표일 및 시행일	• 제정·개정 및 시행일
	추진배경	• 규제개선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경위
	목적	• 기존 규제개선 목적 및 필요성
	개선방안	• 기존 규제개선 방안
	기대효과	•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규제의 직접적 대상인 피규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 등
	신구조문 대비표	• 기존 규제와 개선되는 법령 조문의 대비표
	I. 규제 개선 배경 및 방안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존 규제개선 방안 •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규제개선의 기대효과(직·간접 효과)

구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Ⅱ. 규제 개선 효과성	규제집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규제집행 현황</li> <li>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인력 및 소요예산)</li> </ul>
	경제적 효과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비용-편익 분석 결과(또는 비용-효과분석) : 규제순응비용 변화, 규제집행·감시비용 중심</li> <li>규제개선 편익 또는 효과(정성적 또는 정량적)분석</li> </ul>
	부수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 효과</li> <li>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환경개선, 주민생활, 취약계층, 생활인구, 인구감소, 지역공동체, 고령사회 등의 효과분석</li> </ul>
Ⅲ. 규제 개선 실효성	유사사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법 사례검토</li> </ul>
	이해관계자 의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선의 효과성, 부작용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li> </ul>
	소관부처 의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선 관련 소관부처 의견검토</li> </ul>
Ⅳ. 종합 결론	요약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선 배경 및 효과성 요약</li> <li>규제개선 방안 요약</li> </ul>
별첨	기타 의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 상세내역</li> <li>부수적 효과 상세내역</li> <li>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표 등</li> </ul>

### 3. 매뉴얼(안) 항목별 세부내용

#### □ 표지

- 표지에는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 ‘지방규제 개선건의 지역’, ‘담당부서 및 작성자’의 세 가지 세부항목이 포함됨
  - 국내 유사사례인 규제영향분석. 조사특례심층평가 및 미국, 영국, 캐나다의 규제사후영향평가에서는 표지에 규제 개요에 포함되는 내용 요약을 포함하는 사례도 있으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표지와 개요를 구분하여 표지와 내용 요약을 명확하게 구분함

- 세 가지 세부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은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 등 조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개선된 규제 내용을 강조하여 작성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지역은 개선건의 분석서를 제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나타냄
  - 담당부서 및 작성자는 규제 담당부서와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함

## □ 규제 개요

- 규제 개요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일부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규제개선 건의서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을 요약함
- 규제 개요는 ‘규제사무명’, ‘유형’, ‘규제조문’, ‘규제내용’, ‘위임법령’, ‘공표일 및 시행일’, ‘추진배경’, ‘목적’, ‘개선방안’, ‘기대효과’,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신구조문 대비표’ 12개 항목으로 구성됨
  - ‘규제사무명’은 규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 내용을 작성함
  - ‘유형’에서는 제2장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현황(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현황)에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분류한 다섯 가지 규제 개선 유형을 지방규제 특성을 고려하여 2차적으로 재분류한 다섯 가지 규제 개선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함
  - 1차적으로 분류한 다섯 가지 규제개선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산업진흥 분야(신산업, 산업시설, 과학·정보통신, 창업)
    - 보건·복지 분야(보건의료, 식품의약, 복지)
    - 국토·교통 분야(토지, 주택, 교통·물류, 건설)
    - 환경·문화 분야(환경오염, 친환경, 해양, 수산, 산림, 축산, 문화)
    - 행정 분야(일반·지방행정, 안전, 법무, 국방, 노동, 교육)
  - 2차적으로 분류한 다섯 가지 규제개선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규제 개선 유형 분류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규제개선의 내용을 검토하여 재분류하도록 함

-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
  - 산업진흥 분야(신산업)
  -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
  -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
  -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
- ‘규제조문’에서는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을 작성하며, ‘위임법령’에서는 규제 근거인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을 작성하며, ‘공표일 및 시행일’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시행 일자를 작성함
  - ‘추진배경’은 규제개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를 작성하며, ‘목적’은 규제개선의 시급성을 포함한 규제개선의 목적과 필요성을 작성함
  - ‘개선방안’은 기존 규제의 개선방안을 작성하며, ‘기대효과’는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기대효과를 작성함
  -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는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피규제자와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이 포함되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존 규제와 개선되는 법령 조문을 대비하여 작성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에는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된 입법예고, 일몰설정 여부, 비용감축제 등의 항목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비용-편익 분석 등의 내용은 규제개선 효과성에서 작성하도록 함
- 다만, 규제개선을 통해 나타나는 기대효과와 피규제자에게 부과하는 의무 또는 권리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내용 등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포함함
- 규제 개요 작성을 통해 전반적인 규제 및 규제개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규제개선의 효과성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함

## □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은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의 쟁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제개요에서 작성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함
- 첫째,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규제개선 건의서를 작성한 목적과 규제개선을 통해 법령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작성함
  - 해당 규제개선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한 문장 수준으로 요약·정리함
  - 규제 도입 시점과 규제개선 시점을 구분하여 규제 도입과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규제 도입 시점과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현시점의 정책환경 변화를 작성함
  - 해당 규제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 및 도입되었는지, 규제가 도입된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나 이슈, 정책환경 등을 작성하며 이를 통해 규제개선의 영향 및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존 규제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의 시급성을 작성함
  - 규제 도입 시점과 규제개선 건의 현시점 간 정책환경 변화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개선의 목적을 작성함
- 둘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에서는 추진배경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환경 변화 대응,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개선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작성함
  - 개선방안은 규제개선의 방안인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함
  - 기대효과는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미래의 상태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성 및 실효성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단, 규제개선의 기대효과 작성시 기대효과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작성함

## □ 규제개선 효과성

- 규제개선 효과성은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현황을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으로 유발된 경제적 효과 및 부수적

효과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규제집행 현황’, ‘경제적 효과성 분석’, ‘부수적 효과’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규제개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함

- 첫째, ‘규제집행 현황’은 규제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임기관 등의 행정적 및 재정적 현황을 작성함
  - 규제 집행을 위해 투입한 예산, 인력 등 전반적인 현황을 작성하며 행정적·재정적 투입규모가 다른 규제와 비교하여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비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및 인력 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규제 집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여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음
- 둘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또는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여 규제개선의 경제적 합리성을 검토함
  - 해외 사례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의 규제사후영향평가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의 순편익을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다만,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계량 및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순편익을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순편익 분석결과를 제시한 사례를 많지 않음
  - 특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규제영향 분석서에도 편익 항목을 정량적 분석이 아닌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개선의 효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자료로 비용-효과 분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규제개선 전후의 규제순응비용의 변화는 규제 순편익 작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성에 용이하므로 규제순응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경제적 합리성 이외 사회적 합리성 등 다양한 가치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부수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 외 규제개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작성하는 것으로, 지방규제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함
  - 부수적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환경개선, 주민생활, 취약계층, 생활인구, 인구감소, 지역공동체, 고령사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규제개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작성함
  - 세부적인 작성내용은 제2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작성방법에서 논의함

#### □ 규제개선 실효성

- 규제개선 실효성은 지방규제 개선건의 적절성 검토를 목적으로 ‘유사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검토’, ‘소관부처 의견검토’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함
- 첫째, ‘유사사례 검토’는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와 관련된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타법사례 변화 양상 등을 비교하여 작성함
  - 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해당 규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다양한 규제 체계 중에서 해당 규제가 가지는 변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음
- 둘째, ‘이해관계자 의견검토’는 해당 규제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선의 효과성, 부작용, 개선방안, 체감하는 규제 정도 등의 의견을 작성함
  - 해외 사례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의 규제사후영향평가에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검토를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의견검토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 및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소관부처 의견검토’는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규제개선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개선방안 등 소관부처의 의견수렴 후 작성함

#### □ 종합결론 및 별첨

- 첫째, ‘종합결론’에서는 ‘요약 및 개선방안’의 한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개선 실효성에서 다른 내용을 요약하여 규제개선의 방안을 제시함
- 둘째, ‘별첨’에서는 규제개선 효과성 항목에서 간략하게 작성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및 부수적 효과에 대한 상세내역과 규제개선 실효성 항목에서 간략하게 작성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경우 상세내역을 제시함
- 배경 및 필요성, 규제개선 효과성 및 실효성 항목의 내용 요약과 개선방안을 작성함

## 제3절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작성방법

## 1.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방규제 개선건의는 규제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를 검토해야 함
  - 규제 도입 이전의 정책환경을 파악하여 규제 도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
- 규제 도입 시점의 정책환경을 파악한 이후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현시점의 정책 환경 파악이 필요함
  - 규제 도입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가 포함된 정책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규제 도입 이후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변화 행태, 규제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 등이 있다면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 등을 작성해야 함
  - 규제를 도입한 배경이 되는 정책환경이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현시점에도 중요성이 유지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정책환경 변화, 추진배경 및 문제점을 토대로 규제개선 기존 규제 입법취지의 한계점을 제시하여 규제개선의 시급성을 작성함
  - 규제개선 건의 배경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개선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인 통계자료나 정책보고서,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규제개선 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및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규제 도입 및 개선 현시점 간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가 정량적·정서적인 자료에 의해 제시되어야 함

- 둘째, 규제개선 이유 및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선의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셋째, 규제개선을 통한 법령의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에서는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항목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규제의 개선방안과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를 작성함
  - 개선방안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 내용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기대효과가 제시되어야 함
  - 기대효과는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미래의 상태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규제개선을 통한 효과성 및 실효성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효과를 작성함
  - 기대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기대치 제시가 가능하면 정량적인 효과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정량적인 효과를 작성할 수 없다면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함
  - 단, 정성적으로 작성하되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따라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를 작성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규제개선 방안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둘째,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2. 규제개선 효과성

#### □ 규제집행 현황

- 규제집행 현황은 규제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집행 현황, 즉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제시함
  - 규제집행 비용을 제시하는 이유는 규제개선이 피규제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더라도 규제비용이 과도할

경우 규제개선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파악함

- 규제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현황과 함께 규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문제점이 있다면 작성함
  - 규제집행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임기관이 될 수 있으며, 규제집행 주체에 따라 예산 및 인력 등 규제집행의 효율성이 다름
  - 행정적 및 재정적 규제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규제집행 주체의 예산, 인력 현황 등을 제시해야 함
- 따라서, 규제집행 현황을 작성하기 위해 한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규제집행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제시되어야 함

#### □ 경제적 효과성 분석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에는 규제영향분석과 동일하게 규제에 대한 다양한 효과를 파악하고 추정하는 경제적 효과성 분석인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함
- 지방규제의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분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비용 부담자 및 수혜자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 규제와 관련된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감안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데에 반해, 지방규제의 경우 상당수 해당 지역내의 이해당사자로 제한되기도 함
    - 반면 비용과 편익의 이해당사자가 전국적인 경우도 존재하여,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어, 해당 규제개선 건의사항별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범위에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 비용과 편익 추정의 모호성과 추정의 어려움
    - 개선건의 항목들이, (위임규제의 경우) 규제 자체의 큰 개선보다는 시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개선 건의가 많아 해당 개선이 비용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치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계량화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용이나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계량화된 추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각 항목의 추정에 있어서 규제가 도입될 당시의 사전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작성하기에는 역량·정보의 한계가 존재하며 부담스러울 수 있음
- 따라서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화폐가치가 아닌 다른 계량화된 효과(예: 주민수혜자의 증가분 등)의 제시하도록 하고, 즉 비용-편익분석이 아닌 비용-효과 분석을 건의주체에게 작성토록 하고, 추후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해당 효과를 가급적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편익 분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함
- 사후영향분석으로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규제를 도입할 당시의 분석은,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순응비용 및 규제자의 집행·감시비용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중의 편익을 비교하는 비교적 정형화된 분석이 가능함
  - 하지만, 규제시행 이후의 개선에 관한 분석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중의 편익이 규제개선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 규제개선을 통해 비교적 측정이 쉬운 규제순응·집행 비용 등의 절감분을 규제개선의 편익으로 볼 필요가 있음
  - 단, 규제개선으로 인한 대중의 편익이 크게 감소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규제비용의 절감분이 큰 경우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존재하며, 대중 편익의 감소분이 크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규제비용의 절감분이 크더라도 개선의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지방규제 개선의 비용 및 편익(또는 효과)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규제로 인한 비용은,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직접적인 행정비용(박명호, 2014:10)을 우선 생각할 수 있으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이진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직접비용으로서의 규제순응 비용은, 피규제자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규제당국자의 규제집행과 감시에 관한 비용을 포함함(한국개발연구원 등(2014: 13)의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 그 외 피규제자의 금융비용, 기회비용, 규제로 인한 시장왜곡 효과(이인호, 2021: 15) 등은 간접비용에 해당하며, 추정이 어렵고 특히 지방규제의 경우 더욱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음
  -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규제 기준의 설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직접편익 외에, 이차적으로 파생되거나 유발되는 편익으로 피규제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혜택인 간접편익이 존재하나, 규제관련 현행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직접편익만을 고려함(한국개발연구원 등(2014: 13)의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 예컨대, 반품·환불 절차 확대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를 위한 규제의 도입시, 직접편익으로는 반품·환불 기준이 명확히 확립됨으로써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소비자 소원 수리 및 소송 비용을 들 수 있으며, 간접편익 으로서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증가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이 저감될 경우, 직접편익으로는 건강증진 편익을, 간접편익으로는 오염방지산업의 부가가치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지방규제의 사후영향분석에서는 이러한 편익의 추정이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적용이 어렵고, 사후적인 규제개선시 이러한 편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다는 전제 하에 규제순응비용의 절감분을 중심으로 비용과 편익을 판단함
- 지방규제 개선의 비용 및 편익(또는 효과)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 현행 규제 이해당사자를 규명함
    - 규제집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 부담자), 피규제자(규제순응비용 부담자), 규제수혜자 등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적 범위: 해당 기초자치단체, 인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생활권역, 광역, 초광역 또는 경제권역, 국가 등
    - 각 이해당사자별 규모: 영향권내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의 구체적인 숫자(근거자료 포함)

- 현행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순응·집행·감시비용, 규제개선시 해당 비용의 절감분 및 규제개선의 기회비용 등을 작성함
  - 규제집행자의 담당사무에 투입되는 자치단체 재정소요 및 규제개선시 부담액의 절감분: 재료비 등 직접비 및 인건비 등 간접비, 관리·감독 등 감시비용 등
  -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 부담액 및 규제개선시 부담액의 절감분: **피규제자 1인당 규제순응비용(추정치 및 근거자료 제시) × 피규제자의 규모 → (규제개선시) 피규제자 1인당 규제순응비용 절감분 × 피규제자의 규모**
  - 규제수혜자의 규제로 인한 혜택 및 규제개선으로 인한 혜택의 변화 또는 축소여부: **규제수혜자 1인당 규제혜택 변동분(화폐단위) × 규제수혜자의 규모**
- 화폐가치 추정이 어려운 경우 비용-효과 분석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 규제 이해당사자의 범위 및 규모파악과 관련해서는 관련 인구통계 등의 최근년도 자료를 활용한 추정이 가능하나, 화폐가치(금액단위)인 규제순응비용 및 규제혜택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규제순응비용의 경우 피규제자에 대한 인터뷰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의 협조를 구해 규제순응비용을 가급적 파악이 필요하나(건의주체에게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의 필요), 규제혜택의 변동분은 많은 경우 추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화폐가치의 추정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화폐가치로 측정할 필요 없이 (비용-효과 분석의 논리에 따라) 정량화된 다른 수치(예: 방문객수의 변화, 안전사고율의 변화, 탄소배출량의 변화 등)의 변화를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추후 전문기관에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경우 이를 환산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에서도 화폐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시된 계량화된 다른 수치를 기반으로 최종 개선 의사결정을 수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 및 혜택의 변화에 있어서 화폐가치 또는 비화폐가치의 계량화된 변화를 제시하기 힘든 경우, 정성적인 기술로 이를 대체하고, 추후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계량화할 수 없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에 추가로 부수적인 효과로서의 정성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부수적 효과로서 특히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대응과 관련된 효과의 기술을 통해, 지방규제 개선이 단순한 규제로 인한 순편익의 증감 외에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충분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에서 계량화되지 못하는 것임이나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통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따라서, 규제개선 효과성 분석을 작성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함
  - 둘째,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 결과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보다 편익(효과)이 더 큰지 작성해야 함

#### □ 부수적 효과

- 경제적 효과성 분석인 비용-편익 분석(또는 비용-효과분석)은 규제영향분석 및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에도 포함되는 항목임
  - 영국, 호주, 일본의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및 부정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작성하도록 권고함
- 하지만,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지방규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환경개선, 주민생활, 취약계층, 생활인구, 인구감소, 지역공동체, 고령사회 등 지역발전 및 지역의 사회적 환경 개선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부수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성 분석과 달리 규제개선의 효과 여부도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부수적 효과는 지방규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부수적 효과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부수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간략하게 부수적 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작성함

○ 지방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규제 개선의 부수적 효과는 총 11가지 항목에 대해 효과 여부를 판단함

1.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
2.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
3.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4.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5.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6.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7.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
8.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9.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10.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11.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 3. 규제개선 실효성

#### □ 유사사례 검토

- 유사사례 검토는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와 유사한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규제의 수준을 비교 및 분석하여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함
  - 타법 사례에 의한 규제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근거자료로 제시함
- 타법사례의 비교 및 분석 외 해외 선진국의 해당 규제개선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제시함
  - 해당 규제가 국제적 기준을 부합하는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 사례가 있다면 해당 국가의 기준 및 사례를 제시함
- 따라서, 유사사례 검토를 작성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작성된 타법 사례의 현황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와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함
  - 둘째,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함

#### □ 이해관계자 의견검토 및 소관부처 의견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검토는 규제개선을 위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의 반영여부 등 조치결과를 작성해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는 규제개선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집단을 파악하여 제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해야 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서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강조함(국무조정실, 2023: 27)
- 이해관계자 의견검토는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간담회, 공청회, 초점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일부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과정에서 곡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배경 및 필요성, 규제개선 효과성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이해관계자 의견검토를 작성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
  - 둘째,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고 의견반영 여부가 제시되어야 함
- 소관부처 의견 검토는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규제의 개선에 따른 영향,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제개선 의견 등을 작성함
  - 소관부처의 의견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4. 종합결론 및 별첨

##### □ 요약 및 개선방안

- 요약 및 개선방안에서는 지방규제 분석서의 항목인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규제개선 효과성 및 실효성 항목의 내용 요약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작성함
- 요약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 둘째, 내용 요약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의 적절성이 제시되어야 함

##### □ 별첨

- 별첨에서는 규제개선 효과성 및 규제개선 실효성 항목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및 부수적 효과에 대한 상세내역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의 상세내역을 제시함
-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에 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분석 기준년도, 이해당사자 규명, (규제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익의 연간 변동분 및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정성적 고려요인)을 토대로 규제개선의 비용·편익을 비교하여 결론으로 제시함

- 부수적 효과는 지방규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를 반영하여 11가지 항목에 대해 효과 여부를 판단하고 부수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내용을 기술함

## 5. 기타

### □ 규제 제정·개정, 추진배경 작성 참고사이트

- 해당 규제의 도입배경,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규제영향분석서는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내용,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국내 규제영향분석은 해외 규제영향분석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해당 규제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참고사이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관련 법률을 검색하면 해당 법률안의 의안명,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개선하고자 하는 법률을 의안명으로 검색한 후 해당 법률의 제안일자를 확인 및 주요내용의 결과를 확인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함

[그림 4-4] 참고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BILL INFORMATION HOME | 입법정보 통합검색

의안개요 | 의안검색 | 의안현황 | 의안통계 | 연차보고서 | 청원

**의안검색**

- 제안대수: 제21대 (2020-2024) ~ 제21대 (2020-2024)
- 의안종류/처리: 의안종류전체 | 의안처리구분전체
- 발의자/제안자: 제안종류전체 | 발의종류전체 | 동명어인 링크
- 의안번호
- 의안명

**인기검색어**

- 변호사
- 연금계통
- 출간소음
- 불기만경
- 변리사
- 회계사
- 중개사
- 광고의 공정한
- 소상공인 임대료
- 배당

본회의 처리의안 | 본회의 표결정보 | 국회입법예고 | 의사일정 | 입법정보 통합검색 | 위원회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 | 최근 접수의안 | 본회의부의안건

**의안검색**

간편검색 > 상세검색

검색결과 상세

'도시공원(으)로 총 1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의안명: 도시공원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1249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대의원 등 11인)	의원	2023-09-27				소관위접수
21232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경원의원 등 11인)	의원	2023-07-17				소관위심사
21224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의원	2023-06-01				소관위심사
21224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성호의원 등 12인)	의원	2023-06-01				소관위심사
212086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성호의원 등 11인)	의원	2023-03-24				소관위심사
21195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종래의원 등 11인)	의원	2023-01-19				소관위심사
21169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지근의원 등 10인)	의원	2022-08-19				소관위심사
211297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형찬의원 등 10인)	의원	2021-10-26				소관위심사
2112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3인)	의원	2021-09-10				소관위심사
21051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병의원 등 14인)	의원	2020-11-10				소관위심사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

- 둘째, 국회 법률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law>)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현행법률, 최근 제정·개정법률, 폐지법률, 판례, 입법과정 개관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개선하고자 하는 법률을 검색하면 공포일 기준 및 시행일 기준으로 개정요약, 개정문, 의안원문,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5] 참고사이트(국회 법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회법률정보시스템**  
National Assembly Law Information

자료등록현황 | 도움말

헌행법률 | 최근제정·개정법률 | 폐지법률 | 판례 | 국회관계법규 | 법률관련정보 | 입법과정개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법률정보**

통합검색 | 상세검색

최근제정·개정법률	폐지현안	폐지참고자료	국회법률지식DB
법률명	국회통과일자	공포일자	시행일자
공인법	2023.10.06	2023.10.31	2024.01.0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3.10.06	2023.10.31	2024.05.01
관광진흥법	2023.10.06	2023.10.31	2024.05.0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2023.10.06	2023.10.31	2023.10.31
군인 재해보상법	2023.10.06	2023.10.31	2024.05.01
군인사법	2023.10.06	2023.10.31	2024.05.01
군인연금법	2023.10.06	2023.10.31	2024.05.0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023.10.06	2023.10.31	2023.10.3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National Assembly Law Information

통합검색 | 상세검색 | 자료등록현황 | 도움말

헌행법률 | 최근제정·개정법률 | 폐지법률 | 판례 | 국회관계법규 | 법률관련정보 | 입법과정개관

연혁 | 목차 | 관련법령

공포일기준 | 시행일기준

개정요약 | 개정문 | 의안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 국회차리정보 | 인용참조요론 | 법/시행령·규칙·준 | 헌행시행법령보기

회원내람기 | 오류신고

제55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별위원회  
[시행 2023.10.31] [법률제19820호, 2]

제56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시행 2024.5.17] [법률제19590호, 20]

제57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시행 2023.7.10] [법률제19430호, 20]

제56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시행 2023.10.19] [법률제19370호, 2]

제55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시행 2024.3.22] [법률제19251호, 20]

제54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시행 2023.6.28] [법률제19117호, 20]

제53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23.10.31] [법률 제19820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역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역이고 건실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출처: 국회 법률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law>)

- 셋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홈페이지에서는 법령을 검색하여 본문, 제정·개정이유, 법령 비교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개선하고자 하는 법률을 검색하면 연혁별 제정·개정이유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6] 참고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자료 참고사이트

-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은 분석 기준년도, 이해당사자 규명, (규제 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익의 연간 변동분 및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정성적 고려요인)을 작성함
- 비용·편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제영향분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규제영향분석서 내 비용·편익 분석결과에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에 필요한 영향집단에 대한 직접비용, 간접비용, 직접편익, 간접편익이 작성되어 있어 규제 신설 당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전술한 내용과 같이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규제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을 위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참고사이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규제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지역기업체 실적자료, 부가가치율에 대한 승인통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산업연구원 산업통계 분석시스템(<https://www.istans.or.kr/>) 홈페이지를 통해 거시지표, 산업구조, 생산부문, 생산성·경쟁력, 산업연관관계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7] 참고사이트(국가통계포털·산업통계분석시스템)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South Korean statistical websites. The top screenshot is the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omepage, featuring a search bar, navigation tab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and a large data card for '고용' (Employment) as of November 2023. The bottom screenshot is the ISTATS (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 homepage, which includes a search bar, a navigation menu, and a table of '주요지표 전년 동기비 증감률' (Key indicators year-over-year change rate).

**KOSIS Data (2023년 11월 기준):**

- 추계인구 ('23): 5,171만명
- 출생아수 ('22): 249,186명
- 합계출산율 ('22): 0.778명
- 사망자수 ('22): 372,939명
- 기대수명 ('22): 82.7세

**고용 (2023년 11월 기준):**

- 취업자수
- 고용률
- 실업률

**ISTATS 주요지표 전년 동기비 증감률 (단위: %)**

시점	생산	수출	수입	생산
2023.10	▲1.22(+3.46)	▲5.14	▼-11.15	▲0.79
2022	▼-7.99	▼-9.56	▲-4.17	▲3.65
2021	▲7.61	▲1.97	▲3.45	▲4.43
2020	▼-0.28	▼-5.48	▼-1.11	▼-2.03
2019	▲0.09	▼-10.37	▼-4.61	▲1.40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산업연구원 산업통계 분석시스템(<https://www.istans.or.kr/>)

## 제4절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논의사항

### 1. 운영 방향

####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목적

- 현 정부는 중복 및 복합적인 덩어리규제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기존 규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함
- 과거에는 규제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을 강조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였으나 OECD 및 EU에서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을 위해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검토를 통해서도 기존의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규제사후영향평가와 함께 원칙적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하지만, 기존 규제의 정비는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어떠한 목적으로 실시 하는지에 따라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위해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 운영 방향 논의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은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사전적으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규제의 목표 달성 여부 및 규제목표의 유효성 여부 판단을

통해 기존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함(김준, 2021: 31)

- 호주는 사전적으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규제의 효율성 및 적절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하여 규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함(이민호, 2017: 105)
  - 즉, 호주는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규제개선 추진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영국은 규제개선의 추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호주와 같이 기존 규제가 도입된 시점과 현시점 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과성 판단과 함께, 영국과 같이 규제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를 평가와 함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비 및 개선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작성항목 간소화

### □ 작성항목 간소화 필요성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해당 부처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작성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기존 규제의 신설 목적 및 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수집 및 규제 현황 파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함
  - 순환보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해당 규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에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규제개선 효과성 분석인 비용-편익 분석 작성을 위한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작성에 한계점이 존재함

#### □ 작성항목 간소화 방법 및 대안

-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부담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첫째, 기존 규제의 신설 목적 및 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개선의 추진배경 항목 중 규제 도입 시점의 정책환경, 입법취지의 내용을 다루지 않고 규제개선 효과성 및 규제개선 실효성 항목을 집중하여 다루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규제개선 효과성 항목 중 경제적 효과성 분석인 규제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정량 추정이 어려운 세부 분석을 생략하고 정성적 효과 분석 강조와 부수적 효과를 강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작성 항목 간소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작성 시간 단축 및 규제개선 건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작성 항목이 간소화 될 경우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이 필요함

### 3. 전문 연구기관 협업

#### □ 전문 연구기관 협업 필요성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가 직접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 확보의 어려움 및 담당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 이와 함께, 규제가 도입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경우 규제 담당자의 정보 부족으로 작성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수행 주체 및 방식에 대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므로 각 행정기관은 기관 내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추구함(이민호, 2017: 427)
  - 영국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해 다수의 전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함(임원혁 외, 2015: 34)
  - 호주는 규제 소관부처에서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수행하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하지만 정책역량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부처 및 기관의 평가를 우선시함(이민호, 2017: 105)
-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 및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반영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협업이 필요함

#### □ 전문 연구기관 협업 방법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에 의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은 객관성 확보의 한계가 있으며 자의적인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이 전담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능력 저해 및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및 책임을 지며 규제개선 효과성 분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시·도 연구원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도입 초기에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가 작성한 후 2차적으로 지방연구원(광역자치단체 연구원, 특례시 시정 연구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 포함)이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연구원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항목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경제적 효과성 및 부수적 효과에 대한 작성 내용 검토 및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연구원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이 필요함

#### 4. 수행절차

##### □ 규제발굴 및 규제분류

-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지만, 개선을 건의하는 모든 지방규제를 대상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님
  - 개선을 건의하는 지방규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함
  - 또한,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석서 작성을 위해 규제발굴 및 규제를 분류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
- 첫 번째 절차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단계임

- 개선이 필요한 규제발굴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주민 및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함
  - 규제개선은 규제포털, 내고장알리미 및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함
- 두 번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된 규제를 분류하는 단계로 규제는 중점규제 및 기타규제로 분류함
- 중점규제 및 기타규제를 분류하는 기준은 첫째,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여부, 둘째, 첫째 기준을 충족한 규제 중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가능 여부를 통해 분류함
  - 발굴된 규제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규제를 중점규제로 선정하여 중점규제를 대상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함

####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및 수정·보완

- 세 번째 절차는 중점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단계임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이며,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석서 구성 항목인 표지, 규제개요,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개선 실효성, 종합결론 등을 작성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중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함께 소관부처의 의견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함
- 네 번째 절차는 작성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수정·보완 단계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연구원(광역자치단체 연구원, 특례시 시정 연구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 포함)이 협업을 통해 수정·보완함
-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작성 항목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전문적 지식을 통해 작성이 필요한 규제개선 효과성 분석(경제적 효과성 분석 및 부수적 효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실시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한 후 지방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함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작성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이 협업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는 작성이 완료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함

####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1차 및 2차 검토

- 다섯 번째 절차는 제출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1차 검토 단계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수행함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는 제출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전달함
- 여섯 번째 절차는 제출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검토 단계로 2023년 12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지정된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됨(「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 전문 연구기관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사무국(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 접수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검토·조정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함

#### □ 규제 검토·조정

- 일곱 번째 절차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검토·조정 단계로 검토·조정 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함
  -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이 작성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조정함

○ 이와 같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수행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4-8]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수행절차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규제발굴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공무원), 주민·기업 및 민생 공모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li> </ul>
▽		
규제분류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점규제 및 기타규제 분류</li> <li>중점규제 및 기타규제 분류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여부</li> <li>2.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가능 여부</li> </ol> </li> </ul>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점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li> <li>분석서 작성중 소관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실시</li> </ul>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수정·보완	전문 연구기관 (지방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 항목 적정성 검토</li> <li>규제개선 효과성 분석(경제적 효과성 분석 및 부수적 효과) 보완</li> <li>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제출(행정안전부)</li> </ul>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1차 검토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내용 검토</li> <li>규제개선 필요성 인정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2차 검토(전문 연구기관 내용 전달)</li> </ul>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2차 검토	전문 연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내용 검토</li> <li>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검토보고서 작성</li> </ul>
▽		
규제 검토·조정	지방규제 혁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개선 건의 불수용시)지방규제혁신위원회 검토·조정</li> <li>검토·조정 결과 소관부처 통보</li> <li>검토·조정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안 마련</li> </ul>





# 제5장

##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한계

제2절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한계

##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개발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실제 지방규제 개선건의 과제에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함
  - 이와 함께, 2023년 12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업무를 전문적 및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을 제시함
- 연구 수행을 위해 이론적·제도적 논의,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안)을 도출함
- 이론적·제도적 논의에서는 규제, 규제혁신 및 지방규제에 대한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를 실시함
  - 세부적으로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이론적 내용 작성과 함께, 중앙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을 검토함
- 국내·외 사례검토에서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구성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유사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를 검토함
  - 국내 유사사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영향 평가, 법제처 입법영향분석의 개요, 법적근거, 도입배경, 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검토함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의 규제사후영향 평가의 목적, 도입배경, 수행절차, 평가항목 등을 검토함
-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국내·외 사례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개발함
  - 세부적으로, 먼저,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을 도출하였으며 구성항목, 세부항목, 주요내용 및 작성방법을 제시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을 위해 관련 운영방향, 작성항목, 전문 연구기관 협업, 수행절차 등의 논의사항을 검토함

#### □ 이론적·제도적 논의 주요 결과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검토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9,1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이후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된 규제개선 건수가 매년 2,300건 이상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 중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4,455건(48.7%)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규제개선을 위해 협의한 건의과제 총 4,445건 중 규제개선이 수용된 건의과제는 1,414건(31.7%), 불수용된 건의과제 수는 3,041건(68.3%)으로 나타남
  -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이 2019년 38.6%에서 2021년 27.1%로 감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어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서의 체계적인 작성방법 및 매뉴얼의 필요성을 도출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과제를 소관부처별로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가 전체 규제개선 건의의 2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13.8%, 행정안전부 13.3%, 환경부 10.1%, 농림축산식품부 7.9% 순으로 나타남
- 소관부처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반영하여 지방규제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함
  - 첫째, 산업진흥 분야(신산업, 산업시설, 과학·정보통신, 창업), 둘째, 보건·복지 분야(보건의료, 식품의약, 복지), 셋째, 국토·교통 분야(토지, 주택, 교통·물류, 건설), 넷째, 환경·문화분야(환경오염, 친환경, 해양, 수산, 산림, 축산, 문화), 다섯째, 행정 분야(일반·지방행정, 안전, 법무, 국방, 노동, 교육)로 구분함
  - 다만, 위와 같은 분류는 단순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소관부처별 분류이며, 지방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향후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에는 전술한 다섯 가지 유형을 수정하여 규제 유형을 분류함

#### □ 국내·외 사례검토 결과

-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펴본 결과 국내 유사사례는 규제 및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행 중인 규제 및 법령의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함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는 규제가 실제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함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규제 도입에 따른 목적이 적절히 달성했는지 여부이며, 해결하고자 한 문제 및 목적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한지 등을 평가함
- 국내·외 사례의 평가항목은 제도의 목적에 따라 항목 및 세부항목이 세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제도의 목적이 성과를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유사한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를 실시함
  - 국내·외 모든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배경 및 문제점 파악, 규제 목적, 대안의 적절성 검토, 기타 항목으로 나타남

-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공통항목으로는 배경 및 문제점 파악, 규제목적, 규제 목적 달성도, 비용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대안의 적절성 검토, 규제정비계획(개선방안), 기타(의견수렴 내용 등) 항목으로 나타남
-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은 과학적 근거 및 자료를 토대로 규제를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내용, 세부적인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개발 결과

- 매뉴얼(안)을 도출하기 전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작성 및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규제개선 분석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검토함
  - 이와 함께, 현재 지방규제 개선건의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규제 개선 검토 매뉴얼의 구성항목, 내용 등의 검토를 통해 한계점을 제시함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신청방법 및 양식의 사례를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의 부족함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시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규제 담당자의 업무 부담 및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해외 규제사후영향평가,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검토 매뉴얼의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함
  -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해당 부처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매뉴얼(안)을 구성하였으며, 항목별 세부항목 및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규제개선 분석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의 구성은 ‘표지’, ‘규제 개요’,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개선 실효성’, ‘종합결론’, ‘별첨’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함

- 일곱 가지 항목 중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개선 실효성’, ‘종합결론’을 대항목(필수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시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을 위한 논의사항을 제시함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목적을 검토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목적은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를 평가와 함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비 및 개선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함
- 작성항목의 간소화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작성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작성 항목이 간소화 될 경우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함
- 전문 연구기관의 협업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작성한 후 2차적으로 전문 연구기관이 작성내용을 검토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연구원(광역자치단체 연구원, 특례시 시정 연구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연구원 포함)이 협업하여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수행절차를 제시함

□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규제개선 수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기존 규제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작성 매뉴얼의 부재를 제시함

- 현재 지방정부가 규제개선을 위해 작성하는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는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법령, 추진경과, 개선방안, 경제적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전문가 및 부처의견 등에 대한 체계성 및 전문성이 미흡하여 규제개선 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제시함

- 따라서, 지방정부의 규제개선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함
  - 다만, 지방정부의 규제개선 수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기존 규제개선을 위한 매뉴얼의 부재 외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의 규제개선 수용률이 낮은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지역 간 규제환경 격차, 규제개선 과제 발굴체계, 지방규제 사전 심의·조정 체계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규제개선 수용률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제2절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

### □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 및 설립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증가함
  - 국정과제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목표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국정과제 11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는 지방정부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규제혁신 강화를 추진함(대한민국 정부, 2022)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23년 4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 전문 자문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전문 연구기관)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국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필요성이 대두됨
  - 2023년 12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업무를 전문적 및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7조(전문 연구기관)가 개정됨
  - 이에 따라,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방규제연구센터가 2023년 12월 설치됨(「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 □ 전문 연구기관 주요기능 및 목표

-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규제연구센터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규제개선 내용의 전문적 분석 및 이행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전문 연구기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규제개선 과제 중 중점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해결 가능성) 및 전문적 분석을 실시함
  - 둘째, 지방규제혁신 관련 제도 연구 및 수용과제의 이행관리를 실시함
  - 셋째, 지방규제혁신의 제고 역량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함
-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규제연구센터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규제의 지방규제개혁의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규제 역량강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best practice)의 공유 및 확산을 도모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 사무국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견지함
- 둘째,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체계적 방법론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규제개선 과제의 분석 전문성 확보 및 분석체계의 발전을 도모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해당 부처의 기존 규제를 개선·건의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전담하여 심층분석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경제적 효율성 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의 관점에서 판단 및 분석함
- 셋째,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책임성,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규제혁신 성과 도출에 기여함
  - 검토보고서의 일관성 유지, 품질관리, 평가를 통한 환류 등 분석방법론 강화 및 투명성을 제고함
- 넷째, 지방규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노하우 축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방규제개혁 시스템의 발전 및 제도개선을 도모함
  - 지방규제 DB 구축 및 수용과제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규제혁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2018),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 공정거래위원회(2022),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 국무조정실(202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2022), 규제개혁 백서.
- 규제개혁위원회(2017), 「2016 규제개혁백서」. 서울.
-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IV).
- 김건위·이병기(2019),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6.
- 김신·김경희·김관보·박구연(2022), 행정규제의 질적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김유환(2017), 「행정법과 규제정책」. 삼원사.
- 김정해·임준형·박형준(2007),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준(2018),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제24호, 국회입법조사처.
- 대한민국 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박균성(2009), 입법의 질 제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3(1): 485-502.
- 박명호(2014), 규제준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과 시사점. 「재정포럼」, 2014년 4월호, pp8-22.
-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 안문석(2001),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서울: 박영사.
- 양용현 외(2023),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23-25-01.
- 양용현·이현정(2023),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주요국 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윤석진·최환용·이세정(2011), 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정비지원 등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이민호(2017),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민호(2021), 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59- 01.
- 이민호(2018),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7(4): 195-224.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최인수·전대욱·정기용(2023), 지방규제혁신 필요성과 방향, 지방자치단체 규제담당 공무원 워크숍 발표자료.
- 한국개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국무조정실(2014), 「(시범사업용)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2014. 7.
- 한귀현(2016),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7(2): 219-242.
- 행정안전부(2020a), 자치법규 업무매뉴얼(2020년판),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20b),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22a), 자치법규 업무매뉴얼(2022년판),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22b), 2022 규제개혁 백서,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22c),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22d), 규제개선 건의과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규제혁신 전략 수립연구, 행정안전부.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12.29.), 불필요한 규제 사전에 막고, 기존규제 돌아본다.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신.
- 법제처 보도자료(2022.5.17.), 입법영향분석, 객관적 통계와 자료로 뒷받침한다.
- Baldwin, R., Cave, M, and Lodge, M. (2012).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Breyer, S. (1990). Regulation and De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irlines, Telecommunications and Antitrust. in Giandomenico Majone, ed. *Deregulation or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in Europe and United States*, London: Printer Publishers.
- Harrington, W., Heinzerling, L., & Morgenstern, R. D. (Eds.). (2010). *Reform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Routledge.
- Harrington, W., Morgenstern, R. D., & Nelson, P. (2000). On the accuracy of regulatory cost estimat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2): 297–322.
- Jacobs, Scott. (2003). *Good Practice in Regulatory Reform: Challenges for Korea*. (IMF, Republic Korea: 2002 Article IV Consultations, March 19, 2003).
- Kirkpatrick, C. H., & Parker, D. (Eds.). (2007).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owards better regul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 Majone, Giandomenico. (1980). *Deregulation or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in Europe and United States*, London: Printer Publishers.
- Mitnick, Barry M. (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ss, D, and Cisternino, J. (2009). *New perspectives on regulation. The Tobin Project*.
- OBPR. 2020, *Post-Implementation Review Guidance Note*.
- OECD. (1997).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ectoral Studies (Vol.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06). *Determinants of Quality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9).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Tool for Policy Coherence*, OECD

- Publishing, Paris.
- OECD. (2017). “한국 규제정책: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규제개혁 보고서,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9).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Surveys.
- OECD. (2020).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1).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 Thompson, F. & Jones, L. R. (1982). Regulatory Policy and Practices: Regulating Better and Regulating Les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U.K. BIS. (2015).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report 2015.
- U.S. EPA. (2011). Exposure Factors Handbook 2011 Edition.
- U.S. OMB. (2011). Memorandum for the Heads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 Vogel, Steven. K. (1996). Freer Markets, More Rules: Regulatory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부 록

## 부록 1.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구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표지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	•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
	지방규제 개선건의 지역	• 지방규제 개선건의 해당 지역
	담당부서 및 작성자	• 담당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규제 개요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 유형</li> <li>1.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li> <li>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li> <li>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li> <li>4.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li> <li>5.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li> </ul>
	규제조문	•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
	규제내용	•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
	위임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공표일 및 시행일	• 제정·개정 및 시행
	추진배경	• 규제개선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경위
	목적	• 기존 규제개선 목적 및 필요성
	개선방안	• 기존 규제개선 방안
	기대효과	•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 규제의 직접적 대상인 피규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 등
	신구조문 대비표	• 기존 규제와 개선되는 법령 조문의 대비표

구성	세부항목	주요내용
I.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추진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도입 시점과 규제개선 건의 현시점 간 정책환경 변화</li> <li>• 규제개선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경위</li> <li>• 기존 규제 입법취지의 한계점 및 개선 시급성</li> <li>• 기존 규제개선 목적 및 필요성</li> </ul>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규제개선 방안</li> <li>•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li> <li>• 규제개선의 기대효과(직·간접 효과)</li> </ul>
II. 규제개선 효과성	규제집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규제집행 현황</li> <li>•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인력 및 소요예산)</li> </ul>
	경제적 효과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비용-편익 분석 결과(또는 비용-효과분석) : 규제순응비용 변화, 규제집행·감시비용 중심</li> <li>• 규제개선 편익 또는 효과(정성적 또는 정량적)분석</li> </ul>
	부수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 효과</li> <li>•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환경개선, 주민생활, 취약계층, 생활인구, 인구감소, 지역공동체, 고령사회 등의 효과분석</li> </ul>
III. 규제개선 실효성	유사사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법 사례검토</li> </ul>
	이해관계자 의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의 효과성, 부작용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li> </ul>
	소관부처 의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 관련 소관부처 의견검토</li> </ul>
IV. 종합결론	요약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 배경 및 효과성 요약</li> <li>• 규제개선 방안 요약</li> </ul>
별첨	기타 의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 상세내역</li> <li>• 부수적 효과 상세내역</li> <li>•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표 등</li> </ul>

## 부록 2.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성	세부항목	체크리스트	비고
규제 개선 배경 및 방안	추진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도입 및 개선 현시점 간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가 정량적·정성적 자료에 의해 제시되었는가?</li> <li>• 규제개선의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li> <li>• 규제개선을 통한 법령의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li> </ul>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 방안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li> <li>•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li> </ul>	
규제 개선 효과성	규제집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제시되었는가?</li> </ul>	
	경제적 효과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비용-편익(비용-효과) 분석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는가?</li> <li>• 비용-편익(비용-효과) 분석 결과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보다 편익(효과)이 더 큰가?</li> </ul>	
	부수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li> </ul>	

구성	세부항목	체크리스트	비고
규제 개선 실효성	유사사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법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와 비교·검토하였는가?</li> <li>•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li> </ul>	
	이해관계자 의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가?</li> <li>•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제시하였는가?</li> </ul>	
	소관부처 의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부처의 의견검토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작성하였는가?</li> </ul>	
종합 결론	요약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내용이 요약되었는가?</li> <li>• 내용 요약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의 적절성이 제시되었는가?</li> </ul>	
별첨	기타 의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건의 분석서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 자료를 제시하였는가?</li> </ul>	

## 부록 3.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안) 양식 및 작성방법

〈표지〉

000을 위한 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휴먼명조 15)

해당 지역		
담당부서		
작성자	이름	
	직위(직급)	
	연락처	

2000. 00. 00.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먼명조, 11)</li> <li>※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li> </ul>
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5개 중 1개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li> <li>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li> <li>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li> <li>4.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li> <li>5.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li> </ol> </li> </ul>
3. 규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고시 등의 명칭과 조항</li> </ul>
4.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li> </ul>
5. 위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규제사무의 구체적인 내용 요약</li> </ul>
6. 공표일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제정·개정 및 시행일</li> </ul>
7.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규제개선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경위</li> </ul>
8.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기존 규제개선 목적 및 필요성</li> </ul>
9.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기존 규제개선 방안</li> </ul>
1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li> </ul>
11.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규제의 직접적 대상인 피규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 등</li> </ul>
12. 신구조문 대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기존 법령과 개선되는 법령 조문 대비표</li> </ul>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I.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휴먼명조, 15)

### 추진배경 및 필요성(휴먼명조, 14)

#### (휴먼명조, 13)

- (휴먼명조, 12)

#### 

-

#### 

- ※ 규제 도입 시점과 규제개선 건의 현시점 간 정책환경 변화(관련자료 첨부)
- ※ 규제개선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경위
- ※ 기존 규제 입법취지의 한계점 및 개선 시급성
- ※ 기존 규제개선 목적 및 필요성(휴먼명조, 9)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 ※ 기존 규제개선 방안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 ※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 규제개선의 기대효과(직·간접 효과, 가급적 정량적 효과 포함 기재)

## II. 규제개선 효과성

### 규제집행 현황

#### 

-

※ 지방자치단체 규제집행 현황

※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인력 및 소요예산)

### 경제적 효과성 분석

#### 

※

※ 규제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 분석 결과: 1) 규제 이해당사자 규명(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등 규모과약), 2)연간 규제집행·감시 및 규제준수비용의 변화액, 3) 규제개선의 연간 편익(또는 효과) 등 요약(경제적 효과성 분석 세부내역 별첨)

### 부수적 효과

####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부수적 효과 세부내역 별첨)

### Ⅲ. 규제개선 실효성

#### 유사사례 검토

○

-

- ※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존재 시 해당 사례의 기준 등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

-

- ※ 규제개선의 타당성, 효과성, 개선방안에 대한 적절성 등 객관적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요약 기재(세부내역 별첨)
- ※ 이해관계자 정보(소속 기관 및 직급 작성)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이해관계자	(중고직, 9)			

#### 소관부처 의견 검토

○

-

- ※ 소관 부처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요약하여 기재(기존 부처협의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규 과제의 경우는 유선/대면 협의 등 진행)
- ※ 담당자 정보(소속 부처 및 부서명 작성)
- ※ 담당자 정보 : 000부 000과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자				

## IV. 종합결론

### 요약 및 개선방안

#### ○ (요약)

-

#### ○ (개선방안)

-

※ 규제개선 효과성 및 실효성을 반영한 규제개선 적절성 요약, 규제 유효성 및 개선방안 기재

**별첨 1**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분석 기준년도:**

※ 본 분석은 규제개선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단년도의 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파악하는 약식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하기 분석에 있어서 자료구득이 가능한 특정년도(가급적 최근년도)를 기재

**규제이해당사자 규명**

	규제시행자	피규제자 (규제준수자)	규제수혜자
이해 당사자			
규모			

※ 규제수혜자가 지역 주민이나 지역내 단체·기업 등의 범위를 넘어서 인근 지역을 포함하거나, 전국적인 경우 적절한 영향권 설정(예: 인근 몇 개의 자치단체 주민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필요시 전문가 관 및 시도연구원 등의 전문가 도움이 바람직함)

**(규제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비용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교
기존 규제의 준수를 위한 비용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증가		
기존 규제의 개선시 감소액 + 개선시 증가액			- A + B 원

※ 규제시행자의 집행 및 감시를 위한 재정지출 (규제시행자가 중앙부처이며, 지도·단속 등 별도의 지출이 없는 경우 작성 필요 없음)

### □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편의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1.		
2.		

※ 피규제자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 실제 예산지출액 기입, 민간기업·단체 및 주민의 경우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 □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의의 연간 변동분

편의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1.		
2.		

※ 규제수혜자의 규모 외 1인당 편의액수 및 관련 비율 등의 정보는 전문기관이나 시·도연구원 등의 도움을 통해 기입하거나, 또는 도움이 불가능한 경우 공란으로 제출(추후 전문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완 예정)

※ 관련 산업육성 및 수익창출(공공부문 제외, 민간부문만 해당)의 편의 등은 관련 업체의 부가가치, 즉 (관련 산업 매출액 × 부가가치율) 또는 (업체수 × 업체당 평균 매출증가액 × 부가가치율)로 제시하며, 매출액의 경우 관련된 지역기업체의 실적자료 기반, 부가가치율의 경우 통계청 승인통계인 “광업 제조업조사(광공업통계)” 분석년도 또는 최근년도의 부가가치율 활용(국가통계포털 [www.kosis.kr](http://www.kosis.kr) 또는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 [www.istans.or.kr](http://www.istans.or.kr) 조회 가능)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 (정성적 고려요인)

기타 금액단위로 환산 불가능한 비용·편익(정성적) 및 규제개선의 고려사항

•

결론: 규제개선의 비용·편익 비교

## 별첨 2

## 부수적 효과 상세내역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

※ 효과 여부에 “예” 라고 체크시 효과 내용 간략 기술

구분	부수적 효과 항목	효과 여부	
1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2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3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4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5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6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7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경제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8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9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10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11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별 첨 3

전문가 의견조사 상세내역

전문가 검토 개요

○

-

적정성 검토

○

-

개정(안) 집행 및 이행 가능성

○

-

기타 사항

○

-

## 별첨 4

##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상세내역

이해관계자 검토 개요

○

-

적정성 검토

○

-

개정(안) 이행 가능성

○

-

기타 사항

○

## <참고: 세부항목 작성 방법>

### 1.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항목	작성 방법
추진 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규제 개선건의는 규제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를 검토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도입 이전의 정책환경을 파악하여 규제 도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li> </ul> </li> <li>○ 규제 도입 시점의 정책환경을 파악한 이후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현시점의 정책환경 파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도입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가 포함된 정책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li> <li>- 규제 도입 이후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변화 행태, 규제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 등이 있다면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 등을 작성해야 함</li> <li>- 규제를 도입한 배경이 되는 정책환경이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현시점에도 중요성이 유지되는지 검토가 필요함</li> </ul> </li> <li>○ 정책환경 변화, 추진배경 및 문제점을 토대로 규제개선 기존 규제 입법취지의 한계점을 제시하여 규제개선의 시급성을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선 건의 배경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개선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함</li> <li>-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인 통계자료나 정책 보고서,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규제개선 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및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li> </ul> </li> </ul>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에서는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항목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규제의 개선방안과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를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방안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 내용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기대효과가 제시되어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기대치 제시가 가능하면 정량적인 효과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정량적인 효과를 작성할 수 없다면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함</li> <li>- 단, 정성적으로 작성하되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li> </ul>
--	--

## 2. 규제개선 효과성

항목	작성 방법
규제 집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 현황은 규제집행을 위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현황, 즉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 비용을 제시하는 이유는 규제개선이 피규제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더라도 규제비용이 과도할 경우 규제개선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파악함</li> </ul> </li> <li>○ 규제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현황과 함께 규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문제점이 있다면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임기관이 될 수 있으며, 규제 집행 주체에 따라 예산 및 인력 등 규제집행의 효율성이 다름</li> <li>- 행정적 및 재정적 규제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규제집행 주체의 예산, 인력 현황 등을 제시해야 함</li> </ul> </li> </ul>
경제적 효과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규제의 비용-편익(또는 비용-효과분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부담자 및 수혜자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와 관련된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감안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데에 반해, 지방규제의 경우 상당수 해당 지역내의 이해당사자로 제한되기도 함</li> <li>• 반면 비용과 편익의 이해당사자가 전국적인 경우도 존재하여,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어, 해당 규</li> </ul> </li> </ul> </li> </ul>

	<p>제개선 건의사항별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범위에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과 편익 추정의 모호성과 추정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건의 항목들이, (위임규제의 경우) 규제 자체의 큰 개선 보다는 시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개선 건의가 많아 해당 개선이 비용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치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계량화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용이나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계량화된 추정결과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음</li> <li>• 또한, 각 항목의 추정에 있어서 규제가 도입될 당시의 사전 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작성하기에는 역량·정보의 한계가 존재하며 부담스러울 수 있음</li> <li>• 따라서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화폐 가치가 아닌 다른 계량화된 효과(예: 주민수혜자의 증가분 등)의 제시하도록 하고, 즉 비용-편익분석이 아닌 비용-효과 분석을 건의주체에게 작성토록 하고, 추후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해당 효과를 가급적 화폐가치로 환산한 비용-편익 분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함</li> </ul> </li> <li>- 사후영향분석으로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를 도입할 당시의 분석은,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피규제자의 순응비용 및 규제자의 집행·감시비용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중의 편익을 비교하는 비교적 정형화된 분석이 가능함</li> <li>• 하지만, 규제시행 이후의 개선에 관한 분석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대중의 편익이 규제개선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 규제개선을 통해 비교적 측정이 쉬운 규제순응·집행비용 등의 절감분을 규제개선의 편익으로 볼 필요가 있음</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규제개선으로 인한 대중의 편익이 크게 감소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규제비용의 절감분이 큰 경우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존재하며, 대중 편익의 감소분이 크다고 우려될 경우에는 규제비용의 절감분이 크더라도 개선의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li> </ul> <p>○ 지방규제 개선의 비용 및 편익(또는 효과) 항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에 의한 비용은,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직접적인 행정비용을 우선 생각할 수 있으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이전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li> <li>- 직접비용으로서의 규제순응 비용은, 피규제자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규제당국자의 규제집행과 감시에 관한 비용을 포함함</li> <li>- 그 외 피규제자의 금융비용, 기회비용, 규제에 의한 시장왜곡 효과 등은 간접비용에 해당하며, 추정이 어렵고 특히 지방규제의 경우 더욱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음</li> <li>-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규제 기준의 설정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직접편익 외에, 이차적으로 파생되거나 유발되는 편익으로 피규제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혜택인 간접편익이 존재하나, 규제관련 현행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직접편익만을 고려함</li> <li>• 예컨대, 반품·환불 절차 확대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를 위한 규제의 도입시, 직접편익으로는 반품·환불 기준이 명확히 확립됨으로써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소비자 소원 수리 및 소송 비용을 들 수 있으며, 간접편익으로서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증가 효과 등을 들 수 있음</li> <li>•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이 저감될 경우, 직접편익으로는 건강증진 편익을, 간접편익으로는 오염방지산업의 부가가치 효과 등을 들 수 있음</li> <li>- 그러나 지방규제의 사후영향분석에서는 이러한 편익의 추정이</li> </ul>
--	--

	<p>상기와 같은 사유로 적용이 어렵고, 사후적인 규제개선시 이러한 편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다는 전제 하에 규제순응비용의 절감분을 중심으로 비용과 편익을 판단함</p> <p>○ 지방규제 개선의 비용 및 편익(또는 효과)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규제 이해당사자를 규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 부담자), 피규제자(규제순응비용 부담자), 규제수혜자 등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적 범위: 해당 기초자치단체, 인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생활권역, 광역, 초광역 또는 경제권역, 국가 등</li> <li>• 각 이해당사자별 규모: 영향권내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의 구체적인 숫자(근거자료 포함)</li> </ul> </li> <li>- 현행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순응·집행·감시비용, 규제개선시 해당 비용의 절감분 및 규제개선의 기회비용 등을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집행자의 담당사무에 투입되는 자치단체 재정소요 및 규제개선시 부담액의 절감분: 재료비 등 직접비 및 인건비 등 간접비, 관리·감독 등 감시비용 등</li> <li>•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 부담액 및 규제개선시 부담액의 절감분:  피규제자 1인당 규제순응비용(추정치 및 근거자료 제시) X 피규제자의 규모  → (규제개선시) 피규제자 1인당 규제순응비용 절감분 X 피규제자의 규모</li> <li>• 규제수혜자의 규제로 인한 혜택 및 규제개선으로 인한 혜택의 변화 또는 축소여부: 규제수혜자 1인당 규제혜택 변동분(화폐단위) X 규제수혜자의 규모</li> </ul> </li> <li>- 화폐가치 추정이 어려운 경우 비용-효과 분석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이해당사자의 범위 및 규모 파악과 관련해서는 관련 인구통계 등의 최근년도 자료를 활용한 추정이 가능하나, 화폐가치(금액단위)인 규제순응비용 및 규제혜택의 변동분에 대</li> </ul> </li> </ul>
--	--

	<p>해서는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순응비용의 경우 피규제자에 대한 인터뷰나 관련 이해 당사자 집단의 협조를 구해 규제순응비용을 가급적 파악이 필요하나(건의주체에게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의 필요), 규제혜택의 변동분은 많은 경우 추정을 기대하기 어려움</li> <li>• 따라서, 화폐가치의 추정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화폐가치로 측정할 필요 없이 (비용-효과 분석의 논리에 따라) 정량화된 다른 수치(예: 방문객수의 변화, 안전사고율의 변화, 탄소배출량의 변화 등)의 변화를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추후 전문기관에서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경우 이를 환산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li> <li>• 전문기관에서도 화폐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시된 계량화된 다른 수치를 기반으로 최종 개선 의사결정을 수행함</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 및 혜택의 변화에 있어서 화폐가치 또는 비화폐가치의 계량화된 변화를 제시하기 힘든 경우, 정성적인 기술로 이를 대체하고, 추후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li> </ul> <p>○ 기타 계량화할 수 없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에 추가로 부수적인 효과로서의 정성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수적 효과로서 특히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대응과 관련된 효과의 기술을 통해, 지방규제 개선이 단순한 규제로 인한 순편익의 증감 외에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충분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li> <li>- 그 외에도,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에서 계량화되지 못했으나 무시할 수 없는 긍·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기술을 통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li> </ul>
--	---

부수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지방규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환경개선, 주민생활, 취약계층, 생활인구, 인구감소, 지역공동체, 고령사회 등 지역발전 및 지역의 사회적 환경 개선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li> </ul> </li> <li>○ 다만, 부수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성 분석과 달리 규제개선의 효과 여부도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부수적 효과는 지방규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부수적 효과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부수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간략하게 부수적 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작성함</li> </ul> </li> <li>○ 지방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규제 개선의 부수적 효과는 총 11가지 항목에 대해 효과 여부를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li> <li>- 2.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li> <li>- 3.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li> <li>- 4.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5.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6.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li> <li>- 7.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9.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10.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li> <li>- 11.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에 도움이 되는가?</li> </ul>
--	--

### 3. 규제개선 실효성

항목	작성 방법
유사 사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사례 검토는 개선하고자 하는 규제와 유사한 타법 사례를 조사하여 규제의 수준을 비교 및 분석하여 규제개선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법 사례에 의한 규제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근거자료로 제시함</li> </ul> </li> <li>○ 타법사례의 비교 및 분석 외 해외 선진국의 해당 규제개선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규제가 국제적 기준을 부합하는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li> <li>-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 사례가 있다면 해당 국가의 기준 및 사례를 제시함</li> </ul> </li> </ul>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소관 부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는 규제개선을 위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의 반영여부 등 조치결과를 작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는 규제개선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집단을 파악하여 제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해야 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조함</li> </ul> </li> <li>○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는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간담회, 공청회, 초점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li> </ul>

검토	<p>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일부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함</li> <li>-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과정에서 곡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배경 및 필요성, 규제개선 효과성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 소관부처 의견 검토는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규제의 개선에 따른 영향,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제개선 의견 등을 작성함</p>
----	--

#### 4. 종합결론

항목	작성 방법
요약 및 개선 방안	<p>○ 요약 및 개선방안에서는 지방규제 분석서의 항목인 규제개선 배경 및 방안, 규제개선 효과성 및 실효성 항목의 내용 요약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작성함</p>
별첨	<p>○ 별첨에서는 규제개선 효과성 및 규제개선 실효성 항목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 분석) 및 부수적 효과에 대한 상세내역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의 상세내역을 제시함</p> <p>○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에 작성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기준년도, 이해당사자 규명, (규제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익의 연간 변동분 및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정성적 고려요인)을 토대로 규제개선의 비용·편익을 비교하여 결론으로 제시함</li> </ul> <p>○ 부수적 효과는 지방규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p>

	인구감소대응 효과를 반영하여 11가지 항목에 대해 효과 여부를 판단하고 부수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내용을 기술함
--	--

## 5. 참고사이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의안정보시스템(<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https://likms.assembly.go.kr/bill</a>)</li> <li>○ 국회 법률정보시스템(<a href="https://likms.assembly.go.kr/law">https://likms.assembly.go.kr/law</a>)</li> <li>○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a href="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a>)</li> <li>○ 국가통계포털(<a href="https://kosis.kr/">https://kosis.kr/</a>)</li> <li>○ 산업연구원 산업통계 분석시스템(<a href="https://www.istans.or.kr/">https://www.istans.or.kr/</a>)</li> </ul> |
|---|

## 부록 4.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1

공원 내 동력장치 차도 외 출입 허가를 위한  
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해당 지역		광주광역시
담당부서(과)		
작성자	이름	
	직위(직급)	
	연락처	

2000. 00. 00.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내 동력장치 차도 외 출입허가</li> </ul>
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li> <li>※ 5개 중 1개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li> <li>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li> <li>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li> <li>4.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li> <li>5.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li> </ol> </li> </ul>
3. 규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li> </ul>
4.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내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중량은 30킬로그램/최고속도 시속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만 허용</li> </ul>
5. 위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li> </ul>
6. 공표일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 10. 6. (제정), 2023. 3. 7. (타법개정)</li> </ul>
7.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로봇법 개정 및 보도통행 기준 마련</li> <li>• 실증특례를 통한 도시공원 내 시범운영</li> </ul>
8.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이용 효율증진 및 첨단산업인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li> </ul>
9.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출입하는 행위 개선</li> </ul>
1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이용 효율증진 및 첨단산업인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li> <li>※ 규제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li> </ul>
11.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관리자, 규제개선시 기존 규제수혜자인 관람객 외, 무인특장차 산업체</li> </ul>
12.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p> <p>1. ~ 4. &lt;생략&gt;</p> <p>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p> <p>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p> <p>&lt;신설&gt;</p>	<p>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p> <p>1. ~ 4. &lt;생략&gt;</p> <p>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p> <p>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p> <p>다. 공원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동력장치로서 별표 2에 준하는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충분한            안전상의 이유로 인증획득 대상이</p>

<p>6. ~ 8. &lt;생략&gt;</p> <p>&lt;신설&gt;</p>	<p>되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 구간의 출입 및 주행하는 행위</p> <p>6. ~ 8. &lt;생략&gt;</p> <p>[별표 1] &lt;생략&gt;</p> <p>[별표 2]</p> <p>(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준한 차량의 자기 인증</p> <p>(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 운행등에 관한 규정” 에 준하여 임시운행을 허가한 제품</p> <p>(3) “농업기계 검정기준” 에 준한 농기계 검정을 득한 제품</p> <p>(4) (로봇부분)</p>
---	---

## I.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능형로봇법 개정 및 보도통행 기준 마련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조항 신설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도통행 기준이 마련됨
- 공공서비스 특구사업 활성화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장치에 한하여 차도 외 장소에 출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사업 활성화
- 공원이용 효용증진 및 신산업 도입
  - 첨단산업인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제도 및 보도통행 허용 법제화
  -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차도 외 지역에 실외이동로봇 통행을 허용
  - 공원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허용기준 마련
- 현재, 법제화 과정에서 공원 내 통행 가능한 실외이동로봇의 기준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출입하는 행위 개선

## ○ (기대효과)

- 도시공원 이용 효율증진 및 첨단산업인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

## II. 규제개선 효과성

## □ 규제집행 현황

- (지자체 자료 예상)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 인력 및 소요 예산 확보(구체적 자료 제시)

## □ 경제적 효과성 분석

- 피규제자는 공원관리자, 규제개선시 기존 규제수혜자인 관람객 외, 무인특장차 산업체가 새로운 수혜자임
- 기존 규제 개선에 따른 공원관리자의 규제준수비용 변화는 크지 않음 (지자체 협조시 변화액 추정 가능)
  - 규제순응비용 000원/년 증감
- 기존 규제로 인한 관람객 안전성과 소음피해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않고, 신산업 육성에 기여
  - 규제개선시 신산업 부가가치 편익 138.7억원/년 증가
  - (별첨 1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참조)

## □ 부수적 효과

-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 등

### Ⅲ. 규제개선 실효성

#### □ 유사사례 검토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부처: 국토부
- 승인일: 2021-12-30/2023-03-30
- 규제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원 내에는 중량 30kg 미만, 속도 시속 25km 미만인 동력장치만 운행 가능, 해당 로봇은 120kg인 동력장치에 해당하여 공원 내 운행 불가
- 부가조건
  - (국토부 녹색도시과)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되,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필요

####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 무인 저속 특장차가 공원에 출입하기 적합함
  - 2021년~2022년 실증을 직접 참관하여 지켜본 결과,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안전하게 정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공

원 내 노면이나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아 출입에 적절하다고 생각됨

- 무인 저속 특장차는 공원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 소음, 시설물 파손 등에 영향 없음
  - 2021년~2022년 실증을 직접 참관하여 지켜본 결과, 공원 이용객 안전, 소음, 시설물 파손에 대한 시나리오로 다양하게 안전성을 입증하여 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것에 지장이 없음. 다만, 입장객이 크게 증가하는 봄, 가을 행락철(어린이날 등) 극성수기에 대한 운영 검토 필요성이 있음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이해관계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한0수	-	

□ 소관부처 의견 검토

- 동력장치를 이용한 공원 내 차도의 구간 통행 및 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 이는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인 공원이용객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일정 공간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공원이용객 안전의 담보가 우선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도 차도 외에 원칙적으로 통행이 불가함

- 이에 따른 안전기준도 차도주행을 전제로 수립되어있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등 영업행위도 실증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 공원이용객 안전과 자율주행기술발전과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 내 차도 외 통행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구 분	소속(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국장	도시정책관	길0우	044-000-0000	0000@korea.kr
과 장	녹색도시과장	박0호	044-000-0000	0000@korea.kr
담 당 자	사무관	이0주	044-000-0000	0000@korea.kr

#### IV. 종합결론

##### □ 요약 및 개선방안

###### ○ (요약)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장치에 한하여 차도 외 장소에 출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시 공원 이용객 안전사고 비용 및 소음피해액은 0원이며, 특구 내 관련 기업체의 부가 가치 편익은 연간 138.7억 원으로 예상됨

###### ○ (개선방안)

- 따라서, 공원 내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중량은 30킬로그램/최고속도 시속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만 허용하는 규제개선 필요함

**별첨 1**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분석 기준년도: 2021년

규제이해당사자 규명

	규제시행자	피규제자 (규제준수자)	규제수혜자
이해 당사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 광주광역시 2. 타 공원운영 자치단체	1. 공원이용객 2. 무인특장차 관련 업체 (모빌리티 신산업)
규모	-	-	1. 100만명 추정 2. 특구내 15개 업체

(규제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비용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기존 규제의 준수를 위한 비용		(인건비) 000원/년 + (재료비) 000원/년 + (기타) 000원/년 = (합계) A원	동력장치 사용불가에 따라 수작업 진행, ' 21년 사업예산의 결산액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상기 규제준수비용 전액 A원/년	
	증가	(무인특장차 구입비) 000원/년 + (운영·유지비) 000원/년 = (합계) B원/년	구입비 연간비용 = 구입단가/내구년수, 실제 도입 및 운영·유지비 구입 필요
기존 규제의 개선시 감소액 + 개선시 증가액			- A + B 원

※ [참고] ' 21년 및 ' 22년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결산액

(2021회계년도 및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광주광역시)

- 녹지공간및식물원관리: 173,605,250원 → 181,538,880원
- 시설물설치및구입: 1,728,661,510원 → 2,362,000,000원
- 유지관리: 510,646,190원 → 691,978,000

### □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편의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규제개선시 공원이용객 안전사고 비용 및 소음 피해액	공원이용객 100만명/년 × (안전사고율의 증가분 0% + 소음피해율의 증가분 0%) = 0	개선건의서의 안정성 검토결과

### □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의의 연간 변동분

편의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특구내 관련 기업체의 부가가치 편의	특구 실증으로 인한 관련 무인특장차 업체 매출액 증가분 368억원/년 × 부가가치율 36.0% = 138.7억원/년	개선건의서의 기대효과, 산업연구원(ISTANS)의 '21년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 적용

## □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 (정성적 고려요인)

기타 금액단위로 환산 불가능한 비용·편익(정성적) 및 규제개선의 고려사항

- 관람객이 많을 경우 운행시간 등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우치공원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관람객이 많은 계절·요인·시간대 등의 조정을 통해 관람객이 없는 시간대에 집중 운영이 바람직 (무인특장차의 경우 인력투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야간이나 휴무일 등 운행 가능)
- 특구내 무인특장차의 실증 특례에 따른 관련 산업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수출확대,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효과, 인구유입 효과 등

## □ 결론: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보다 편익이 큼

## 별첨 2

## 부수적 효과 상세내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

※ 효과 여부에 “예” 라고 체크시 효과 내용 간략 기술

구분	부수적 효과 항목	효과 여부	
		예	아니오
1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무인특장차 관련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2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무인특장차 특구내 기업체로부터 조달 및 벤처투자 증가			
3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특구내 모빌리티 기업의 주민 고용 확대 (특구내 총 15개 기업 고용 701명, 신규일자리 292개)			

6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무인특장차 도입시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함			
7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			
8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9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공원 관람객 증가 예상			
10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11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무인특장차 실증을 통해 향후 가로청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시 고령노동자 보조 가능			

## 별첨 3

## 전문가 의견조사 상세내역

## □ 전문가 검토 개요

- 2021년도 법제도 협의체 외부전문가 대상의 공원녹지법 개정을 위한 안전성입증 결과 및 기술개발 적정성 검토

※ 응답자 : 000 교수, 000연구원 000 센터장, 000연구원 000 연구위원

## □ 공원 출입 적정성

- 전문가 자문결과 현재 우치공원에 출입하여 실증 중인 무인 저속 특장차는 공원 출입에 적합하게 마련되었으며 기존 차량대비 안전
  - 공원 내 청소 목적의 운영으로 적합하나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술적정성 전문가 평가 결과〉

구분	점수
공원청소를 위한 무인저속 특장차가 공원 출입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가?	4.5
공원청소를 위한 무인저속 특장차가 기존의 공원 내 운행되는 차량과 비교하였을 때 안전한 수준인가?	4.5
공원청소를 위한 무인저속 특장차의 규제개선 방안 근거와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인가?	5

□ 기술 수용성

○ 소관부처의 의견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음

- 제한된 조건하의 출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으로 수용성에 문제가 없어보이나 공원 이용객의 수용성 고려 필요

〈기술 수용성 전문가 평가 결과〉

구분	점수
공원청소를 위한 무인저속 특장차의 해당 법령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이 포함 되어져 있는가?	4.5
규제개선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5

□ 개정(안) 집행 및 이행 가능성

○ 제시된 무인 저속 특장차가 개선된 규제를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제한된 조건하의 출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으로 무인 저속 특장차의 집행 및 이행의 문제는 없으나 실증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일반 수준 고려 필요

〈집행 및 이행 가능성 전문가 평가 결과〉

구분	점수
공원청소를 위한 무인저속 특장차로 개선된 규제 이행이 가능한가?	4.5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프라/시설/장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가?	4.5

## □ 규제부담

- 명확한 근거의 제시와 구체적인 개정(안)의 제시로 행정부담을 특별히 증가시키지 않음
  -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에 대해 통행을 허가하고 있으나 중량 30kg 미만이라는 제약조건을 두고 있어 현재는 운행이 불가하여 나목 또는 다목에서 무게 제한없이 관리청이 정한 구간의 출입행위가 가능하도록 수정 필요

### <규제부담 전문가 평가 결과>

구분	점수
행정 절차 간소화와 피규제자의 행정부담 감소를 고려하였는가?	4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는가?	4.5

## □ 안전성

- 충분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안전성 결과를 기반으로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제시됨

### <안전성 결과 전문가 평가 결과>

구분	점수
안전성 데이터 수집 내용이 합리적인가?	5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하였을 때, 공원청소를 위한 무인저속 특장차는 공원내에서 운영하기에 안전한가?	5

별첨 4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상세내역

성명	000	소속	우치공원관리사무소
----	-----	----	-----------

○ 우치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을 견학 및 경험해 보신결과를 기반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무인 저속 특장차가 공원에 출입하기 적합한지와 그에 대한 이유를 작성해주시시오.

출입 적합성	①적합✓    ② 부적합
2021년~2022년 실증을 직접 참관하여 지켜본 결과,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여 안전하게 정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u>공원 내 노면이나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아</u> 출입에 적절하다고 생각됨	

2. 무인 저속 특장차가 공원에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 소음, 시설물 파손 등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2022년 실증을 직접 참관하여 지켜본 결과, 공원 이용자 안전, 소음, 시설물 파손에 대한 시나리오로 다양하게 안전성을 입증하여 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것에 지장이 없음. 다만, 입장객이 크게 증가하는 봄, 가을 행락철(어린이날 등) 극성수기에 대한 운영 검토 필요성이 있음.
--

3. 30kg 이상의 동력장치가 공원 내 도로 이외의 공간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공원의 사육관리 및 환경미화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저속 전동운반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특수 목적의 차량에 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무인 저속 특장차(무인 노면청소차, 폐기물 수거차량)가 공원관리에 정식으로 도입된다면 어떠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도입 시 공원 운영관리가 더욱 효율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식 도입시 특장차의 보급뿐만 아니라, 보수유지가 적시에 지원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됨

5. 무인 저속 특장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청소능력 등)이 있으시다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실증을 참관해본 결과, 넓은 공원지역의 낙엽을 수집, 처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함

**부록 5.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2**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울산)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완화(대전)를  
 위한 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해당 지역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도시국 산단정책과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
작성자	이름	전0철	이0향
	직위(직급)	주무관	행정7급
	연락처	052-000-0000	042-000-0000

2000. 00. 00.

##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완화</li> </ul>
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li> <li>※ 5개 중 1개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li> <li>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li> <li>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li> <li>4.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li> <li>5.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li> </ol> </li> </ul>
3. 규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li> </ul>
4.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있음 ①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②지사 또는 지역본부 별도채용, ③지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시험실시분야별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상이면 의무채용비율 준수</li> </ul>
5. 위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위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li> </ul>
6. 공표일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2.12.(개정)</li> </ul>
7.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li> </ul>
8.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청년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채용 예외규정의 축소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필요</li> </ul>
9.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li> </ul>
1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규정 축소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제고</li> <li>• 지역 인구 및 경제 측면 선순환 증가</li> </ul>
11.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관내 공공기관(16개 기관)</li> <li>• 지역 구직자</li> </ul>
12.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 ○ 울산

현행	개정안
<p>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p> <p>① ~ ③ (생략)</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p>	<p>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p>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p>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p> <p>4. 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3. ~ 4.<삭제>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⑤ ~⑦ (생략)	⑤ ~⑦ (현행과 같음)

## ○ 대전

현행	개정안
<p>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 ③ (생략)</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p> <p>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p>	<p>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생략)</p> <p>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p>

## I.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해당 지역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함

\* '18년 18%, 매년 3%씩 증가, '22년부터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 그러나, 시험실시분야별 모집인원 5명 이하, 석사 이상 연구직, 지사 채용 등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음

- '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지역에서 체감하는 채용률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인사발령 애로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의무채용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줄이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청년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채용 예외규정의 축소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필요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울산)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축소
  - ①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②지사 또는 지역본부 별도 채용, ③지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시험실시분야별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상이면 의무채용비율 준수
  - 법령개정 : 「혁신도시법」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 삭제
- (개선방안: 대전) 제30조의2 제4항 제1호 예외규정 개정
  -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 → 3명 이하로 완화
- (기대효과)
  - 예외규정 축소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제고
  - 지역인재 채용 제고를 통한 지역인재유출 방지
  - 지역 인구 및 경제 측면 선순환 증가
  - 연 채용모집인원이 적어도 4명 이상인 경우, 1명의 지역청년이라도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민의 제도효과 실질적 체감률 상승

## II. 규제개선 효과성

### □ 규제집행 현황

-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있어서, 예외조항을 두어 지역 노동수급의 특성 감안 및 인사발령 등 경영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즉,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둠:
  1. 분야별 채용모집인원이 연 5명 이하
  2.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3. 지사·지역본부 별도채용 또는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 예외조항 적용을 위해 쪼개기 채용 등이 빈번하며,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예외규정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린다는 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 경제적 효과성 분석

- 피규제자는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규제개선시 채용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구직자가 규제수혜자임
- 예외조항 축소라는 규제개선 시, 규제 준수비용의 변화는 공공기관의 인재채용의 지연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생산성 또는 부가가치 하락으로 볼 수 있음
  - 준수비용 약 196억원/년 증가, 지역인재 채용 526명 증가
- 그러나 동시에 지역 구직자들의 채용확대에 의한 지역 내 소득증대 효과(직접효과) 및 소비진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간접효과) 등을 감안해야 함

- 상기 196억원의 비용증가(생산성 하락)분은 국민경제 전체의 추가적인 편익을 창출하지는 않으나, 지역에서는 지역내 소득의 증가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볼 수 있음

□ 부수적 효과

- 상기 균형발전 효과 외 지역 내 인적역량 강화 및 일자리 공급 확대 등

### Ⅲ. 규제개선 실효성

□ 유사사례 검토

(세종)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

- (의안번호) 3308
- (제안이유)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합격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 이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요구
- (심사결과) 원안가결
- (결의안에 대한 검토)

- 본 결의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규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 또는 축소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 체계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 촉구 내용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경우 국가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대한 혁신도시 이전 지역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으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 신입생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로 지역대학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역 거점국립대학에서도 ' 22.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인재 의무제도 확대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결의안 발의는 시의적절함
- 2021년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면, 우리 시의 경우 이전 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이 21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나,
- 신규 채용인원 대비 실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인원 비율은 2.4%로 낮은 수준\*으로, 의무채용 예외조항의 삭제 등 조치 시 다른 지역 대비 지역 발전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됨

※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을 채용하거나, 분야별 모집 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의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위치한 세종시의 채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연구, ' 22. 2.)

##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 채용모집인원 5명 이상이면 의무채용비율 준수하여 예외 규정을 축소하자는 개선방안은 4명 이하로 분산하여 채용할 경우 유명무실할 수 있음
- 지역 4년제 대학이 2곳 밖에 없어,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등 지역인재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전 공공기관의 해당 인력수급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지역 청년인재 수급현황, 경남과 맺은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예외규정 축소가 지역인재 채용률 향상에 도움이 될지 엄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됨

※ 전문가 : 울산연구원 공공투자센터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 당 자	연구위원	박0기	052-000-0000	

## □ 소관부처 의견 검토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채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음

구 분	소속(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국장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	김0환	044-000-0000	0000@korea.kr
과 장	혁신도시정책 총괄과장	한0희	044-000-0000	0000@korea.kr
담 당 자	사무관	김0환	044-000-0000	0000@korea.kr

## IV. 종합결론

### □ 요약 및 개선방안

-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외조항을 개선하는 경우, 규제준수비용(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분)이 최대 196억원/년으로 추정됨
- 그러나 해당 규제순응비용의 증가분은 지역사회의 소득증가분(지역외 유출 회피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예외규정에 대한 완화는 긍정적이며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음

## 별첨 1

##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 분석 기준년도: 2021년 (대전광역시 사례)

□ 규제이해당사자 규명

	규제시행자	피규제자 (규제준수자)	규제수혜자
이해 당사자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대외협력과)	혁신도시 관내 공공기관	지역 구직자 <sup>1)</sup>
규모	-	16개 기관	' 21년 신규채용 2,657명 × 법정 의무채용 비율 30% <sup>2)</sup> ≅ 797명 (기 채용자 271명 제외시 526명 추가 채용가능) <sup>3)</sup>

1) 지역구직자의 규모는 지역 4년제 대학 졸업자수 또는 공공기관 채용공모 응시자수로 기입해야 하나, 본 예시에서는 자료부족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기입함

2) 시행령 별표1의 의무채용 비율이 ' 21년 27% 및 ' 22년 이후 30%로 제시되어 있음. 분석기준년도가 ' 21년이나, 연평균 값의 산출 및 규제완화 시점을 감안할 때 ' 22년 이후의 수치를 적용함

3) 실제 ' 21년 신규채용 인원 2,657명 중 지역내 채용자는 271명이므로, 예외조항 축소시 혜택을 받는 지역 구직자는 최대 526명 (= 총 채용규모 2,657명 × 30% - 기 지역내 채용자 271명)으로 볼 수 있음. 지역인재 채용 예외조항 적용을 받은 채용자는 840명으로, 예외조항을 완화시 이 중 몇 명을 지역인재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파악 가능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예외조항 완전 폐지를 전제로, 규제개선시 총 527명이 더 채용될 수 있다고 단순화함 [자료원: 뉴스투데이, '22. 3. 24일자 박희중 기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5인 미만 채용' 예외조항으로 실효성 낮아“]

□ (규제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비용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기존 규제의 준수를 위한 비용		해당사항 없음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해당사항 없음	
	증가	해당사항 없음	
기존 규제의 개선시 감소액 + 개선시 증가액			- A + B 원

□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기존 규제의 준수를 위한 비용		현재 예외규정 적용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함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	
	증가	1인당 생산성 손실액의 최대값(1인당 임금) 3,728만원/년 × 추가 채용필요 지역인재 규모 526명 ≒ 196.1억원/년	하기 각주 1)부터 3)까지 참조
기존 규제의 개선시 감소액 + 개선시 증가액			약 196 억원/년

- 1) 지역내 인재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용인원 1인당 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분은, 시장가치인 임금으로 생각할 수 있음. 따라서 (채용인원 × 1인당 임금)을 규제로 인한 공공기관 전체의 생산성 하락에 대한 최대치로 볼 수 있으며, 비용의 증가분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인 최대치를 적용함
- 2) 예외규정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적기에 채용이 어려워, 지연되는 시간만큼의 생산성 하락, 채용모집 재공고 및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등은 추정이 어려우므로 본 약식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3) '21년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연봉은 연합뉴스, '22. 5. 29일자 박상돈 기자의 "공공기관 신입초봉 3천728만원...기본급 9급 공무원보다 984만원 많아" 인용함

#### □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익의 연간 변동분

편익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p>상기 지역인재의 추가채용에 따른 지역내 소득의 증가분(지역외 유출 회피분)을 직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편익의 창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분석은 생략하고, 정성적 요인으로 고려함</p>	

□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 (정성적 고려요인)

기타 금액단위로 환산 불가능한 비용·편익(정성적) 및 규제개선의 고려사항

지역소득 증가에 따른 지역내 소비 증가, 지역내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내 인적역량의 확대 기회 등

- 결론: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편익창출은 없으나, 지역경제 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함

## 별첨 2

## 부수적 효과 상세내역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

※ 효과 여부에 “예” 라고 체크시 효과 내용 간략 기술

구분	부수적 효과 항목	효과 여부	
		예	아니오
1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2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3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4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지역내 취업자 및 노동소득의 증가로 소비 증가	
5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지역내 공공기관 취업기회 확대, 최대 500여명/년 증가	
6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7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8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연대 강화	
9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10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지역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	
11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 별 첨 3

## 전문가 의견조사 상세내역

-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185)
  - 전체 채용인원이 많더라도 채용 분야를 쪼개 모집인원을 5명 이하로 낮춤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 제시됨
  - 모집인원에 대한 기준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범위를 넓히게 되면 지역인재 채용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제6장 충청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 방안

### 제1절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선안

##### 1) 시행령 내 예외조항 개선안

###### □ 예외조항 개선 필요성

-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실질 채용률(전체 신규입사자 중 지역인재 비율)은 낮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조항의 개선이 요구됨
    - 2021년 채용실적을 살펴본 결과, 예외조항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 130곳 중 45곳(34.6%)은 지역인재를 뽑지 않거나 극소수만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개선을 제시한 발의안들의 많은 수가 의무채용 비율의 상향 조정(약 35~50% 수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적합한 인재의 풀(pool)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전공공기관의 입장과 의무채용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예외조항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제 채용 증가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지역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채용률 제고 수단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논의에서 제외함
  - 예외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발의안과 안전별 부결 사유,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예외조항별로 검토해야 할 논점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적합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예외조항 제4항 제1호) 시험 실시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본 예외조항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이 많더라도 채용 분야를 쪼개 모집인원을

## 부록 6.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3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을 위한 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해당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공원정책과
작성자	이름	김○웅
	직위(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연락처	051-000-0000

2000. 00. 00.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li> </ul>
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일반행정 분야</li> <li>※ 5개 중 1개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li> <li>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li> <li>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li> <li>4.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li> <li>5.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li> </ol> </li> </ul>
3. 규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별표1의2</li> </ul>
4.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중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지자체가 100% 소유권 확보) 문제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애로가 있음</li> </ul>
5. 위임법령	
6. 공표일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09.29. 시행</li> </ul>
7.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 하구 지역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하고자 하지만 규제로 인해 진행불가</li> </ul>
8.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중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지자체가 100%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요건 완화 필요</li> </ul>
9.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 및 소유자 동의 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변경 건의</li> </ul>
1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낙동강 하구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및 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광역적 이용, 지역 균형 발전</li> </ul>
11.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및 국가도시공원 희망 타지자체</li> <li>• 부산·울산·경남 주민</li> </ul>
12.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의2] 1. 도시공원부지 지정요건</p> <p>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p> <p>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p>	<p>[별표 1의2] 1. 도시공원부지 지정요건</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해당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이거나 소유자 동의 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p>

## I.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 철새도래지이자 기수 생태계의 보고인 낙동강 하구 지역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코자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음

- 위 치 :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 및 강서구 맥도 일원
- 규 모 : 850만㎡  
(을숙도 352만, EDC훼손지복구지 85만, 맥도생태공원 258만, 맥도 155만)
- 사업기간 : 2022. ~ 202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중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지자체가 100% 소유권 확보) 문제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애로가 있음

- (을숙도) A≒352만㎡(국유지 99만, 공유지 248만, 사유지 5만)
- (맥도생태공원) A≒258만㎡(국유지 258만)

※ 을숙도는 국유지가 28%, 맥도생태공원은 100% 국유지로 막대한 토지매입비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도시공원 부지가 국·공유지 및 소유자 동의 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변경 건의
- (기대효과)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낙동강 하구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전 및 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광역적 이용, 지역 균형 발전
  - 도시공원 결정에 따른 체계적 공원 관리 및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 일부 보조가능[법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 II. 규제개선 효과성

### □ 규제집행 현황

- 현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중 부지소유에 관한 규정은 해당 부지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
-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자체가 조성(필요시 국가 지원)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성 이후 관리 등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부지가 지자체 소유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함

## □ 경제적 효과성 분석

- 피규제자는 동 사례에서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낙동강 하구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이며, 동 규제개선시 지자체로 파급될 수 있음
  -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 및 강서구 맥도 일원 부지 850만㎡ 중 공유재산 외, 국유지 357만㎡ 및 사유지 5㎡ 포함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설치로 인한 주민편익 등 사회경제적 가치가 규제로 인해 실현되지 않은 것은 기회비용으로서, 규제준수비용에 해당하며 규제개선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부·울·경권 주민수에 1인당 지불의사액 8,506원/년을 적용하는 경우, 규제준수비용(미실현 편익)은 약 582억원/년임
- 동 규제완화로 인해 도시공원이 조성·운영되는 경우, 막대한 부지매입비를 절감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 공원운영시 소유권 분산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즉 행정비용(국유재산 임대료 등) 및 소송비용 등 관리비용이 급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사회경제적 편익을 상회할 수 있음
  - 관리비용의 증가분은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과 우발채무의 위험도르르 제고시키나, 공원관리비용의 증가에 관해서는 유사사례 등 근거부족으로 정량적 추정이 어려움

□ 부수적 효과

- 지역브랜드 제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국가도시공원의 소유권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의 여지 존재 등

### Ⅲ. 규제개선 실효성

□ 유사사례 검토

○ (인천광역시) 소래습지 일원

- 인천시는 2028년까지 총예산 5,921억 원(비재정사업 포함)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원 6,650천 $m^2$ 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을 계획임
- 대상지 내 토지주들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

○ (국토교통부) 미래도시공원 조성방안

-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방안을 다루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
- 면적기준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 부산에 대규모 공원이 필요하나, 법제도에 의해 실현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토지, 예산 등)이 필요함

※ 전문가 : 동아대 명예교수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조경분야	국가도시공원 용역 총괄계획가	김○환	010-0000-0000	

□ 소관부처 의견 검토

-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일종인 도시·군계획시설로
  -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 사무로서 부지매입은 물론 시설설치·관리까지 원칙적으로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
-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을 전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실익이 있는 경우 지정하고 시설설치·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 국가도시공원 공원설치·관리의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고 이 점은 지정요건에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시 국·공유지를 소유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본질에 반하여 수용곤란

구 분	소속(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국장	도시정책관	길0우	044-000-0000	0000@molit.go.kr
과 장	녹색도시과	박0호	044-000-0000	0000@molit.go.kr
담 당 자	사무관	이0주	044-000-0000	0000@molit.go.kr

#### IV. 종합결론

##### □ 요약 및 개선방안

- 규제개선은, 도시공원조성의 부지매입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의 경감과 동시에 규제로 인한 미실현 편익을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존재하나,
- 규제완화시 향후 운영의 어려움, 부지 임대료, 소송비용 등 관리비용의 급증 및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등 위험을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별첨 1**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분석 기준년도: 2022년

규제이해당사자 규명

	규제시행자	피규제자 (규제준수자)	규제수혜자
이해 당사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1. 부산광역시 2. 국가도시공원 희망 타 지자체	1. 부·울·경 주민 <sup>1)</sup> 2. 부산광역시
규모	-	16개 기관	6,840,468명

- 1)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시 도시공원의 방문자는 작게는 부산광역시 주민부터 넓게는 전국민 및 해외 관광객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동일 생활권역인 부산·울산·경남으로 한정함
- 2) 가장 최근 자료인 제22회 부산 광역도시권통계('21년 기준. pp26-27) 활용

(규제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교
기존 규제집행· 감시 비용		해당사항 없음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해당사항 없음	
	증가	해당사항 없음	

## □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기존 규제의 준수비용		규제준수를 통한 손실액 <sup>1)</sup> (도시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 = 1인당 도시공원 지불의사액 8,506원/년 × 부·울·경 주민 6,840,468명 = 581.85억원/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도시공원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방안 연구(202 0)”의 p90 참조
규제개선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규제개선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된다면, 상기 기회비용을 회피할 수 있음, 즉 581.85억원/년	
	증가	-	
기존 규제의 개선시 감소액 + 개선시 증가액			약 582억원/년

1) 국가도시공원 지정불가로 조성이 안되는 경우, 만약 조성된다면 발생할 편익(주민편익 등 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규제준수비용에 해당함

## □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익의 연간 변동분

편익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규제개선시 지자체 공원관리 비용의 증가분 (부의 편익) <sup>1)</sup>	대규모 부지의 관리에 있어서 소유권 분산으로 인한 행정관리비용, 국유·사유재산 임대료, 소송비용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유사사례 등이 부재하여 추정근거가 없음

1) 국가도시공원 부지요건 완화시 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부지매입비 절감분은 자치단체로부터 중앙부처로 이전되는 비용의 절감분이므로, 이전지출에 해당하여 비용 또는 편익으로 보기 어려움, 단, 규제개선으로 인해 도시공원 지정·운영시 소유권 분산으로 인한 행정관리 및 소송비용 등 관리비용의 증가분은 창출되는 손실로서, 이는 부(-)의 편익으로 볼 수 있음

### □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 (정성적 고려요인)

기타 금액단위로 환산 불가능한 비용·편익(정성적) 및 규제개선의 고려사항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에 따른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효과가 있으며, 막대한 국유지 매입비용의 절감에 따른 지방재정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 다만, 공원의 운영에 있어서 소유권 분산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는 우발채무 등 향후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규제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큼

- 결론: 규제개선에 따라 편익 및 단기적 지방재정의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규제의 취지상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 별첨 2

## 부수적 효과 상세내역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

※ 효과 여부에 “예” 라고 체크시 효과 내용 간략 기술

구분	부수적 효과 항목	효과 여부	
		예	아니오
1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2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공원조성 및 관리 등 재정지출로 인한 공공조달 증가 예상	
3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4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지역내 취업자 및 노동소득의 증가로 소비 증가	
5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공원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존재할 수 있으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6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7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8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도시공원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 존재		
9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외지인 및 관광객 등 공원방문객 증가 예상		
10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지역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		
11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 부록 7.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4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충북], 규모기준[충남]  
 및 민박사업[경북]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해당 지역		충북 단양군	충남 논산시	경북 의성군
담당부서		농림환경국 농업축산과	경제문화국 농산물유통 지원센터	관광경제 농업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이름	홍0화	김0련	배0경
	직위 (직급)	주무관	주무관	지방농업 서기보
	연락처	043-000-0000	041-000-0000	054-000-0000

2000. 00. 00.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충북기준)

1. 규제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규모기준 및 민박사업 완화</li> </ul>
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중 1개 선택</li> <li>1. 투자·일자리 창출 분야</li> <li>2. 산업진흥 분야(신산업)</li> <li>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li> <li>4. 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li> <li>5. 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li> </ul> </li> </ul>
3. 규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li> </ul>
4.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li> </ul>
5. 위입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6. 공표일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2.4. 시행</li> </ul>
7.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민박업 연면적 230㎡에 부속건축물이 포함 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거주지, 객실, 필요 부속건축물 등을 구비하기 어려움</li> </ul>
8.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연면적, 숙식제공)</li> </ul>
9.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안) 주택 연면적 산정 시 부속건축물 연면적 별도 산정</li> <li>• (제2안)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의 기준을 준용, 주거면적 제외</li> <li>• (제3안) 주택의 연면적 기준 230㎡를 유지하되,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30% 내지 50%를 가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정</li> </ul>
1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 불필요한 불법 증축 등의 행위 감소 및 적법 행위를 통한 세수 확보 등 예상</li> </ul>
11.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농어촌민박, 농어촌 민박업소, 농어촌민박 이용객</li> </ul>
12. 신규조문 대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 <신구조문 대비표> (충북)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안>

#### 1) 개선방안 1안의 표

현행		개정안	
1. 사업의 규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구분	규모
농 어 촌 민 박사업	○ 주택연면적 230제 곱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사업	○ 주택(객실)의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부속건축물(세탁실 바 비규장, 창고 등의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2) 개선방안 2안의 표

현행		개정안	
1. 사업의 규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구분	규모
농 어 촌 민 박사업	○ 주택연면적 230제곱 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사업	○ 객실 및 편의시설 등 민박업에 이용되는 공 간의 연면적이 230제 곱미터 미만

#### 3) 개선방안 3안의 표

현행	개정안
1. 사업의 규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 어 촌 민 박사업	○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30제곱미터의 30% (또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구분	규모		
농 어 촌 민 박사업	○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신구조문 대비표> (충남)

####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현행		개정안	
1. 사업의 규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구분	규모
농 어 촌 민 박사업	○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사업	○ <b>주택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b>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신구조문 대비표> (경북)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u>조식</u> 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4. ----- ----- <u>숙식</u> ----- -----

## I.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은 부업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영위 가능
- ‘다만, 농어촌민박업 신고 조건 중에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
- 농어촌민박업 연면적 230㎡에 부속건축물이 포함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거주지, 객실, 필요 부속건축물 등을 구비하기 어려움
- 때문에, 연면적 230㎡에 초과되는 부분 등은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농어촌민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 발생이 야기되기도 함
- (충남) 소비자의 여행 형태가 과거에는 여행 목적지를 정하고 난 다음 숙박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숙박 자체를 목적으로 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음
- 이에 따라 숙박의 목적 역시 단순한 기능 중심에서 감성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객실 인테리어 및 내부 시설 등 각종 서비스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고급화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휴양시설을 갖추기에는 기준면적이 부족함
- (경북)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고 규정
-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업은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농어촌민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은 유사하나 식사 제공에 있어 농어촌민박업은 조식 제공만 가능
- 같은 사업이지만 사업의 농어촌지역이라고 하여 도시와 다르게 조식만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는 불합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
지역구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
건축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식사 제공	조식	숙식
목적	현지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	도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
시행연도	2015년	2016년
공중 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2호단서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충북)

- (제1안) 주택 연면적 산정 시 부속건축물 연면적 별도 산정
  - ※ (현행) 주택 연면적 230㎡ 미만 → (개선) 주택(객실) 연면적 230㎡ 미만 + 부속건축물 230㎡미만
- (제2안)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의 기준\*을 준용, 주거면적 제외
  - ※ 농어촌민박 연면적에는 주거면적이 포함되나,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에는 주거면적을 제외한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으로 정함
- (제3안) 주택의 연면적 기준 230㎡를 유지하되,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30% 내지 50%를 가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추후 규제개선 완화 효과 등 분석 후 전체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규제 완화
  - ※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곤란할 시, 인구감소지역중 소멸 고위험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

### ○ (개선방안: 충남)

-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확대

### ○ (개선방안: 경북)

-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같이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도 숙식을 제공할 수 있게 개선

- (기대효과: 충북, 충남) 농어촌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 불필요한 불법 증축 등의 행위 감소 및 적법 행위를 통한 세수 확보 등 예상

-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 정비 확충과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 등 사업 활성화로 농어촌의 관광자원 확충에 기여
  - 농어촌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안정된 수익 창출 기대
- (기대효과: 경북) 농어촌민박업 규제 완화로 귀농·귀촌인에게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워케이션과 연계하여 농어촌민박에서 숙식을 하며 농어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박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II. 규제개선 효과성

### □ 규제집행 현황

- (충북) (준)농어촌지역 주민은 부업 소득 창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영위가 가능하나,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으로 제한됨
- 주택 연면적 230㎡에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산정함에 따라 세탁실, 바비큐장 등 시설 구비가 어려워 불법 증축 행위 발생
- (충남) 농어촌 관광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숙박서비스 및 시설을 갖추기에는 농어촌민박 기준면적 부족

- (경북) 관광진흥법 상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도 시민박업과 달리 농어촌민박에서 조식 제공만 가능한 것은 차별적 조항

#### □ 경제적 효과성 분석

- (충북 기준)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 유지시 농어촌민박 운영 주민의 매출액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기회비용으로서, 규제준수비용에 해당하며 규제 개선시 주민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규제개선을 통해 충북 농어촌민박 업소는 약 32.20억원/년의 경제적 가치 실현이 가능함
- (충북 기준)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 완화로 농어촌민박의 운영시설이 확충될 경우 농어민 주민 소득증대, 민박 이용객 및 관광객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 발생이 예상됨
- 다만,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기준 완화로 민박의 운영시설이 확충될 경우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를 초래하며, 경제적 편익을 상회할 수 있음
  -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유사사례 등 근거부족으로 정량적 추정이 어려움

#### □ 부수적 효과

- (충북 기준)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 완화로 민박 단지

활성화, 민박 운영 농가 소득 증가 및 농어촌 관광객 증가 등

### Ⅲ. 규제개선 실효성

#### □ 유사사례 검토

#####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 연구용역

-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 수행(소관부처 의견 참조)
- 현행 ‘연면적 230㎡이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속 거주 의무 기간’인 6개월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

####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 ○ (충북) 농어촌민박 사업은 단양군에서 정책 중요도가 높음

- 전국 농어촌민박은 3만 2천여개이며, 그 중 충북이 1,477개(전국 대비 약 4.5%), 충북 내 단양군이 363개로 충북 전체 25%에 해당

##### ○ 전국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상이

-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과 관련된 조례는 광역지자체 10곳, 기초 지자체 33곳만 제정(충북의 경우 충청도 및 단양만 있음)
- 또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도 상이함

#####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충청북도에서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 최근 전남 불법조사에서 수천 건의 불법 확인
- 실태조사 선행 후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 조례 보완 필요

- 농어촌민박경영 주체자도 분명한 목적성 및 책임성 부여 필요
  - 농어촌민박의 면적요건 완화 시, 기업형으로 운영되거나 유사시설 및 유사정책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필요
- 농어촌민박 경영환경 개선문제의 지속적인 제기 및 정부정책 방향성
  - 과거보다 농촌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수용 못하는 현실
  - 최근 정부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을 실행중
  - 정부의 내수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방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농어촌민박 정책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법안의 규제 완화가 어려울 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권유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민박 시행지침에 규제 특례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
  -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데에는 일자리 및 서비스 산업에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임. 이에, 농어촌민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유입에 유용한 제도이므로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권한 이양\*

\*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 전문가 : 충북연구원 경제미래연구부

구 분	소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 당 자	수석연구위원	정0철	010-0000-0000	

○ (충남) 시설확충에 수반되는 안전 및 소방에 대한 검토에 문제가 없다면 농어촌 수익창출 및 수요자 중심에 따른 바람직한 안건으로 생각함

※ 전문가 :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구 분	소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 당 자	교수	김0미	010-0000-0000	

○ (경북) 농어촌민박업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숙식은 필요

- 현행법을 보면 농어촌민박업은 조식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시민박업과는 차이점이 있음
- 농어촌민박의 문제점으로 주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 주인과 소통을 하면서 함께 숙식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앞으로 농어촌민박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임
- 워케이션\*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식뿐만 아니라 중식, 석식까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제도

- 이러한 방향성에 비추어보면 농어촌민박에 오랫동안 머물며 농어촌 체험을 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민박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함

※ 전문가 :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구 분	소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교수	교수	서0현	010-0000-0000	관광사업 경영박사

□ 소관부처 의견 검토 (충북,충남)

○ ‘농어촌민박’ 은 숙박시설 설치 및 해당 영업이 불가한 농어촌지역의 주택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업임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에서 제외, 「건축법」상 ‘주거시설’ 인 주택에서 숙박영업 허용,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에서 숙박영업 허용

- 연면적 기준 완화로 대규모 펜션이 난립할 경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실상 숙박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규모기준 확대에 신중 접근 필요

○ 다만, 현재의 농어촌민박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련 규정 완화 요구도 지속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어촌민박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연구용역 추진(~12월)

○ 농어촌민박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구 분	소속(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국장	농촌정책국장	이0만	044-000-0000	0000@korea.kr
과 장	농촌경제과	최0미	044-000-0000	0000@korea.kr
담 당 자	사무관	이0은	044-000-0000	0000@korea.kr

## □ 소관부처 의견 검토 (경북)

- ‘농어촌민박’ 은 숙박시설 설치 및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주택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업임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에서 제외, 「건축법」상 ‘주거시설’ 인 주택에서 숙박영업 허용,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에서 숙박영업 허용

-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은 농어촌지역에서 오전 영업하는 식당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해외사례 연구, 식약처·지자체 및 민박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투숙객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결정(‘15.7월 시행)

※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숙식’ 제공을 허용

- 농어촌민박에서 조식 외 모든 식사 제공이 가능할 경우,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식품접객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규제 완화에 신중할 필요

- 다만, 현재의 농어촌민박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련 규정 완화 요구도 지속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어촌민박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연구용역 추진(~12월)

- 농어촌민박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구 분	소속(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 당 자	사무관	이0은	044-000-0000	0000@korea.kr

## IV. 종합결론

### □ 요약 및 개선방안

- 농어촌민박은 그 제도 취지상 숙박시설 설치 및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낙후지역의 주택에서 예외적으로 관광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가를 위해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객의 안전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일반 숙박업소와 다른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는 관계로 면적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 완화로 농어민의 부가가치 증가 및 이용객 만족도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 외에 안전사고 위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확산,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감독 등 행정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 완화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별첨 1

##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분석 기준년도: 2022년(충북 사례)

규제이해당사자 규명

	규제시행자	피규제자 (규제준수자)	규제수혜자
이해당사자	농림축산 식품부	충북 농어촌민박 업소 <sup>1)</sup>	(규제개선시)충북 농어촌민박 업소, 농어촌민박 이용객
규모	-	1,477개소	-

1) 출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홈페이지(<https://www.localdata.go.kr/>)

(규제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교
기존 규제집행· 감시 비용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민박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제개선은 민박업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동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규제집행 및 감시비용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해당사항 없음	
	증가	해당사항 없음	

□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기존 규제의 준수비용을 위한 비용		규제준수를 통한 기회비용 <sup>1)</sup> (매출액 손실분) = 115개(충북 농어촌민박 중 연면적 초과로 운영하지 못한 농어촌민박 수) <sup>2)</sup> × 102,824원(농어촌민박 1박 비용) <sup>3)</sup> × 454박(농어촌민박 1년 숙박 수) <sup>4)</sup> × 0.342(숙박업 평균 부가가치율) <sup>5)</sup> = 1,836,006,836원(18.36억원)/년 <sup>6)</sup>	국무조정실 보도자료('17.8.28), 숙박매거진 언론보도자료('23.7.26), 충청일보 언론보도자료('23.4.25), 산업연구원(ISTANS)의 2022년 숙박업 평균 부가가치율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농어촌민박 연면적 규제개선이 된다면 상기 기회비용을 회피할 수 있음, 즉 약 18.36억원/년	
	증가	-	
기존 규제의 개선시 감소액 + 개선시 증가액			약 18.36억원/년 <sup>4)</sup>

1)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규제로 농어촌민박 운영자가 연면적 기준에 불합치 되는 민박을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손실분이 기회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규제준수비용에 해당함.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매출액 손실분(기회비용)인 규제준수비용은 연면적 기준 불

합치로 운영하지 못하는 민박 수, 농어촌민박 1박 숙박비, 농어촌민박 당 1년간 숙박 수 및 숙박업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함. 다만, 기타 시설이 숙박업소보다 나빠서 발생하는 손해, 규모가 작아서 관련 시설을 불법건축물로 지었을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액 등 추정해야 하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추정이 어려움. 또한,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손실분은 사실상 무허가영업으로 가정함

2) 충북 농어촌민박 중 연면적 초과로 운영하지 못한 농어촌민박의 수 115개로 산정함(2017년 기준 농어촌민박 중 연면적 초과 민박 비율인 7.8%를 적용하면 충북 1,477개소 농어촌민박 중 7.8%는 115개임)

※ [참고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17.8.28) “농어촌 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 중 32.9%가 합동감사를 통해 위법이 적발되었으며, 실거주 위반 6.9%, 연면적 및 동개수 초과 7.8%, 무단 용도변경 18.2%, 무허가 물놀이 시설 2.8%로 나타남

3) 농어촌민박 1박 비용은 102,824원으로 산정함

※ [참고2] 숙박매거진 언론보도자료('23.7.26) “국내여행객, 숙박요금으로 평균 27만 2,000원 사용”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관광숙박시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건당 숙박요금을 분석하면 호텔의 경우 32만6,325원, 리조트 및 콘도는 18만312원, 농어촌민박과 게스트하우스는 10만2,824원으로 제시됨

4) 농어촌민박의 연간 숙박수는 454개로 산정함(2022년 부여군 총 44개 농어촌민박에 약 40,000여명이 이용하여 농어촌민박당 909명이 숙박함. 2인 1실 숙박으로 가정하면 1년 454개 숙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산정함)

※ [참고3] 충청일보 언론보도자료('23.4.25) “부여군, 감성여행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활성화 나선다”에 따르면 2022년 부여군에는 44개소 농어촌민박이 있으며 2022년 이용자수는 4만여명으로 제시됨

5) 숙박업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구원(ISTANS)의 2022년 숙박업 평균 부가가치율인 34.2%를 적용함

6) 다만, 농어촌민박의 현재 시설당 평균 매출액이나 연면적 규제 완화시 매출액 증가분은 별도의 이용실태조사가 필요함

## □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익의 연간 변동분

편익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농어촌민박 업소의 경제적 효과 변화(정의 편익) 및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안전 변화(부의 편익) 변동	규제개선의 편익 <sup>1)</sup> = 농어촌민박 운영자 경제적 효 과·편익 증가분 32.20억원/년(1 8.36억원/년 <sup>2)</sup> +13.84억원/년 <sup>3)</sup> ) - 규제개선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액(안전사고율 변화 × 1인당 안전사고 피해액 × 이용객 수 = 산정불가) <sup>4)</sup>	한국소비자원(2019) “펜션형 농어촌 민박 안전실태조 사”의 p27-28 참조

1) 규제개선에 따른 편익 변동은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경제적 효과(정의 편익)가 발생함. 경제적 효과는 규제개선으로 농어촌민박 운영자가 연면적 기준에 불합치하여 운영하지 못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이므로 규제준수를 통한 기회비용 회피액과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규제개선으로 농어촌민박의 규모 증가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농어촌민박 숙박비 증가분이 적용된 매출액을 합한 금액에서 규제개선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함

2) 규제개선으로 농어촌민박 운영자가 연면적 기준에 불합치하여 운영하지 못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과 동일하므로 전술한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인 18.36억원/년임

3)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규제개선으로 농어촌민박의 규모 증가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농어촌민박 숙박비 증가분은 77,488원으로 산정함(농어촌민박 규모 증가 및 시설이 개선되면 현재 농어촌민박 1박 평균비용보다 증가함.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 개선으로 농어촌민박 숙박비가 아닌 리조트 및 콘도 숙박비인 180,312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함. 따라서, 180,312원에서 102,824원을 뺀 금액인 77,488원이 숙박비 증가분이라 산정함). 숙박비 증가분을 적용하여 매출액/년을 산정하면 13.84억원/년임(농어촌민박 중 연면적 초과로 운영하지 못한 농어촌민박 수 115개 × 농어촌민박 1박 평균 숙박비 증가분 77,488원 × 농어촌민박 1년 숙박 수 454박 × 숙박업 평균 부가가치율 0.342= 1,383,611,780원(13.84억원)/년)

4)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 완화에 따라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안전 문제(화재 등 안전사고율)가 어느 정도 악화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4]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19.9.18)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에 따르면, '18년말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농어촌민박)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음. 농어촌 민박의 60%가 복합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민박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함. 3년간('16~'18) 펜션 내 계단·바닥·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영장·계단 등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33건 등 제시됨.

※ [참고5] 한국소비자원(2019) “펜션형 농어촌 민박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농어촌민박 중 8개의 농어촌민박의 연면적은 230㎡ 이상으로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였으며, 농어촌민박 10개소의 연면적 평균은 350㎡ 이상으로 나타남. 농어촌민박은 숙박업 펜션보다 소방시설이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기준에 따라 비교해보면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 시설이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제시함

## □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 (정성적 고려요인)

기타 금액단위로 환산 불가능한 비용·편익(정성적) 및 규제개선의 고려사항

농어촌민박 연면적 완화로 민박 이용객 및 관광객 증가로 생활인구 증대, 주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 다만, 농어촌민박 연면적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증가의 위험은 규제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큼

□ 결론: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나, 면적기준 완화로 시설이 확충으로 이용객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기준 완화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규제의 취지상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별첨 2      부수적 효과 상세내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

※ 효과 여부에 “예” 라고 체크시 효과 내용 간략 기술

구분	부수적 효과 항목	효과 여부	
		예	아니오
1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농어촌민박 관련 단지 활성화	
2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3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4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5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농어촌 관광객 증가로 민박 운영 농가 소득 증가	

6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7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8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9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농어촌 관광객 증가		
10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11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예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농어촌민박 규제 개선을 통해 노인 소득 창출 대안 확대 가능		

부록 8.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적용 사례5

수자원보호구역내 소수력 발전시설 등 설치  
허가 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해당 지역		전남 완도군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에너지팀
작성자	이름	허0영
	직위(직급)	공업9급
	연락처	061-000-0000

2000. 00. 00.

(서명)

##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자원보호구역내 소수력 발전시설 등 설치허가 허용을 위한 규제</li> </ul>
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환경 분야</li> </ul> <p>※ 5개 중 1개 선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일자리 창출 분야</li> <li>산업진흥 분야(신산업)</li> <li>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분야</li> <li>일반행정 분야(도시개발, 법무, 건축, 보건·복지 등)</li> <li>환경 분야(환경오염, 에너지, 탄소중립)</li> </ol>
3. 규제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li> </ul>
4.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li> <li>가. ~ 머. &lt;생략&gt;</li> <li>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li> </ul>
5. 위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6. 공포일 및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4.20. 제정, 2010.4.23. 시행</li> </ul>
7.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수력 발전시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에 해당되나 별표16중 제2호 버목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이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불가</li> </ul>
8.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자원보호구역 내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li> </ul>
9.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개정</li> </ul>
10.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을 통하여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공급 가능</li> </ul>
11.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 및 사업자 등</li> </ul>
12.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가. ~ 며. <생략>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 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 위 가. ~ 며. <생략> 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 전시설

## I. 규제개선 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16과 같으며, 제2호 버목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불가
  - 소수력 발전시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에 해당되나 별표16중 제2호 버목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이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불가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개정
- (기대효과) 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을 통하여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공급 가능

## II. 규제개선 효과성

### □ 규제집행 현황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에 따라 수보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만 규정하고 있어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 \* 발전시설 설치 불가

\*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에너지 등

### □ 경제적 효과성 분석

- 기존 규제인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불가 유지시 재생에너지 설치 불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손실되므로 해당 규제 개선시 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설치 불가 손실액은 소수력 설치가능지 150개소에 대한 전기 생산량 0.9GW/년, 에너지판매가 203.87원/kwh를 적용할 경우 규제준수비용은 약 275억원/년임

- 다만, 기존 규제 개선으로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할 경우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유지비용이 발생함
  -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유지비용은 150개소, 설치비 10억원, 연간 운영유지비 1억원을 적용할 경우 165억원/년임
- 따라서, 기존 규제개선을 통해 소수력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110억원/년의 경제적가치 실현이 가능함

#### □ 부수적 효과

-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오염 물질 해수면 유입 방지 및 배수관로 정비효과로 인한 해안 풍광 복원, 해수 안개 미발생으로 어촌 농가의 기계·전기장치 보호, 용존산소량 증가에 따른 활어 생산량 증가 등

### III. 규제개선 실효성

#### □ 유사사례 검토

-

####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6 제2호 버목은 재생에너지 중 구체적 사유 2가지만 허용하는 열거조항으로 보

임. 사유의 확대나 예외 조항을 추가한다면 인·허가 시 분쟁의 여지가 적을 것으로 보임

※ 전문가 : 법무법인 시울

구 분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고문번호사	법무법인 시울	장0우	062-000-0000	

#### □ 소관부처 의견 검토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보구역 내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기공급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대규모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기반시설로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해야함
  - 위 사업을 제외하고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등 예외적으로 허가대상행위를 별표16에 정하고 있으며, 현재 수보구역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만을 허용\*하고 있음

\*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000m<sup>2</sup> 이하의 행위만 가능함

- 따라서, 수력·해양·지열에너지 등 수산자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생에너지 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 양식장을 활용한 소규모 수력 발전시설은 주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

구 분	소속(직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담당국장	어업자원정책관	최0호	044-000-0000	0000@korea.kr
과 장	수산자원정책과장	임0호	044-000-0000	0000@korea.kr
담 당 자	서기관	서0훈	044-000-0000	0000@korea.kr

#### IV. 종합결론

##### □ 요약 및 개선방안

-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은 제도 취지상 수산자원 보호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처의견 검토서와 같이 사업자의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 외에는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제개선시 태양광 및 풍력 외에, 소수력 등 제한된 규모 또는 생태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발전시설에 대한 완화를 통해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생태자원이 우수한 해수면 및 내수면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경우 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민감도 분석의 관점에서) 아울러 최근의 물가상승 및 전기요금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

해 자가소비용 전기생산으로 전기요금을 회피할 수 있다면 수산관련 주민 및 사업자에게는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수협중앙회가 후원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15~20%인 반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36%나 폭등하여 양식업계를 비롯한 수산업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수협중앙회 수협소식지, 어업in수산, <http://www.suhyupnews.co.kr/> ’ 22.11.30일자 김명곤 기자. “농사용 전력요금 인상으로 어촌경제와 어가경영 벼랑끝에 내몰려” )

## 별첨 1

## 경제적 효과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분석 기준년도: 2022년(사례지역은 자료가 존재하는 전남 완도군으로 가정함)

규제이해당사자 규명

	규제시행자	피규제자 (규제준수자)	규제수혜자
이해당사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 및 사업자 등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 및 사업자 등
규모	-	-	-

※ [참고1]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보시스템 (<https://www.nifs.go.kr/frpa/>)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여수 가막만 등 해수면 10개소 및 내수면 20개소)이 존재하며, 해당 지역(읍면동 단위)의 주민 및 수산관련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함. 건의 지자체측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 및 관련 사업자 등 제출 필요

(규제시행자)규제집행·감시비용의 연간 변동분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기존 규제집행· 감시 비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관청(시·도지사 및 시·군청창)의 허가로 재생에너지 시설이 확대될 경우 행정비용 절감은 예상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해당사항 없음	
	증가	해당사항 없음	

□ (피규제자)규제준수비용의 연간 변동분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고
기존 규제의 준수비용		규제준수를 통한 기회비용 <sup>1)</sup> (재생에너지 설치 불가 손실액) = 소수력 설치가능지 150개소×생산량 0.9GW/년× 에너지판매가 203.87원/kwh ≒ 275억원/년 <sup>2)</sup>	매일일보 언론보도 ('23.4.14)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규제개선 시 준수비용 변동분	감소		
	증가	소수력 설치 및 운영·유지비용 [150개소×(설치비 10억원 <sup>3)</sup> + 연간 운영유지비 1억원) = 165억원/년]	매일일보 언론보도 ('23.4.14)
기존 규제의 개선시 감소액 + 개선시 증가액			165억원/년

1) 기존 규제준수를 통해 소수력 등 태양광·풍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설치 불가로 발생하는 손실액

2) 실제 재생에너지 판매 여부를 제외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만으로 본 효과 수준의 화폐가치 존재한다고 가정함. 실제 전기요금은 저렴하며, 준수비용이 제시된 275억원/년 만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 및 주민들의 전기비용에 대한 별도의 자료 및 조사가 필요함

3) 소수력 설비에 대한 설치비는 [참고2]에 따라 10억원 가정. 연간 운영유지비는 자료가 없으므로 가정치 활용. 즉, 설비 내구연수 10년 이상 및 수리비 등을 감안할 때 10억원의 10%인 1억원으로 가정

※ [참고2] 매일일보 언론보도('23.4.14)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어류양식장 소수

력발전 중단 위기”에 따르면 사례지역인 전남 완도군의 경우, 수산자원보호 구역내 100kwh 소수력 발전기 1기 시설비는 약 10억원, 100kwh 이상 소수력 발전이 가능한 어류양식장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전남 완도지역으로 어류양식장 150여 곳에 소수력발전 설비를 할 수 있음, 100kwh급 연간 생산량은 0.9GW으로 제시됨

※ [참고3]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의 2022년도 「전력시장통계」, '22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 203.87원/kWh

### □ (규제수혜자)규제개선시 편익의 연간 변동분

편익	산식 및 추정치	근거자료 등 비교
규제개선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 및 사업자 등의 경제적 편익	규제준수를 통한 기회비용-소수력 설치 및 운영·유지비용: 275억원/년-165억원/년 =110억원/년	매일일보 언론보도('23.4.14) 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 기타 비용·편익 관련 참고사항 (정성적 고려요인)

기타 금액단위로 환산 불가능한 비용·편익(정성적) 및 규제개선의 고려사항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오염 물질 해수면 유입 방지 및 배수관로 정비효과로 인한 해안 풍광 복원, 해수 안개 미발생으로 어촌 농가의 기계·전기장치 보호, 용존산소량 증가에 따른 활어 생산량 증가 등

□ 결론: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준수비용의 절감 및 기타 부수적 효과를 감안할 때, 수산자원보호의 제도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허가가 타당함

별첨 2      부수적 효과 상세내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대응 효과

※ 효과 여부에 “예” 라고 체크시 효과 내용 간략 기술

구분	부수적 효과 항목	효과 여부	
		예	아니오
1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의 수익창출이나 산업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주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	
2	해당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지역 민간업체로부터의 조달이나 또는 지역 민간업체로의 투자가 증가하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3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4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소비진작 또는 물가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효과 내용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따른 물가안정	
5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6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일자리,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7	해당 규제개선은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8	해당 규제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9	해당 규제개선은 유동인구나 방문객 등 생활인구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10	해당 규제개선은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또는 유입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11	해당 규제개선은 고령친화적 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예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과 내용		